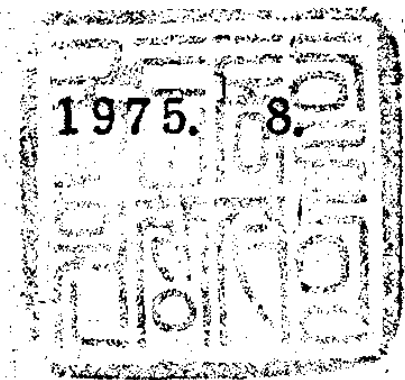


複寫本

國統 75-1-104

東·西獨關係 正常化過程 研究



國 土 統 一 院

目 次

序 論	7
1. 獨逸分斷의 経緯와 現況	14
가. 世界第 2 次大戦中の 戰後処理	14
나. 알타會談에서의 獨逸分斷 論議	15
다. 降伏文書의 署名과 分割問題	15
라. 戰爭後의 分割問題	16
2. 冷戰時代의 突入	18
가. 처칠의 鐵의帳幕演說 1946年 6月	18
나. 런던外相會議 (1947年 3月)	18
다. 西方 3 占領地帶의 統合 (1946年 7月)	18
라. 베르린封鎖 (1948年 4月)	18
마. 西獨政府의 樹立	19
바. 東獨의 獨立	19
사. 獨逸分斷과 冷戰	20
아. 憲法制度	23
자. 政治制度	27
차. 軍事制度	29
카. 經濟制度	30
西獨	
東獨	32

3. 冷戰과 獨逸統一 方案	34
가. 유엔 外交試圖	34
나. 蘇聯의 獨逸中立化 方案	35
다. 「본」 平和 協定締結	35
라. 西方側 蘇聯의 中立化 方案 一覽	36
마. 西獨의 再武裝合意	37
바. 西獨의 完全主權 回復	37
사. 이든의 段階的 統一方案	38
아. 런던會談과 西獨의 單獨 代表權主張	39
자. 西獨의 英國現狀固定案 反對	39
차. 美國務長官의 統一方案	40
카. 모로토프統一方案	41
4. 解氷時代를 向한 東獨方案	42
가. 西獨의 統一方案	42
나. 東獨의 國家 聯合案	43
다. 1959年 西方側 外相案	44
라. 分斷固定과 統一政策	45
마. 울브리히트案 1961.11.27.	45
바. 러스코案 1962.4.23.	46
사. 東·西 冷戰 解氷과 東獨方案	47
아. 에르하르트의 外交政策	48

자. 蘇聯의 役 提案	48
차. 東獨의 統一方案 (1963.1.15)	49
5. 對聯立政府下의 東·西獨關係	51
가. 키신저 統一方案	51
나. 울브리히트의 基本政策	52
다. 할슈타인 原則後退	52
라. 東獨의 Factual state 認定	53
마. 키신저의 聯政의 攻過	54
6. 緊張緩和時代	57
가. 브란트政權과 外交政策	57
나. 中·蘇關係와 西歐 緊張緩和 政策	57
다. 닉슨 북트린과 緊張緩和	58
라. 緊張緩和外交	60
(1) 東歐側의 유럽安保會議 提議	60
(2) 西方側의 相互減軍案 提議	61
(3) 共產側 西方 유럽相互 減軍案受諾	61
마. 緊張緩和의 序曲	63
바. 東·西 兩陣營의 減軍必要性	64
사. 東·西獨의 새좌표 設定	65
아. 東獨의 2民族 2國家觀	65

7. 東方政策의 出現	67
가. 브란트의 統一政策	67
(1) 外部的인 与件	67
(2) 内部的인 与件	68
나. 브란트의 集權時代	68
다. 統一政策	70
라. 安保政策	70
마. 獨·蘇條約	71
바. 東獨의 外交政策	72
사. 東獨의 역 할슈타인 政策適用	73
아. 東·西獨 首相會談	74
자. 에어푸르트 會談	76
차. 캄셀會談	77
8. 白林協定締結	79
가. 協定締結過程	79
나. 共産側의 베르린協定 締結提議	79
다. 東·西獨 基本條約	81
라. 基本條約에 대한 贊成과 反對에 對한 見解	83
(1) 肯定的으로 받아들이는 面	84
(2) 否定的으로 받아들이는 面	89
마. 基本條約 締結과 西獨統一政策展望	92

9. 經濟交流를 통한 接觸關係	94
가. 接觸의 由來	94
나. 交易의 法的 뒷받침	95
다. 민덴協定 締結(1947年1月18日)	96
라. 프랑크 후르트協定(1949年10月8日)	96
마. 베르린協定	97
바. 兩獨의 交易政策	98
10. 人的交流	101
가. 西獨住民의 東獨訪問	102
나. 東獨住民의 西獨訪問	103
다. 西베르린 住民의 東베르린 및 東獨訪問	104
11. 베르린協定 및 東西獨 基本條約의 現在와 展望	107
가. 베르린協定과 基本條約	107
나. 西베르린에 對한 蘇聯의 見解	108
다. 西獨國民의 西베르린 通行問題	109
라. 베르린市와 西獨과의 法的問題	110
마. 聯邦憲法 裁判所의 合憲判決(1973年7月31日)	111
바. 東·西紛爭으로서의 베르린位置	112
12. 基本條約과 其他問題	113
가. 法律交流	114

나. 文化交流	115
다. 學術交流	116
라. 言論人交流	116
마. 스포츠交流	116
바. 宗教交流	119
사. 兩獨 分界線上의 事故 發生時의 問題	120
아. 公害問題	121
자. 保健關係交流	121
차. 通信關係交流問題	121
○ 맺음말	123
13. 東西獨과 韓半島 狀況比較	124
附 錄	
○ 問答으로 比較해본 南北韓과 東西獨	132
○ 中央情報部發行 東西獨 資料集을 根拠로한 分析圖表	150
○ 分析圖表에 나타난 特徵	154

序 論

獨逸의 分割問題는 이미 第2次 世界大戰이 始作되면서부터 聯合國에 의하여 論議되었고 또 많은 分割案이 提起되었다. 그러나 獨逸問題를 檢討함에 있어서는 이에 先行하는 하나의 重要的 意識的 作業이 必要로 할것 같다.

戰後 30여년동안 한 陣營속에 얽매어 그 陣營의 理念과 理解 關係에서 冷戰時代를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形成된 固定觀念과 先입관이 問題가 될 것이다. 即 東·西獨 乃至 自由陣營 및 共產陣營, 어느 한쪽이 統一 問題에 더 關心과 努力을 기울였다는 것은 自己가 살고 있는 陣營을 두둔하게 마련인 것이다. 獨逸은 유럽의 中心地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中心地를 차지하고 있는 게르만 民族의 盛衰는 바로 주변 國家와 民族의 繁榮에 많은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이 같은 獨逸의 歷史性은 적어도 近世 이래 獨逸 問題가 國際的 性格을 띠게 해 준 重要的 背景을 이루고 있다. 다시말하면 게르만 民族의 統一과 分裂은 유럽 및 世界의 安定과 秩序에 깊은 函數關係를 맺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獨逸 隣接國들은 近代的 意味의 民族國家를 形成하던 時期부터 이미 獨逸의 繁榮과 힘의 움직임에 敏感한 理解關係를 나타냈다.

그 理解 關係는 20世紀에 와서 膨脹主義的 게르만 民族主義에 對한 경계로 集約되었다. 프러시아적 軍國主義와 浪漫主義가 結合된 나치즘의 殺人的 犯罪挑發은 世界를 恐怖의 도가니속에 몰아

넣기도 했다. 聯合國側이 敗戰獨逸의 戰後處理 方案으로 “獨逸 恐怖症”을 完全 거세하려고 했던것은 유럽의 絶對한 熱望을 반영한 結果였다. 다시 말해 獨逸의 分열을 통해 게르만 民族의 힘을 弱化시켜야만 유럽의 平和와 秩序가 維持될 수 있다는 論理가 당시 當然한 常識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第 2 次大戰後에 分斷된 獨逸民族은 歴史的으로 그 支配階級의 理解를 위하여 끊임없는 隣接周辺 民族들에 대한 侵略戰爭과 歴史上 유례없는 극악한 반 人間的 만행에 끌려다닌 加害者 이자 被害者 인 特殊한 位置之 性格을 띠우고 있다. 戰後 獨逸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 聯合國들은 그들의 目標을 設定하였다.

첫째, 平和秩序속 獨逸民族의 利益과 福祉를 保障하는 結果를 가져와야 되고, 둘째, 어떤 方案에 對한 解決策이건 單一民族으로서의 獨逸國家가 다시는 隣接國家 民族들에 대한 侵略과 犯罪 行爲를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고 셋째, 어떤 解決이던지간에 이것이 獨逸 民族의 利益이면서 同時에 모든 理解關係 國家들 또는 世界平和와 유럽의 安全保障에 寄與하는 것이어야 한다. 聯合國은 戰後 獨逸을 分割한다는데는 原則的 合意에는 贊成하였으나 具體的 內容에 對하여는 合意를 보지 못한채 終戰을 맞이하여 유럽 증원에 힘의 공백상태가 생겨서 새로운 秩序를 形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美·英·仏·蘇 4 大國에 의한 分割 占領된 獨逸은 다시 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라 分斷의 高착화를 겪었다. 戰後 美國과 蘇聯은 各其 主側으로한 資本主義 體制와 共產主義 體制의 本格的인

대립이 유럽을 東·西洋 陣營으로 갈라놓음에 따라 獨逸 亦是 두 獨逸 政治 體制로 갈라치게 된 것이다. 勿論 獨逸 內部的 政治 勢力들의 主權回復에 대한 熱望이나 4 大國의 占領 政策上的 必要도 있었지만 根本적으로서는 美, 蘇 兩 陣營間的 冷戰의 必要에 따라 獨逸 聯邦共和國과 獨逸 民主主義의 共和國이란 두 政治集團이 탄생하게 되었다. 獨逸 聯邦共和國은 大西洋 條約機構와 獨逸 民主主義의 共和國은 巴르샤바 條約機構를 母體로해서 各其 世上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들의 소산은 다름아닌 兩 陣營의 冷戰이었다. 美, 蘇 超強大 國들은 獨逸의 심장부를 꿰뚫어 分斷시켰고 兩獨을 가르던 分계선은 다시 유럽 마저 兩 陣營으로 갈라 놓았던 것이다. 이 分계선은 兩陣營의 勢力均衡을 維持시켜주는 冷戰의 先초기지가 되었고 兩陣營에는 主權이 부재된 狀態이었다.

美·蘇 兩側은 차차 段階적으로 兩獨의 主權을 回復시켜 欲하는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冷戰上的 必要에 따른 措置였지 獨逸 民族의 統一이나 단합을 위해 취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 冷戰期에 西方側은 西獨에게 徹底한 西方지향적인 나라가 되도록 誘導했다. 그러한 政策的 背景은 다음 세가지 點으로 보아 알 수 있겠다. 共產側 亦是 그들대로 東獨을 共產 世界속의 一員으로서 蘇聯의 先초기지로 만들려고 政策을 입안했다.

(1) 西方世界는 共產主義와의 鬪爭에 있어서 西獨의 資源 및 人力을 動員한 協力を 구하는 것이 절실히 要請되었다.

(2) 西方側으로서는 東獨과 東歐羅巴의 共產化와 關聯하여 內外로 부터의 共產主義의 威脅과 도전 앞에서 先초기지인 西

獨을 保護해야 했다.

- (3) 다음으로 가장 重要한 要素는 西方側의 指導者들은 西獨을 서유럽에 統合시키되 西獨의 歴史的 地位를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共産陣營의 맹수였던 蘇聯도 西方側과의 對決에서 東獨을 防波堤로서 삼기 위해 다음과 같은 基本政策을 設定해 놓았다.

- (1) 東獨을 政治, 經濟, 軍事面에서 完全히 東歐世界와의 영원한 一원으로 만들것.
- (2) 西方 世界의 經濟力이 西獨의 經濟的 潛在力과 相互 協力을 막을것.
- (3) 西獨의 再武裝과 核保有를 支持함으로써 西獨의 位置를 弱화 시킬것.

이 같은 兩 陣營의 冷戰期 對獨政策은 두個로 나누어져 있는 게르만 民族이 서로 對話나 關係改善을 통해 獨逸統一 問題를 다루기에는 너무나 힘에 겨웠다.

그 結果,

- (1) 兩獨逸은 한편으로는 두 적대 陣營이 맞나는 地域이면서 同時에 冷戰의 先초기로서 유럽의 安定을 左右할 수 있게 되었고,
- (2) 다른 한편으로는 分斷民族으로서 다른 國家間의 關係의 特徵과는 전혀 다른 獨特한 國內的인 側面을 지니는 2중성을 띠게 되었다.

이같은 2중성은 다시 獨逸의 分斷이 國際政治上 두가지 役割을 하게 되었다.

(1) 獨逸의 分斷이 國際問題에 있어서 潛在的인 상승작용 (冷戰의 潛在的 要因)을 하게 되었다.

(2) 獨逸의 分斷이 國內的인 問題가 國際化하는 傾向이 되었다.

獨逸問題의 이같은 國際政治上的 役割은 유럽이 東·西 冷戰時代를 거쳐 平和共存乃至 緊張緩和를 摸索하는 段階에 도달하였지만 複雜한 問題點은 繼續 남아있다고 보겠다.

유럽에서의 緊張緩和란 바로 東·西獨 問題가 抬頭되며, 東·西獨 問題를 觀察하면 統一問題가 尙징되고, 統一問題가 抬頭될 때는 冷戰의 “核”인 베르린問題가 提起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獨逸統一問題의 處理가 바로 東·西 緊張緩和로서 서로 불가분의 關係가 있다는 것이다.

第2次 世界對戰의 戰後의 獨逸問題 (概要)

第2次世界大戰의 敗北로 因하여 聯合國에 의해 占領된 獨逸의 分斷은 國民의 뜻에 의한것이 아닌것과 같이 統一 또한 獨逸國民의 欲望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었다. 獨逸은 地理적으로 유럽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어서 戰略적으로 重要的 位置에 있고 또 資源이나 人力 또한 強大國으로 抬頭될 수 있는 底力이 있기 때문에 獨逸의 統一은 유럽의 심장부에 強力한 民族國家를 形成하게 함으로서 周邊國家에 威脅이 될 것이요, 第1次大戰後의 히틀러의 登場을 목격한 周邊國家들이 反對하게 될 것은 지명한 것이다.

萬約 獨逸이 經濟的 및 軍事的으로 強大國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다면 "오스트리아"처럼 영세중립정책을 採擇하여 1952-1956年 사이에 統一을 이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금도 論議 對象이 되고 있다. 蘇聯이 1952年 3月 10日 西獨의 나토 加入을 저지하기 爲한 東獨각서에서 어떠한 國家와도 軍事同盟을 맺지 않는다는 條件이면 獨逸의 統一을 許容하겠다고 했을때 "아테나워"가 "오데르 나이에" 國境線을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統一의 길이 가까와 졌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1955年 7月 18日 "제네바"會議에서 英國首相 "이든"은 統一獨逸의 非武裝化와 強大國(美, 英, 仏, 蘇)의 保障을 主張했으나 西獨의 反對에 부딪쳐 論議되지도 못했다. 西獨의 反對 理由는,

(1) Status quo의 維持를 反對하고, 1937의 領土 回復을 地
上目標로하며

(2) 東獨政權을 承認하지 않으며

(3) 西方側 核武器의 힘으로 東歐圈을 굴복시킬수 있다고 했으며

(4) 外勢에 의한 中立化는 民族自決權을 박탈당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冷戰 바탕위에서의 統一 方案은 "스타린" 死後에 登場한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 政策에 影響을 받아 "아데나워"의 後
退와 함께 "에르하르트" 西獨 首相은 現狀維持의 바탕위에서 統一
問題를 接近시켰다. "키싱거"와 "브란트"의 대연정 時代는 對
共產圈 政策의 變更에 따라 "할슈타인" 原則을 事實上 拋棄하고
東獨의 存在를 認定하였다.

1969年 獨逸 社會黨과 自由民主黨의 소연정에 따라 "브란트"
"셸" 內閣은 東獨에게 國際機構에의 同時加入을 提議했고, 蘇聯과의
"오데르" "나이세" 선을 認定하고 武力拋棄 條約까지 締結하여 1972年
에는 東西獨이 事實上 國家間의 基本條約締結까지도 맺게됐다.

獨逸統一의 方案은 Status quo를 尊重하여 성급한 統一보다는
먼저 兩獨간의 人間的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接近이라는 現
實政治로 變했다.

"아데나워"가 積極 反對하던 "오데르" "나이세" 선을 結局
認定하고, 獨逸의 統一은 全유럽의 安全保障體制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蘇聯의 主張에 따라 全유럽의 安全保障會議 開催에 "프랑
스"와 西獨이 同意하였다. 이러한 變化는 統一方案의 20年 後退
라고 主張하는 學者도 많이 있다.

1. 獨逸分斷의 經緯와 現況

가. 世界 第 2 次大戰中の 戰後處理

"히틀러"가 "베르사이유"條約에 반기를 들고 2次大戰을挑發하자 聯合國에서는 獨逸을 分割하여 弱體國家로 만들려는 構想이 抬頭되었다.

(1) 蘇聯의 스탈린이 "이돈"外相에게 獨逸 分割意思 표명

(1941.12 月)

(가) "오스트리아"의 獨立

(나) "수데텐란트"地方 체코에 返還

(다) "라인"地方의 國家建設

(라) "바이에른"의 獨立

(마) 동프로이겐의 폴란드에 분양

(2) "처칠"首相도 獨逸分割案에 同意하고 "루스벨트"大統領에게 通告 (1941年 12 月)

(3) 루스벨트 大統領 獨逸을 3 個國 占領地域 國家로 分割案

(1944 年)

(4) "모스크바" 3 個國 外相會議에서 獨逸分割 公式論議 (1943 年 10 月)

(5) 테헤란 3 거두회담 1943 年 11 月 28 日

루스벨트 大統領은 5 個의 自治와 3 個의 國際聯合 管轄區域 分割案 提議.

(6) 獨逸 占領地帶에 대한 議定書 1944年 9月 12日

나. 얄타會談에서의 獨逸分割論議

1945年 2月 4日 蘇聯의 "얄타"에서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은 戰後 獨逸의 分割原則을 合意하고 各國의 外相들에게 委任하였다.

3個國 外相들은 獨逸의 完全軍縮, 非軍事化 및 獨逸分割을 包含하여 그들이 將來의 平和 및 安全의 要件이 된다고 看做되는 戒嚴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獨逸分割委員會"를 構成하였다.

獨逸分割을 위한 "歐洲諮問委員會"에 "프랑스"가 參加하고 "프랑스"도 獨逸의 分割에 參與하도록 하였다. (1945年 5月 1日)

다. 降伏文書의 署名과 分割問題

(1) 獨逸의 無條件降伏 1945年 5月 8日

降伏文書에는 獨逸의 分割問題를 提起하지 않았는데 그 理由는 敗戰 獨逸國民의 感情을 刺戟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2) 聯合國 4個國代表 獨逸最高 權力掌握宣言 1945年 6月 5日

여기서 獨逸의 國境線은 1937年 12月 31日 現在의 國境線에서 4個國의 占領地域으로 分割하였다. 베르린地區도 4등분하여 各國이 占領한다는 原則合意.

以上の 高찰에서와 같이 聯合國側은 獨逸의 統一이나 中央集

權化에는 전적으로 反對하였다. 그 理由는 第1次世界大戰의 敗亡에도 不拘하고 빠른期間안에 世界の 強한 軍國主義國家로 中央유럽에 군임하여 世界平和秩序에 混亂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라. 戰爭後의 分割問題

(1) 포츠담會議

이 會談에서는 實質的인 分割問題와 戰後獨逸의 經濟, 教育, 領土等 제반문제를 文書上 實質的으로 다루었다.

(2) 聯合國管理 委員會의 活動

이 委員會는 모든 案件을 만장 일치제로 택하였으며 蘇聯의 統一된 獨逸의 原則을 反對했기 때문에 委員會의 機能은 實上 마비 狀態였다.

(가) 美軍占領地域의 是正

“모겐소”計劃에 의하여 獨逸은 敗戰國으로서 占領되는 것이 統一을 위한 占領이 아니란點을 確實히 하였다. 무모한 戰爭을 挑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한다고 명시 하였다. 그러나 美國은 民主主義를 재건하 過程에서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1945年 5月 28日부터 州 政府樹立부터 始作해서 말단 地方自治制를 新設토록 하였

(나) 英國占領地域

各地方政府의 市長 및 知事의 임명과 법률에까지 깊이 관

하여 獨逸의 分斷을 戒하였다.

(다) 프랑스 占領地域

政治的인 面보다 文化, 經濟的인 面에 注重하여 分斷된 獨逸 政策을 支持했다.

(라) 蘇聯의 占領地域

社會主義 統一黨을 강제창당하고 戰爭보상금으로 100 억달러를 要求했다.

2. 冷戰時代의 突入

가. "처칠"의 철의 장막연설 · 1946年 6月.

美國의 財務長官 "번즈"의 蘇聯과의 結별宣言 · 1946年 9月

"투르만" "트루틴"과 "마셜" 프랜 · 1947年 3月

이러한 政策들은 蘇聯의 스탈린이 世界赤化 움직임에서부터 始作되어 戰爭도 아니고 平和도 아닌 冷戰이 始作되었다.

나. 런던外相會議 (1947年 3月)

西方 3 個國과 蘇聯과의 意見對立

蘇聯은 獨逸共同管理 委員會가 資格喪失이유로 脫退

베르린 統合司令部 解体 1948年 3月 20日

다. 西方 3 占領地帶의 統合

(1) 經濟的인 統一体制 (貨幣發行)

(2) 自治 政府樹立에 積極 協助

(3) 法令統合

라. 베르린 봉쇄 · 1948年 4月 1日 - 49年 5月 12日

蘇聯은 베르린市가 東獨蘇聯 占領下에 있기 때문에 모든 外國 軍은 撤收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모든 交通路를 遮斷하였다.

美國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공수작전으로 서베르린에 필수품공급을

단행하여 蘇聯을 극복시켰다.

라. 西獨의 政府樹立 (1949年9月7日)

- (1) 11個 州知事들이 추천하는 憲法學者들이 모여 憲法代身 基本法으로 명명하고 制憲議會 대신 議會評議會를 構成하여 “콘라도 아데나워” 博士를 議長으로 選出하였다.
- (2) 1949年8月14日 聯邦議會 選舉
- (3) 1949年9月 聯邦大統領과 首相選舉
- (4) 아데나워와 쿠르트 슈마하아는 동수를 얻었으나 아데나워 自身이 던진 한표를 더해 2백2표를 얻어 當選되었다.
- (5) “아데나워”는 西獨의 獨立과 西方과의 結合만이 統一에 임할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하였으나 “슈마하아”는 獨逸의 統一과 非武裝化 中立化등을 主張하였다.
- (6) 獨逸 聯邦共和國과 3個 占領軍사이에 占領條項이 改正되기 始作하여 1955年5月5日 占領條項은 廢止되고 聯邦共和國과 大使關係가 樹立되었다.

바. 東獨의 獨立

獨逸 社會主義 統一黨의 바이마르 憲法에 의한 獨逸民主主義 共和國 憲法요강 發表. 1947年12月6日

獨逸人民會議構成 - 全獨逸의 各界代表 主로 東獨의 社會團體들만 이 參席한 利用機構에 不過하였다.

사. 獨逸分斷과 冷戰

東·西獨의 獨逸分斷은 獨逸國民의 意思라기 보다는 美·蘇간의 令戰의 結果이었다. 西方側은 蘇聯封鎖作戰으로 西獨을 獨立시켜 西歐防衛共同體에 統合시키려 하였고 蘇聯은 東獨을 衛星國으로 하여 '바르샤바' 同盟國으로 끌어 들였다. 聯合國의 從來의 政策은 獨逸의 非武裝 非軍事化 였으나 東·西獨의 分割은 軍備競爭에 까지 이르렀다.

西方側은 1949年 4月4日 北大西洋條約機構를 創設하여 西獨을 加入시키고 西獨의 主權을 回復하는 代價로 再軍備를 하여 西方側의 一部 防衛를 分擔하였다.

東獨은 人民警察이라고 불리는 軍隊가 1952년에는 30萬으로 擴張되고 1955年 西獨의 再軍備를 認定하는 파리條約이 締結되자 共產側은 '바르샤바' 條約을 (東歐8個國包含) 締結하여 西方側에 對抗하였다.

西獨은 나토 加盟國中 美國 다음 가는 富強한 國家로서 莫大한 國防費도 美國 다음으로 支出하고 地上軍도 유럽에서 가장 莫強한 軍隊를 維持하고 있다. 東獨은 東歐圈中에서 蘇聯 다음으로 많은 國防費를 支出하고 있어 事實상 이데오로기의 紛爭의 先驅的인 役割을 하고 있어서 統一에의 길은 멀은 것 같다.

또 西方側이나 東歐圈도 구라과 心藏部에 統一된 強力한 大國이 存在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것 같아서 統一된 獨逸을 바라는 것은 말뿐이지 실지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점에서는 韓國의 경우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가로놓여 있는것 이다. 戰後 冷戰狀態는 時間과 指導者들의 更迭로 因하여 兩側軍備 競争은 繼續하면서도 共存을 認識하였기 때문에 獨逸에서도 例外일 수는 없었고 이 平和共存 무드에 轉승되어 1960年代말 부터는 和解雰圍氣가 造成되기 始作하였다. 西獨에서는 '빌리 브란트' 首相이 '69年 말부터 執權하였고 東獨에서는 '71年부터 '호네커'가 執權하였기 때문에 兩獨間에는 過去의 冷戰姿勢를 止揚하고 和解姿勢가 造成되어 兩獨의 유엔加入도 서로 合議下에 實現되고 現實적인 實利에 依해 事實上의 國交正常化를 가져 왔다. '호네커'는 71年 6月の 8次 全党大會에서 西獨과의 平和共存意思를 闡明하고 71年 10月부터는 東·西獨間의 '베르린' 協定 細部施策에 관한 協議가 行해져서 現在 大使級 代表를 常住시키고 있다.

軍事面에 있어서 東獨은 西獨에 比較가 되지 않는다. 西獨은 兵力의 數나 裝備面에서 壓到的 優位를 차지하고 있다. 이 軍事上의 不均衡은 西獨이 戰爭을 目的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防衛를 目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東·西獨은 이밖에도 各其의 軍事同盟과 美·蘇의 核 兩傘에 의 해 그 安全을 保障받고 있다. 西獨과 東獨의 經濟的 復興은 戰後 10余年間이나 軍隊를 두지 않고 經濟를 政策에 만 主力했기

때문에 急成長할 수 있었다.

西獨은 元米 重工業地帶였으나 東獨은 農業地帶였다. 西獨은 '마살'計劃에 따라 일찌기 復興했으나 東獨은 工場들을 蘇聯 占領軍이 賠償조로 가져가 버려 復興이 늦었다. 西獨에는 約 2千7百萬의 勤勞者가 있고 東獨에는 約 8百70萬의 勤勞者가 있다.

이것은 人口比例로 보면 높은 比率인데 東獨에서는 停年退職年齡이 높고 婦女者들도 勤勞에 奉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獨逸聯邦共和國 (11個州로 이루어진 聯邦共和國), 獨逸民主共和國 (中央執權體制)

24萬8千5百71평방마일 100 ; 4,410萬8千1百73평방마일

6千1百만명 100 ; 28. 1千8百만명

重工業地帶	農業地帶	
	서독	동독
勞働者比率	100	32
鉉山, 製鍊化學 (基本産業從事者) ...	3%	3%
技術職	4%	4%
農 業	11.3%	12.5%
商業, 運輸事業從事者	20%	20%
教育, 文化, 科學	5%	7%
經濟, 行政, 司法	17%	12%
總社會生産 (年平均 - 1969年)	48%	4.5%

産業總生産量增加 (-1969年) ... 31% ... 3%
 (1968) 1천1백40억 3백억 달러
 國民所得 (1968) 1천9백30달러 1천8백30달러

經濟적으로 볼때 東·西獨의 G.N.P의 一人당 國民所得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憲 法

(1) 政 治 制 度

獨逸聯邦共和國 (選舉와 國民投票)	獨逸民主主義共和國
<p>權力分立主義 - 바이마르憲法下의 經驗을 살려 大統領權限 消滅을 基本法의 主要目標로 하고 있어 議會中心主義를 挾하고 있다.</p>	<p>權力非分離主義 - 社會統一黨이 最高機關으로 모든 國家權力을 行使하고 있어 社會民主主義와 프 로케타리아 獨裁를 포방하는 社會主義 憲法이다.</p>
<p>(1) 聯邦議會 議員은 直接 選舉에 選出 1人1票로 地域區와 政黨 ○ 比例代表制 ○ 憲法改正權, 立法權, 首相選出權, 大統領 彈劾權, 聯邦 裁判所 판사 선거권, 立法</p>	<p>(1) 社會主義 國家 東獨憲法은 東獨이 獨逸民族이 社會主義 國家임을 強調 社會主義 經濟路線 採択 勤勞者에게만 主權이 認定되고 全民族의 힘이 民主獨逸의 人民戰線에 집결되고 모든 權力</p>

독逸聯邦共和国 (選挙와国民投票)	獨逸民主主義共和国
<p>에는 聯邦議회의 의결만으로 成立하는것과 聯邦 參議원의 同意를 얻어야 하는것도 있다.</p>	<p>은 國民의 福祉를 위해서만 使用되어야 하고 市民의 政治的 權力은 國民대의 機關에 의해서 行使된다고 規定하고 있다.</p>
<p>(2) 聯邦參議員</p> <p>各州의 의사를 반영하는 聯邦이 立法行政에 반영시키는 機關으로서 上院의 役割을 한다. 議員은 各수가 任命하며 投票權은 3표 내지 5표의 表決 권을 갖는다.</p>	<p>(2) 權力集中主義</p> <p>東獨의 모든 國家權力은 勤勞者에게 있으며 勤勞者의 主權은 民主的 中央執權主義의 근거하에 行使된다.</p> <p>人民委員會는 最高의 國家 權力的 機構이다.</p>
<p>(3) 聯邦大統領</p> <p>聯邦議會에서 選出하는 國際法上의 國家代表 形式的인 聯邦首相 任命權 議會에 의해서 불신임투표가 首相에게 행해졌을 때만 議會를 解散할 수 있다.</p> <p>大統領의 權限은 事實上 외래적인 權限 뿐이다.</p>	<p>(3) 人民議會</p> <p>人民議會는 立法權의 決定機關으로서 東獨 發展의 目的을 決定하고 이 會議은 國家 評의회, 咨詢회의, 國防위원회, 最高法院과 檢察部 活動의 原則을 決定하며 위 機關의 長을 選出한 權限을 갖는다.</p> <p>또 人民會議은 條約의 비준권</p>

독逸聯邦共和國 (選舉와國民投票)	獨逸民主主義共和國
<p>(4) 聯邦政府</p> <p>聯邦政府는 聯邦首相과 長官들로서 構成된다.</p> <p>(5) 聯邦裁判所</p> <p>法院에는 聯邦憲法 裁判所와 聯邦上級裁判所가 있다 上記 法院은 위헌立法審査權, 聯邦議會議員 자격심사권, 委員政黨 解散權등 重要한 權限이 부여 되어 있다.</p> <p>(6) 聯邦主義와 地方分權主義 각 수도 수의헌법과 수의회가 있다.</p> <p>(7) 基本權 尊重主義</p> <p>基本權을 천부인권인 自然權</p>	<p>공포권을 가지며 國政의全般에 걸친 廣範한 權限을 갖는다.</p> <p>(4) 國家評議會</p> <p>國家評議會는 人民議會가 폐회중인 境遇에는 人民議회의 모든 權限을 行使하고 國家評議會 議長은 東獨을 外國에 대하여 代表한다.</p> <p>(5) 閣僚會議</p> <p>閣僚會議는 人民會議에 의하며 東獨의 經濟的, 文化的, 社會的, 國家防衛的 任務를 行使하는 集團的 機關이다.</p> <p>(6) 法院</p> <p>社會的 적법성의 權限은 法院이 가진다. 法院은 自由와 平和로운 生活과 人間의 尊嚴을 保護한다.</p> <p>(7) 中央執權主義</p> <p>東獨創設當時는 聯邦制를 採</p>

독逸聯邦共和国 (選挙와国民投票)	독逸民主主義共和国
<p>으로 認定하고 이 基本權은 國家權力인 立法權, 執行權, 司法權을 구속한다고 하였다.</p>	<p>扱하였으나 1952年 中央執權 體制로 憲法을 改正하여 主政府의 權限을 地區評議會에 權限을 이관하였다.</p> <p>(8) 基本權 保障主義</p> <p>基本權으로서는 自由權, 平等權, 生存權, 請求權, 暫定權등을 保障하고 있는데 自由主義 國家의 基本權과 差異가 있음은 勿論이다.</p> <p>憲法에는 東獨은 모든 市民에게 權利行使와 社會的 發展에 參與하는 權利를 保障한다. 社會的 적법성과 법적 安全性은 保障한다.</p> <p>人間의 尊嚴의 尊重과 保障, 人格 自由의 尊重과 保障은 모든 國家機關 社會的 계 세 력과 個人 市民의 義務이다. 그러나 自由權의 保障과 거수 이전의 自由도 많이 制限되어 있다.</p>

(2) 比較 (憲法)

兩獨 憲法은 最初에는 바이마르憲法에서 出發하였으나 完全 다른 制度로 變遷하였다. 西獨 基本法은 社会的 法治主義에 立脚한 資本主義的 憲法인데 반하여 東獨憲法은 私有財産을 否認하고 "프로레타리아" 獨裁에 立脚한 共產主義 憲法인 것이 特色이다. 西獨 憲法은 憲法條文이 그대로 適用되고 있는 實用的 規範的 憲法인데 반하여 東獨憲法은 "이데오르기" 的 명목적 憲法에 不過하다.

자. 政治制度

東·西獨에는 비슷한 이름이 政黨이 있으나 그 組織體와 이름은 다르다. 選舉制度도 西獨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制에 의하나 東獨에서는 民主獨逸 統一戰線에서 候補者中에서 決定하기 때문에 間接選舉와 같은 結果가 되었다. 西獨은 議員內閣制로서 多數政黨이 없을시에는 聯立內閣을 構成하여 政權을 잡고 있다. 이에 반하여 東獨은 人民議會를 두어 모든 國家權力을 統攝으로하여 政權을 行使하고 있다.

西獨의 代表政黨들은 基督教民主聯盟 (C.D.U.) 과 이 姊妹黨인 基督教社會主義聯盟 (C.S.U.), 그리고 獨逸社會民主黨 (S.P.D.) 그리고 自由民主黨 (F.D.P.) 만이 聯邦議會를 代表하고 있다.

独逸联邦共和国議會 議席 比率

政 党	基督教 民主 主義 聯盟 基督教 社会 主義 聯盟	独逸 社会民 主党	自由民主党	其 他
1949	139 (31.0)	131 (29.2)	52 (11.9)	32 (9.7)
1953	243 (45.2)	151 (28.8)	48 (9.5)	15 (5.4)
1957	270 (50.2)	169 (31.8)	41 (7.7)	17 (3.4)
1961	242 (45.3)	190 (36.2)	67 (12.8)	0 (2.8)
1965	245 (47.6)	202 (39.3)	49 (9.5)	0 (3.6)
1969	242 (46.1)	224 (42.1)	30 (5.8)	0 (5.4)
1972	225 (44.8)	230 (45.9)	41 (8.4)	0 (1.0)
1975				

차. 軍事制度

勝戰聯合國들은 戰後 獨逸을 分割해서 永世中立이나 또는 非武裝地帶를 만들어 또다시 유럽의 平和秩序를 混亂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自由世界와 共產世界の 冷戰의 結果로 分斷된 獨逸은 다시 再武裝에 軍備競爭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허나 軍事面에 있어서 東獨은 兵力面이나 裝備面에서 西獨에 比較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兩獨은 自体内의 武器보다도 美·蘇의 核雨傘 밑에서 있기 때문에 防衛問題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 形便이다. 또 兩獨은 西方側과 共產側이 서로 自体障營과 軍事條約을 맺고 있기 때문에 武力衝突은 없을 것으로 豫想된다. 戰後 10余年間 軍事費의 支出이 없었기 때문에 經濟復興이 빨리 되었을 것이라는 主張도 많이 있다. 西獨은 나토내에서 美國 다음가는 많은 軍事費와 軍隊를 가지고 있고, 東獨 또한 東歐圈에서 蘇聯다음으로 가장 強力한 軍隊와 軍備를 支出하고 있다.

西 獨	東 獨
憲兵制度 採択	憲兵制度 採択
總 46 万 7 千名	總 12 万 6 千名
服務期間 18 個月	服務期間 18 個月
70 年 國防費支出 61 億 8 千 8 百 달러	
1 人 當 國防費支出 100 백 4 \$	1 人 當 國防費支出 100 백 16 \$

西 独	東 独
지·엔·피 대비교 3.3%	지·엔·피 대비 5.9%
71년도 国防費는 59億 6千1 百万弗	71年度 国防費支出 21億 2千 4百万弗
議會가 国防에 關한 最高의機關 陸·海·空軍은 나토의 指揮下에 各 直屬機關은 戰爭時에 만	12名으로 構成된 12名의 国 防會議가 最高機關이다.
陸軍 32万 7千名 (現役) 54万의 (豫備役)	陸軍 9万名 3万의 勞動者 武装
海軍 3万 6千名	海軍 1万 6千
空軍 10万 4千	空軍 2万名

카. 經濟制度

(1) 西 独

西独은 敗戰後 經濟적으로 거의 破産 直前의 狀態에서 出發
하였으나 後進的인 東独이 分離됨으로서 순화된 資本主義 社
會로서 急速하게 재건되어 1953年 - 60年 사이에는 7%나
되는 經濟寄蹟을 이루었고 1960年 - 69年 사이에는 4.8%
에 달하는 成長을 이루었다.

戰爭중 工業施設의 破壤는 生覺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었다.

鐵鋼設備는 10% 化學工業은 10-15%, 機械工業은 15-20%, 纖維工業은 20%程度 破壞되었기에 復興은 急速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戰爭中 破壞된 獨逸內의 工業施設

種 類	西 獨 側	東 獨 側
鐵 鋼 業	10 %	80 %
化 學 工 業	10 % - 15 %	70 %
機 械 工 業	15 % - 20 %	70 %
纖 維 工 業	20 %	85 %

西獨은 1948年 “마샬플랜”의 發足에 따라 이에 加入 었고 1949년에는 유럽經濟 協力機構의 發足에 따라 이에 參加했다. 西獨의 經濟制度는 社會的 市場經濟 制度를 採했다 이 制度는 混亂期의 統制經濟와 無制限한 自由主義 經濟와의 中道적인 政策으로서 市場을 통한 價格體制를 통하여 需要供給 關係를 維持하되 國民의 最底限度의 文化的 生活을 確保하기 위하여 統制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私有財産 制度를 尊重하고 競爭秩序에 따라 國民의 自由와 創意를 開發하고 國家는 單純히 市場의 調整자로서의 機能하는 것이다. 西獨의 産業大宗은 工業이다. 獨逸의 工業은 前後 美國의 積極的인 援助와 豊富한 地下資源 못지않게 成功的인 經濟政策과

復興시킬 수 있는 底力있는 人力에 있다고 보겠다. 經濟는 安定되어 自由世界 第2의 生産庫를 마크하고 69年末부터 마르크화를 수차 절상시켜 75年 現在는 1:2.403의 価値를 가지고 있다.

(2) 東 獨

東獨의 工業生産 能力은 西獨과는 달라서 大戰 末紀 戰爭으로 大部分 破廢되었으며 蘇聯軍이 戰爭 배상비로 많은 工場을 解体해 갔고 經濟計劃을 수차 修正하면서 단행했기 때문에 그 成長이 比較的 높았다. 東獨은 劃一的인 中央管理 經濟를 採択하여 重要産業의 國有化 社會化에 努力하였다. 經濟計劃實施 狀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個年 經濟計劃 1949-1951年.....이計劃에 의하여 1936年의 工業水準을 回復시켰다.

第1次 6 個年計劃 1951-1955年.....鉞工業 生産을 1936年의 2倍 目標로 經濟計劃實施로 目標達成 시켰다.

第2次 5 個年 經濟計劃 1955-1959年.....이計劃은 社會主義 經濟建設 및 生産力의 不均衡의 시정이었다. 이計劃은 1958年 초기 達成되었다.

第3次 5 個年計劃 1957年-1961年.....이計劃은 重要한 工業食品 및 生産物이 住民 1人당 消費量을 西獨에 따라 가도록 하였다.

第1次7個年計劃 1961年 - 1968年
第2次7個年計劃 1964年 - 1970年 } 중복된 이 計劃의 目的은

石油化学, 電子工学들에 의한 化学化 自動化를 重点으로 人民
所有의 工業에 있어서의 勞動生産性を 1963年 1백 60%에 向
상시키고 投資를 300億 마르크로 增大시켰다.

1966年 70年間の 投資의 上昇率は 9.7%였으나 1971年
'75年의 5個年 計劃에 있어서는 5.1-5.4%로 낮추고 있
다.

71年에의 76年까지의 國民經濟發展 5個年計劃은 5年間に
國民所得을 70年에 비해 26-23%등의 增加를 目標로 하고
있다.

東·西獨間の 經濟分析에 있어서는 西獨이 東獨의 2倍以上의
土地를 가지고 있으며 또 東獨의 3倍 以上の 人的資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經濟總生産量에 있어서는 엄청난 差異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 冷戰과 獨逸統一方案

가. UN外交 試圖 西獨의 自由總選舉 實施案

西獨政府의 最初의 統一政策은 全獨逸을 통한 完全한 自由選舉를 위한 主張으로서,

- (1) 1951年 3月 9日에 聯合國 側에 占領 4個國이 自由選舉를 可能케 해 달라고 要求하고,
- (2) 同年 9月 27日에는 選舉를 위한 14個項의 政策發表와
- (3) "유엔"의 調査委員會의 構成을 要求하고 나섰다.
- (4) 1951年 12月 8日 파리에서 열린 "유엔" 政治委員會會에서 西獨逸代表가 "유엔" 調査委員會 構成을 要求하는 演說을 했다.
- (5) 同年 12月 20日 "유엔" 總會는 調査委員會 結成.
- (6) "유엔" 調査委員會가 1952年 3月 16日부터 23日까지 活動을 啓示했으나 東獨이 이 委員會의 東獨 및 東伯林 諸國拒否로 調査活動에 制約을 받았다.
- (7) 1953年 5月 29日 "아데나워" 首相은 "아이첸하워" 大統領에게 全獨逸의 自由選舉를 위한 8個項의 西獨統一方案을 提示했다.

이 政策의 目的은 "유엔"을 통한 自由選舉方案으로서 "할슈타인" 政策에 立脚한 韓國의 統一方案과 같은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유엔"에서 西方側이 絶對的으로 優勢하였으므로 "유엔"

힘을 빌리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北韓이 "유엔" 監視委員團의 入國을 拒否한 것과 같이 東獨도 이의 管轄領土內에 "유엔" 調査委員會의 入國을 拒否하여 이 政策은 아무런 成果도 거두지 못했다.

나. 朝鮮의 獨逸中立化方案

朝鮮은 1952年 3月 10日 西方 3個占領國에 獨逸과의 平和條約締結을 위한 東獨統一方案을 提示했다. 이 案은 獨逸의 中立化와 軍事同盟의 非加入案이 保障된다면 西方側과 統一問題를 協議하고자 하였다. 朝鮮은 이 覺書에서 獨逸의 統一은 獨逸의 中立化와 主權 및 軍事力의 制限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西方側은 이 案이 西獨의 西方側 軍事同盟에의 加入을 沮止하기 위한 脚本으로 判斷하여, 3月 25日 回信에서 全体獨逸의 自由選舉實施를 위한 霧困氣造成이 未洽하다는 理由로 이를 拒絶하였다. 여기에 附言하여 앞으로 獨逸의 軍事同盟은 統一된 獨逸이 自由決定을 가져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다. "본" 平和協定締結

西方側은 朝鮮의 이러한 提案을 無視하고 1952年 5月 26日 에는 "본" 平和協定을 西獨側과 締結하였다. 이 協定에서 獨逸聯邦共和國은 西方國家의 西獨內의 軍隊駐屯權利를 認定하고 駐屯을 위한 一部經費를 西獨이 負擔하여 獨逸統一의 促進을 約束하였다. 또 이날로부터 西伯林的 4個國 共同管理를 중식시키고 西獨의 自

治地域으로 併合하였다.

조선은 그 뒤에도 같은 案을 數次 되풀이하였으나 西方側도 똑같은 主張을 되풀이하자 1954年 3月 25日에는 東獨이 主權國家임을 宣言하고 東獨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朝鮮軍이 東獨內에 駐屯할 것을 闡明하였다.

라. 西方側 朝鮮의 中立化方案 一蹴

1955年 1月 25日에는 朝鮮은 獨逸과의 戰爭狀態를 終了했다고 宣言하고 朝鮮으로서는 獨逸統一의 責任이 없으며 이는 오히려 西方側에 있음을 間接 示唆했다. 이 宣言이 있은지 4個月만인 5月 15日에는 "오스트리아" 中立化 統一条約이 成立되었다.

이러한 朝鮮의 獨逸中立化方案에 西方側이 反對한 理由는 政治目的 및 軍事的인 理由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第2次世界大戰後 朝鮮은 世界到處에서 "이데오로기"의 論爭을 繼續하면서 西側 影響圈內에 있는 國家에 대해 露骨的인 侵略을 繼續하고 朝鮮의 影響圈內에 吸收하여 世界共產化를 企圖했던 것이다. 더구나

- (1) 1949年 9月 朝鮮이 첫 原子爆彈實驗에 成功했고,
- (2) 1949年 10月 1日 毛澤東이 中國大陸에 共產政權을 宣布했고,
- (3) 1950年 6月 25日 北韓이 南侵을 開始하는등 國際情勢가 迫하게 되자 西方側은 軍事的 및 經濟的인 潛在力이 있고 西獨의 再武装化問題에도 轉換을 가져오게 됐다.
- (4) 韓國戰爭이 勃發하자 同年 7月 23日에 美軍占領司令官

크로이" 將軍이 獨逸의 自衛權을 宣言하였다.

(5) 이어 8月8日의 "歐洲諮問委員會" 에서는 "치칠" 首相은 "유럽" 防衛軍의 創設을 위한 具體案을 提出하여 決議되었다.

마. 西獨의 再武裝合意

1950年8月17日 西獨 "아데나워" 首相은 東獨이 人民警察이름으로 再武裝했으므로 西獨도 그와 맞설 수 있는 15萬 程度의 防衛軍 創設을 西方3個占領國에 要求했었다. 美國과 英國은 條件附로 이에 同意했으나 "프랑스" 는 反對했었다. 이 再武裝問題는 國外뿐만 아니라 西獨內에서도 強力한 反對에 부딪치기도 했다. 當時 野黨인 社會民主黨의 黨首 "슈마하아" 는 西獨의 再武裝은 獨逸統一의 癡的存在가 된다고 極力 反對했다. 基督教民主黨에서는 萬若 西獨이 再武裝해서 "유럽" 軍에 加入하는 경우 平等權問題가 事前 合意해야 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아데나워" 의 끈질긴 要求에 의해서 1951年7月9日 3個占領國은 獨逸과의 戰爭狀態를 終結하고, 同年9月14日에는 西獨을 同等한 權利를 가진 유럽大陸 共同體의 一員으로 받아들이는데 合意했다.

바. 西獨의 完全主權回復

1954年10月13日에는 "파리" 에서 西獨이 "나토" 와 "西歐聯盟" 에 定式 加入되어 西獨의 主權回復을 비롯하여 獨逸이 同

等한 權利를 가진 유럽共同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 "파리" 條約에서 西獨은 "西歐同盟條約"에 의해서 原子, 細菌, 化學武器의 生産을 拋棄할 義務를 지게 되었다.

조선의 獨逸中立化 提案은 強力한 軍事的潛在力을 가지고 있는 西獨이 西方側에 編入되는 것을 막기 위한 政策으로 쓸이될 수도 있고, 어느 程度의 政略的意圖가 있었던 것도 틀림없다.

西獨이 完全主權國家로서 西歐諸國과 同等한 立場으로 "나토"의 會員國이 되자 조선은 1955年 5月 14日 "바르샤바" 條約을 締結하여 東獨은 이 條約의 會員國으로 加入시켜 冷戰體制는 完成을 보게 되었다.

사. "이든"의 段階的 統一方案

伯林 4個國 外相會議 (1954年 1月 25日 ~ 2月 18日)에서 英國外相 "이든"은 獨逸統一 5個原則을 提案해서 西方 3個國案으로 採択되었으나 그러나 조선이 反對하여 아무런 結論도 없이 閉會되고 말았다. 즉 이 5個原則은,

- (1) 全獨逸의 自由選舉 實施
- (2) 이 選舉에서 當選된 代表를 召集하여
- (3) 憲法草案과 平和條約締結 草案을 맞게 하고
- (4) 憲法採択과 平和條約協商의 機能을 가진 全獨逸政府를 構成하고
- (5) 主權國家로서 効力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1954年 3月 25日 朝鮮이 東獨의 主權國家임을 宣言하자 西方側은 이를 認定하지 않고 "할슈타인"原則을 適用하여 東獨과의 外交關係 樹立을 막는데 注力하였다.

아. "런던"會談과 西獨의 單獨代表權 主張

1954年 10月 3日 "런던"會談에서 西方3個國은 西獨만이 全獨逸을 代表할 수 있는 政府임을 宣言하고, 平和的方法에 의한 完全自由統一獨逸의 副設이 西獨政府의 目的임을 宣言하고, 獨逸占領聯合國의 "파리"終結條約은 平和條約의 締結이 될 때까지 締約當事局들의 平和的 方法으로 西獨과 같이 自由民主的 憲法을 가지고 유럽共同體에 統合된 獨逸의 建設이라는 共同目的을 達成하는데 協同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 西獨 英國의 現狀固定案 反對

"제네바"頂上會談에서 "이든"首相의 統獨提議(1955年 7月 18~23日) 西獨이 主權國家로서 1955年 5月 5日 獨立했다라도 獨逸統一問題는 西方側의 關心領域을 떠날 수는 없었다. 즉 "제네바"頂上會談에서 "이든"首相은 東西獨分斷의 現狀을 固定化하는 統獨提議(1955年 7月 18~23日)을 하였다.

- (1) 7月 18日 "이든"英國首相은 4大國會談參加國과 統一獨逸이 締約當事者가 되는 安全保障條約을 締結할 것을 提議하였다. 이 案의 內容은 條約締結當事國은 한 나라에 대한

어떠한 侵略도 共同으로 防禦하여야 하며 東·西獨과 隣接한 國家에 駐屯할 軍隊의 規模와 裝備에 대하여도 約定하고 이 條約의 遵守를 監視하기 위한 機構設置도 提議했다.

- (2) 7月22日에는 才 2의案을 提出했는데 이것을 獨逸統一을 前提하지 않고 獨逸의 分斷委에 共同監視機構 設定을 提議했다. 이것은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를 東獨과 西獨의 國境으로 하자고 했으나 이 案의 目的은 獨逸分斷의 現狀 維持에 置重하였기 때문에 西獨이 이에 反對하여 유산되고 말았다.

차. 美國務長官의 統一方案 · 1955年 10月

獨逸統一의 責任을 認識한 4大國 外相이 "제네바"에서 再會 合하여 統一方案을 熟議하게 되었다. 西方側은 眞正한 西歐의 安全이 獨逸의 再統一을 통해서만 實現될 수 있다고 主張하고, 1956年初까지 選舉를 치를 수 있는 法令 및 機構를 設置하자고 美國側에서 提議했다.

- (1) 憲法制定과 統一獨逸政府를 樹立한 全獨逸國民議會議員을 選出할 自由, 秘密選舉를 1956年 9月中에 實施할것.
- (2) 選舉法基礎準備委員會를 設置한다.
- (3) 이 委員會를 1956年初까지 構成하여 4大國에 保障할것.
- 이 案은 매우 迅速한 獨逸統一方案으로서 짧은 時日안에 統一을 하려고 했던 것은 雜音을 없애려고 試圖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조선의 拒否로 案件조차 審議하지 못했다.

카. "모로토프" 統一方案

이 會談에서 조선 外相 "모로토프"도 조선이 单独案件을 提出하였다. 여기에서 다시 東·西獨을 同等한 資格으로 登場시키코자 兩獨議會 代表로 構成되는 全獨委員會를 構成하고자 提議했다.

(1) 全獨委員會는 兩獨機關의 協議機關으로서 東·西獨의 議會代表로 構成된다.

(2) 이 全獨委員會에 通貨, 獨逸內 資本移動, 關稅, 郵便, 通信을 包含하는 經濟的 文化的 紐帶를 強化하기 위하여 兩獨代表로 構成하는 混成委員會로 한다.

(3) 全獨委員會는 西獨의 經濟 및 領土防衛上 必要로 한 軍事力의 數를 制限한다.

(4) 全獨委員會는 歐洲安全에 協調하는 西獨參加問題를 決定하고 平和的이고 民主的인 獨逸統一의 先行條件을 討議한다.

이 案은 最初의 東·西獨統一方案의 具體案이었으나 東·西冷戰의 結果로 아무런 合意없이 11月 16日 閉會되고 말았다.

4. 解氷時代를 向한 統獨方案

4 大國 "제네바" 外相이 決裂되자 이때부터 獨逸統一問題를 東·西獨 内部인 兩獨의 問題로 看做하는 傾向이 생겼다. 특히 朝鮮은 獨逸問題는 2 個의 主權國家인 東獨과 西獨의 内部問題로 보기 始作하였다. 이 時期는 朝鮮과 美國이 平和共存을 意識한 時期였기 때문에 統一方案도 어느 程度 부드러워졌다.

가. 西獨의 統一方案 (1956 年 9 月 1 日과 1957 年 5 月 24 日)

西獨政府는 獨逸統一問題는 朝鮮의 妨害政策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朝鮮의 政策을 비난하는 覺書를 發表하였다. 이 覺書는 西方側의 支持를 얻었으나 東·西緊張緩和에 따라 修正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 (1) 西獨은 東獨과의 交渉을 拒否할 것이다.
- (2) 西獨은 平和를 사랑하는 國家임을 宣言한다.
- (3) 獨逸統一의 責任은 4 大國에 있으되, 獨逸國民의 自決權을 尊重할것.
- (4) 朝鮮은 統獨을 妨害하지 말 것이다.
- (5) 東獨政府의 國家聯合案은 現狀 固定政策으로 統一獨逸의 妨害要素이다.
- (6) 西獨은 西歐安保條約을 討議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言明했다.

나. 東獨의 國家聯合案 (1956年 . 1961年)

1956年 12月, 東獨의 社會主義統一黨의 "올브리히트"는 東·西獨의 國家聯合案을 내놓았다. 이것이 東獨과 修交를 한 國家들에 의해 承認되어 東獨의 公式統一方案으로 採択되었다. 이 案도 東獨은 西獨으로부터 主權國家로서의 認定을 한 바탕위에 協商을 提起해왔다. 이 案은 現存하는 兩獨에 國際法的으로 聯合하고 兩獨議會代表들로서 全獨逸理事會를 開催하여 同理事會가 兩獨國家를 接近시키는 作業을 하자고 提議했다.

쏘련은 이 案을 絶對支持하고 西獨側의 反應이 없음을 遺憾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西獨은 "나토"의 核戰爭準備를 拋棄하고 여러 나라와 平和條約을 締結하지 않으면 分斷狀態를 持續할 것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했다.

(1) 獨逸內에 核武器의 製造 및 貯藏을 禁止할것.

(2) 兩獨은 "나토"와 "바르샤바"에서 脫退하고 軍事力을 制限하고 國民徵兵制를 廢止할것.

(3) 全獨逸에서 外國軍의 撤收를 保障할것 等이었다.

이후 共產側은 繼續 이 案을 東獨의 方案으로 提案했고 1959年 "제네바" 4大國 外相會議에서는 特記할만한 案을 追加 提案했는데 이것은,

(1) 獨逸이 統一될 때까지 西伯林은 非武裝自由市로서 特殊한 地位를 가지게 하고

(2) 獨逸國境은 1959年 1月 1日 現在의 것으로 한다는 條項

등이다.

이 案이 內包한 低意는 伯林市를 西獨으로부터 完全分離시켜서 하나의 特殊地域으로 만들려는 意圖이다. 그렇게 되면 伯林市는 東獨의 領土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影響力을 增大하여 東獨의 完全 影響圈內에 들어갈 수 있다는 計算에서이라 볼 수 있다.

두번째 案은 또 西獨으로 하여금 "오데르 나이세" 國境線을 認定하고 協商에 臨하자는 案이었으나 西獨은 이 國境線을 認定하지 않았던 때이었다.

다. 1959年 西方側 外相案 (1959年 5)

西方側의 主張을 두 차례에 걸쳐 討議하였으나 伯林問題가 提起되어 事實上 아무 成果없이 閉幕되었다.

(1) 自由選舉와 軍縮案 討議에 의하여 伯林의 統一問題는 다루어야 할것.

(2) 東·西獨 (15 : 25)의 比率로 構成되는 全獨逸選舉法을 基礎할 委員會를 構成한다.

(3) 이 案이 可決되면 2年以內에 全獨逸政府를 세운다.

(4) 全獨逸政府와 4個國間에 平和條約을 締結한다.

이 案도 東·西獨側이 받아들일 것같았으나 伯林問題가 暫定的인 問題로 대두되지 않았드라면 妥結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라. 分断固定과 統一政策

東·西獨은 漸次 分断의 固定化土台위에서 統一方案을 摸索했고 兩陣營은 점점 더 힘을 增加시켜 이들의 影響下에 두게 되었다. 이로써 共產側의 朝鮮은 東獨의 國家聯合論을 代弁하게 되었고 西方側은 西獨의 自由總選舉論을 代弁하게 되었다. 그러나 解氷무드와 함께 獨逸統一問題는 獨逸의 國內問題라는 方向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케네디" 大統領과 "후루시초프" 書記長이 1961年 6月初 "비엔나"에서 頂上會談後 "후루시초프"는 지금까지의 東獨國家聯合論을 되풀이하였으나 獨逸의 統一問題는 東·西獨의 國內問題라고 못박아 말했다. 그뒤 東獨은 經濟的인 沈滯現狀이 繼續되고 伯林을 經由해서 西獨으로 많은 勞動者들이 亡命하고 있기 때문에 共產國家들의 同意를 얻어 1961年 8月 22日에는 그들의 "엑스도스" (exodus)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障壁을 쌓았다.

同年 9月 유엔 總會에서 朝鮮은 "나토"와 바르샤바" 사이에 相互不可侵條約을 締結하자고 發表하고 뒤이어 東獨의 "울브리히트"는 11月 27日에 東·西獨關係改善을 위한 새로운 案을 發表했다.

마. "울브리히트" 案 (1961年 11月 27日)

- (1) 兩獨은 相互의 主權을 尊重하여야 한다.
- (2) 兩獨逸은 平和條約을 위한 協商을 시작할것.
- (3) 兩獨은 核武器生産 및 使用을 拋棄할것.

(4) "나토"와 "바르샤바" 간의 不可侵協定을 締結할것.

(5) 兩獨逸 代表가 國家聯合案에 대한 協商을 시작해야 한다.

이案 亦是 東·西獨의 理解相反과 東·西陣營의 意見衝突로 아무 成果없이 끝을 맺었다. 그러나 當時 "케네디" 大統領은 "후루시 초프"와 "비엔나" 會談後 伯林問題 때문에 核戰爭까지 번질 憂慮가 있다는 念慮로 美國의 國務長官 "러스크"에 다시 東·西獨의 問題를 解決하라고 命令했다. 그래서 다음 해인 1962年 3月1日 伯林問題를 들고나와 4月 23日에는 包括的인 獨逸 統一方案을 提出했다.

바. 러스크案 (1962年 4月 23日)

(1) 東·西獨代表가 參加하는 伯林自由通行 國際監視機構를 設置한다.

(2) 4個國의 統一問題常設機構 設置와 全獨逸 專門委員會를 設置하여 東·西의 文化交流를 担當할것.

(3) 西獨은 "오데르 나이세" 國境線을 認定하되 東獨의 主權을 尊重하여 "나토"와 "바르샤바" 간의 不可侵을 宣言할것.

(4) 核保有國은 非核國에 製造情報를 주지 말것.

이 案이 發表되자 西獨은 猛烈한 反對意思를 表示했다.

이것은 事實上의,

(1) 東獨政權 認定과

(2) "폴란드" 國境線의 認定이다.

美国의 이러한 試圖는 朝鮮을 滿足시켜 朝鮮으로 하여금 東獨에 壓力을 加하여 獨逸問題 解決을 試圖한 것이라 하겠다. 이 案이 西獨의 反對에 부딪치자 美国은 더 以上 獨逸의 統一問題에 關心을 表明하지 않았다.

사. 東·西 冷戰解氷과 統獨方案

“아데나워” 西獨首相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社會主義政당은 1961年 9月 總選舉에서 絶對多數를 얻지 못하여 自由民主黨과 小聯立政府를 세웠다. “아데나워” 政府는 美国과 朝鮮간의 解氷무드에도 아랑곳없이 繼續 強硬政策을 採択하였다. “아데나워”는 国力向上만이 統一에의 直結이라고 主張하였다. 그가 才 4次 聯立政府 發足以後 내세운 政策은 다음과 같다.

- (1) 西獨의 安全保障만이 모든 問題에 優先한다.
- (2) 西獨과 西伯林과의 連結持續이 西獨의 基本立場이다.
- (3) “할슈타인” 政策을 固守한다.
- (4) “오데르 나이세” 國境線을 認定할 수 없다.
- (5) “나토”의 核武器政策은 固守되어야 된다.

冷戰의 기수인 “아데나워”도 東·西 解氷물결에 밀려 1963年 10月 隱退하고 後任에 “에르하르트”가 首相이 되었다. 그는 短命의 首相을 지냈기 때문에 統獨方案도 “아데나워”時代와 다른 政策은 없었으나 外交面에서는 修正을 加한 點이 보인다.

아. "에르하르트"의 外交政策 (1966年3月25日)

- (1) 國際慣例에 따라서 核武器를 制限할것.
- (2) 核保有国이 非核保有国에 核武器讓渡 禁止한다.
- (3) 國際機構에서의 核生産物資를 流通 規制한다.
- (4) 西方側과 共産側이 武器使用 拋棄宣言을 한다.
- (5) 軍事 "움저 버" 를 交換한다.
- (6) 世界軍縮會議에 西獨도 參加할 用意가 있다.

자. 朝鮮의 逆提案

"에르하르트" 提議에 대해 朝鮮은 逆 提案을 提出하였는데 이 骨子는 다음과 같다.

- (1) 核保有国은 非核國에 核武器讓渡를 禁止한다.
- (2) 海外基地에서 外軍을 撤収한다.
- (3) "나토"와 "바르샤바"를 解体한다.
- (4) 東·西獨의 非核保有宣言과 "솔란드"의 非核地帶化한다.
- (5) 西獨의 유엔加入을 支持한다.
- (6) 西獨의 "오데르 나이세" 國境線 認定과 東·西獨 西伯林의 獨立된 政治體制를 承認할것.
- (7) 유럽安保를 위한 유럽會議 開催等이었다.

이러한 共産側 提案에 대해 "에르하르트"는 繼續해서 西獨政府의 唯一合法性을 主張해서 統一에는 별다른 接近을 가져오지 못했다.

차. 東獨의 統一方案 (1963年 1月 15日)

東獨 社會主義統一黨 全党大會에서 "울브리히트"는 西獨에 協商案을 提議했는데 그 骨子は 다음과 같다.

- (1) 東·西獨은 相互間 國家로 承認
- (2) 西獨은 現在의 國境線을 認定
- (3) 兩獨은 核武器生産을 禁止
- (4) 軍備를 提案
- (5) 東·西獨의 通行自由를 保障
- (6) 社會團體交流의 正常化 保障
- (7) 東·西獨의 交易條約締結 等이었다.

이 提案 亦是 西獨의 反對에 부딪쳐 아무런 實現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울브리히트"는 1966年 2月 28日 西獨의 社會民主黨 全党大會에 또 平和統一協商案을 提案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同年 2月 28日에는 "플란드"를 통하여 "유엔" 加入申請을 提出했다. 西獨 政府는 東獨의 "유엔" 加入申請을 民族自決權의 侵害라고 糾彈하였고 西方側도 東獨의 "유엔" 加入을 反對했다. 뒤 이어 3月 16日에는 兩獨 同時 "유엔" 加入案을 提起했으나 西獨側의 反對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東獨이 내놓은 平和統一方案은,

- (1) 核武器 拋棄와 軍備縮小를 통한 緊張緩和
- (2) 既存國境線 認定과 國境線 變更 拋棄
- (3) 유럽國家間의 關係正常化 改善 等이었다.

東獨은 西獨과의 關係改善을 하기 위해 相互 往來하면서 "테레비' 討論을 하자고 提議했는데 西獨은 이 案을 받아들여 東獨國民이 西獨에 入國한 경우 処罰하지 않겠다는 自由保障法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東獨은 西獨의 法効力을 東獨에 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라 하며 國際法 違反이라 反駁하고 討論者 交換案을 撤回했다. 그러나 同年 6月 28日부터 30日까지 西獨에서 東·西獨 大學總長 會議가 열려 文化交流에 있어서는 共同關心事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5. 大聯立政府下의 (1966-1969) 東·西獨關係

가. "키싱거" 統一方案

1966年 12月 西獨에서 기독교民主黨과 社會民主黨의 對연정이 構成된 것은 獨逸政策에 있어서 그런대로 劃期的인 事件이었다. 社會民主黨의 對연정 參與는 곧 獨逸問題 및 對外政策에 있어서의 進歩的인 政策의 採択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保守黨과 進歩黨의 聯立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政策選擇에 있어서도 限界가 있었다. 바로 이같은 限界는 아직 獨逸問題의 處理가 어떤 形態로든 可能的 程度로 成熟되지 못한 義務的인 條件과 함께 이 時期에 西獨 對연정이 推進한 東方政策의 性格을 決定해 준다.

東歐諸國과의 國交正常化와 獨逸委員會를 構成하되 聯邦首相, 全獨逸相, 外相 및 伯林代表가 委員이 되어야 한다는 政策을 내걸고 "키싱거"의 社會民主黨政策을 기독교民主黨이 受諾함으로써 1966年 12月 1日 "키싱거"를 首相으로 하는 對聯立政府가 誕生하였다. 이어 市政演說에서 民族自決에 의한 獨逸의 再統一을 強調하는 다음과 같은 條件으로 對東獨 및 對外政策을 發表했다.

- (1) "나토" 諸國과 同盟維持를 繼續한다.
- (2) "프랑스"와 協力繼續을 繼續한다.
- (3) 東歐諸國과의 外交關係 樹立許容 (한슈타인原測의 廢棄示唆)
- (4) 核武器保有 및 製造 拋棄
- (5) "뮌헨" 協定の 無効宣言 (國境線問題)

나. "올브리히트"의 基本政策

東獨의 "올브리히트"는 "키싱거"의 統一方案에 대하여 1966年 12月 31日 東獨의 基本方針을 發表하면서 對 西獨 協商을 提議했다.

- (1) 兩獨 國交正常화와 不可侵條約 締結
- (2) 現國境線 尊重과 武器減縮
- (3) 兩獨의 核武器 否認과 中立化保障
- (4) 兩獨의 모든 유럽國家와 關係正常化
- (5) 西伯林의 獨自性과 東獨과 西伯林間의 協定締結
- (6) 兩獨의 代表者로 構成된 調節委員會 構成

다. "할슈타인" 原則後退

西獨은 東獨의 이러한 提案에 直接的인 対応策을 쓰지 않고 1967年 1月 31日 "루마니아"와 國交를 締結함으로써 東獨에서 要求하는 "할슈타인" 原則을 修正하고 뒤이어 朝鮮과의 武力使用 拋棄를 위한 協商을 提議했다. 이어 西獨은 1967年 4月 16日에는 東·西獨 接觸에 관한 具體적인 方案을 提示했다.

- (1) 兩獨 國民의 日常生活에 대한 便宜圖謀 措置
 - (가) 相互 旅行外 自由增大, 特히 觀光旅行의 自由를 圖謀한다.
 - (나) 伯林 및 兩獨隣接地 域間의 通行約定을 締結한다.
 - (다) 兩地域間의 支払決裁의 容易化를 推進한다.

(라) 医薬品 및 繕物接受制限의 撤廢

(마) 兒童을 包含하는 家族의 再會

(2) 經濟的 通信關係分野의 協力增進案

(가) 借款問題와 兩獨의 經濟問濟

(나) 에너지 交換과 合理的인 電力開發

(다) 交通網의 共同建設

(라) 青年 및 學生團體의 相互訪問

(마) 文化團體의 自由로운 交流

이 "키싱거"의 再統一方案은 技術的인 方法으로 統一의 條件을 造成하려는 것으로 意義가 크다. 이와 아울러 "키싱거"首相은 獨逸問題의 包括的인 討論이 必要하다고 強調하고 演士의 交換을 거듭 提議했다. 그해 4月 19日에는 西獨의 前後運命을 決定했고 "라인江의 奇蹟"을 이룩하고 한편 冷戰의 기수였던 "아데나워"가 死亡함으로써 強硬-變縮의 冷戰時代는 決算된 셈이다.

라. 東獨의 factual state 認定

同年 5月 10日에는 東獨 "슈토프"首相이 "키싱거"西獨 首相에게 公翰을 보냈는데 이제까지의 慣例와는 달리 西獨은 이를 公式文書로서 接受하고 6月 16日에는 回信을 보냈으므로 東·西獨 政府間의 接觸을 忌避하지 않는다는 重大한 政策轉換을 斷行했다. 이후부터 東·西獨間의 公式的인 書信往來가 잦아졌다.

이러한 西獨側의 積極的인 東歐圈 接觸에 東獨側의 妨害에도 不

拘하고 西獨은 다음 해인 1968年 1月 31日 "유고스라비아"와 國交를 再開하여 東獨의 西獨 東歐圈 接觸을 阻止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報復으로 東獨은 西獨人의 東伯林 通行을 制限하는 措置를 取하고 西獨人과 西伯林 市民이 東獨 및 東伯林을 訪問할 時는 東獨의 비자를 要求하는 措置를 取했다.

이러한 緊張狀態를 解消하기 위하여 "브란트" 西獨外相은 6月 18日 東獨을 訪問하였으며 6月 28日에는 東獨外相 "빈저"가 兩獨間의 武力拋棄에 관한 國際法的 條約締結을 要求하는 聲明書를 發表했다.

7月 1日 西獨 運輸相은 東獨의 旅行措置에 対応하여 東獨船舶의 西獨內海 通過를 禁止하였던바 東獨이 반발하여 7月 16日에는 이를 解除했다. 1968年 7月 5日에는 朝鮮이 西獨과의 武力行使拋棄宣言을 提議하여 7月 12日 "키싱저"首相은 이에 대한 歡迎의 回答을 보냈다. 同年 9月 26日에는 56年에 憲法裁判所 判決에 의해서 解散된 獨逸共產黨의 再建이 許容되어 새로운 共產黨의 創黨이 許容되었다.

마. "키싱저"연정의 攻過

基督教 民主黨과 社會民主黨에 의한 對聯立政權은 戰後獨逸 緊張緩和를 가져오는데 큰 貢獻을 한 것으로 認定될 수 있다. 過去 기독교 民主黨은 社會民主黨의 統一政策과 外交政策이 너무 冒險的이라 批判하였으나 "브란트"首相下의 社會民主黨과 聯政後로는

外交政策에 消極的이나 參與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對共產圈 接近 外交는 東歐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 結果 西獨 對聯政의 東方外交는 隨時로 東歐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첫째, "루마니아"와의 外交關係 再開는 東獨, "폴란드" 그리고 "체코"를 묶는 "鐵의 三角同盟"을 맺게 하는 理由가 되었다. "체코"와의 貿易代表部 再開와 "유고"와의 國交樹立은 "바르샤바"軍의 "체코" 侵略을 招來했었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東獨의 頑強하고도 積極的인 對西獨 牽制政策이다.

東歐共產圈諸國은 東獨의 "逆 할슈타인原則"의 拘束을 받은 셈이며 한편 西獨의 2國間 接觸은 朝鮮으로 하여금 東歐 衛星國들을 統制하는데 많은 困難을 느끼게 했다. "체코"에 自由化물결이 일고 暴動이 일어났을 때 "브레즈네프"는 各 社會主義國家의 主權은 社會主義世界의 利益과 社會主義 革命運動의 利益을 阻害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規定하여 東歐 各國은 西獨과는 勿論이고 西方側의 다른 나라들과도 2國間 接觸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包含되어 있다. 結局 西獨 對聯政의 過渡期的 東方政策은 1967年 "유고"와의 國交樹立을 끝으로 더 以上 進展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나 西獨은 "브레즈네프 doktrin"으로서 外交政策上 朝鮮의 諒解없이는 東方政策을 果敢히 遂行할 수 없다는 教訓을 얻었다.

첫째는 朝鮮 및 東歐側의 對西獨關係 正常化의 先行條件으로 내걸고 있는, 4개의 條件(國境線, 東獨 認定, 侵略的 行爲 拋棄(不可

侵宣言), 核武器保有 禁止) 등을 受諾하지 않고서는 더 以上 接近을 할 수 없고, 둘째는 東歐圈의 對西獨 接近에는 우선적으로 朝鮮의 諒解下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터득한 셈이다. 이로써 西獨은 東方政策의 內容과 方法 등을 再檢討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6. 緊張緩和時代

가. "브란트" 政權과 外交政策

1969年 9月 28日의 總選舉에서 기독교민주당은 議席에 있어서는 才1黨으로 (46.1%)로 되었으나 劃期的인 成長率을 보인 社會민주당 (42.1%)과 自由민주당 (5.8%)이 聯立政府를 樹立하여 首相에 社會민주당의 "브란트", 副首相兼 外相에 自由민주당의 "셀"이 되었다. 이것은 60年度의 後半期 東西緊張緩和의 探索外交로부터 實質的인 東方政策이 나타나기 시작한 時点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러한 外交政策變化의 背景에는 關係各國의 (美國, 프랑스, 英國, 東獨, 폴란드) 政策變化와 아울러 政權이 交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새로운 政權들은 政策面에서 過渡期的인 性格을 벗어나지 못했던 유럽의 緊張緩和外交를 制度化의 段階에까지 끌어 올리는 데 上昇作用을 했던 것이다.

나. 中·쏘關係와 西歐緊張緩和政策

그러나 重要的 役割을 担当한 것은 亞細亞의 巨人 中共이었다. 60年代 後半期에는 文化革命의 餘勢를 몰아 積極外交攻勢를 起기 始作하여 71年에서 常任理事國으로 되면서 이제는 三國體制가 形成되었던 것이다. 또 1969年 中·쏘 國境衝突은 中·쏘의 指導者들이 當面한 實질 危險한 存在가 西方國家가 아니라 7千마일

에 國境을 接하고 있는 中共과 朝鮮임을 서로 認識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中·소의 緊張緩和는 朝鮮으로 하여금 보다 全面的인 對西方外交를 서두르게 하는 促進劑가 되었다. 그것은 武力衝突까지 發生한 亞細亞國境쪽의 緊張에 對備하여 이른바 “西部戰線”의 安全을 確保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러한 証據로서 朝鮮은 아래와 같은 對西歐 積極外交를 펴기 시작했다.

(1) 美·소 모스크바 頂上會談과 그에 따른 聲明協商

(2) 西獨逸과의 關係改善 및 베르린協定

(3) 유럽 安保會議의 具體化方案 等이었다.

다. 닉슨닥트린과 緊張緩和

한편 美國은 닉슨政府의 出帆과 함께 닉슨닥트린을 實踐함으로써 越南戰爭에서 撤退함과 同時에 過去 中共에 대한 封鎖政策을 拋棄하고 닉슨의 中共訪問을 契機로 해서 中共과의 平和共存外交를 펴기 시작했다. 즉 美國은 越南戰에서 입은 國家의 威信과 國內的으로 累積된 여러 가지 問題를 유럽問題에 關心을 돌리려고 하였었다. 이런 變化는 유럽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드골”의 退進과 함께 英國의 EEC 加入은 유럽의 經濟的 統合뿐 아니라 政治的인 統合까지 追求하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새로운 世代의 成長과 함께 베트남 介入에서부터 유럽에서의 美國勢力에 대한 批判意識이 커졌다. 이런 狀況下에 태동하는 유럽主義의 傾向은 經濟力을 背景으로 하는 文化, 技術, 科

학等 여러 分野에서 보다 活潑한 東歐와의 交流를 찾게 되었다.

이러한 觀點이야말로 "드폴"의 眼目이 유럽에 普遍化되었다는 얘기가 되며 아울러 東西緊張緩化를 追求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러나 "체코" 事態로 因하여 存在 疑心마저 있던 "나토"에 새로운 存在價值를 찾게 되었다.

이러한 西歐유럽의 內部分裂現狀은 東歐쪽에서도 일어났다. "브레즈네프" 닥트린 아래서도 制限되긴 했지만은 原心分離的 独自の 外交路線을 追求하였다. "바르샤바" 條約機構에 대한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의 冷談은 "나토"에 대한 "드폴"의 不信만 큼이나 컸다.

이러한 理由로 東歐側은 "바르샤바" 條約機構에 國防閣僚會議를 設置하여 參謀總長이 參與하여 政策을 樹立하고 한편으로는 "코메콘"을 통하여 長期經濟協調 統合計劃을 세워 보다 緊密한 紐帶를 갖게 했다.

이러한 世界情勢를 利用하여 推進된 것이 西獨 "브란트" 政府의 이른바 東方政策이다. "브란트, 쉐" 聯立政府는 東歐側이 西獨과 關係正常化의 條件으로 내걸고 있던 核生産 保有禁止要求를 받아들여 核擴散禁止條約에 調印함으로써 東歐側과의 關係正常化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어 1970년에는 독, 소, 독, 과 條約을 締結하여 유럽의 現狀 認定을 시작했다. 다음 해인 1971年 12月에는 "베르린"에 관한 4 大國協定 및 兩獨協定을 거쳐 1972年 12月에는 마침내 東·西獨 基本條約을 締結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前後 歴史的인 "獨逸恐怖症"을 없애는 첫 作業은 끝을 맺었다.

라. 緊張緩和外交

앞서 말한 東歐와 西歐의 内部事情과 亞細亞에서의 中·소國境地帶의 武力衝突로 因한 새로운 次元의 世界秩序가 움트기 시작했으나 이것 역시 恒常 東歐와 西歐의 基本立場의 바탕위에서 시작되었다. 즉, 東歐側의 유럽안보協力會와 西方側의 相互均衡 減軍등 두갈래 이슈로 集約된 緊張緩和外交가 60年代末부터 서서히 接近을 보았다.

(1) 東歐側의 유럽안보會議 提議

우선 北歐羅巴의 "필란드"가 東·西接近의 仲裁役割을 担当했다. "필란드"는 1969年 5月 모든 유럽國家와 "캐나다"가 參與하는 유럽안보會議를 70年初 "헬싱키"에서 열자고 提議했다.

이에 共產側은 한달뒤인 6月的 "바르샤바"條約機構 外相會議와 12月的 上記 條約機構 首腦會議에서 유럽안보協力を 贊成하고 安보會議를 빨리 열자고 提議했다. 이 提議에서 東歐側은 그동안의 여러 議題를 한데 묶어,

(가) 相互 武力不行使條約 締結과

(나) 經濟科學交流의 增大等

但, 兩個의 議題만을 가지고 提議해 왔다.

(2) 西方側の 相互均衡 減軍案 提議

이런 共產側의 提議에 대해 西方側은 1969年 12月의 나토 閣僚會議에서 朝鮮의 체코武力侵攻과 “브레즈네프” 닥트린을 들어 東·西間의 安保概念의 差異가 있음을 指摘하였다. 그러나 結論에 있어서는 西獨의 東方政策을 통해 東次側과 2國間 交渉을 벌이고 있음을 指摘하고 獨逸問題에 있어서는 伯林問題의 解決을 前提로 한 人間環境 保護問題까지 包括的인 東·西交渉의 意思가 있음을 表明했다. 이어 西方側은 1970年 5月 나토理事會의 最終通報는 다음과 같다.

(가) 相對便에게 軍事的 不利한 條件을 提示하지 말아야 한다.

(나) 段階的인 均衡 減軍을 實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減軍對象에서 外國軍駐屯 및 自國軍隊의 武器體制를 包含시킨다.

(라) 모든 過程에서 檢證과 統制를 할 수 있는 機構를 設置하여야 한다.

(3) 共產側西方유럽相互 減軍案 受諾

이러한 西方側의 提議에 대해 1970年 6月 바르샤바條約機構會議에서 上記 西方側의 提案은 유럽安保會議의 一部로 論議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이는 形式이 되었다.

그러나 西方側은 유럽에서 美國의 役割때문에 나토內의 의견조종이 이루어져야 했었다. 그것을 要約해 보면,

- (가) 美国이 나토의 軍事基地를 重要視 여기는限 朝鮮도 이에 對抗해서 13個師團 以上の 軍隊를 東歐에 駐屯시켜 이것이 西歐側에 큰 軍事的 壓力이 된다. 그래서 나토의 體質이 軍事的인 面에서 政治的 및 經濟的 協力으로 變質시켜야 한다.
- (나) 東歐로부터 朝鮮의 軍事的 支配를 벗어나야 西歐의 東歐進出 障礙要因이 除去된다.
- (다) 美国을 비롯한 西歐 나토諸國도 平和時에 軍事費 負擔이 國家의 財政에 비해 너무 莫重하여 이 額數를 줄이는 方案을 摸索하여야 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論理는 朝鮮의 立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朝鮮으로서는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美国과 캐나다가 西歐로부터 손을 떼어야만 西歐進出이 容易하다는 判断이다. 즉,

- (가) 相互 減軍의 對象에 外國軍隊 包含은 美軍의 撤収를 主張한 것이다.
- (나) 西歐의 團結을 沮止시켜야 힘의 弱化뿐 아니라 進出에 容易하다.
- (다) 軍事費 支出을 減少시켜 國民의 消費財를 增産해야 한다.
- (라) 中·쏘 國境線 紛爭때문에 西部戰線은 安定을 가져와야 한다.

마. 緊張緩和의 序曲

위의 같은 兩便의 基本立場을 固守한 채 西獨은 2國間 接觸을 活潑히 進行해 갔다. 그 중에서 核心을 이룬 刮目할 것은 다음과 같다. 즉,

- (1) 1969年末 美·쏘 核戰略武器 制限 會談을 시작했고
- (2) 1970年 獨·쏘 條約調印을 맺었으며
- (3) 1970年 獨·巴 條約을 締結했으며
- (4) 1970年 兩獨首相 에어푸르트 會談開催며
- (5) 같은 해 베르린 4 大國 會談再開 等이다.

西獨이 이같은 유럽의 緊張緩和에 많은 努力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유럽의 中心部를 가로질러 約 1百30萬의 兩側 軍隊가 對峙하고 있어 東方政策의 推進에 큰 障礙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西獨은 相互均衡 減軍이 西方側의 安保體制를 強化하고 緊張緩和에도 도움이 되는 兩面的인 方法인 것이다. 이러한 兩陣營의 軍隊減縮은 브란트가 構想하는 東方政策의 論理的인 方向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같은 유럽 安保外交도 나토側의 相互均衡 減軍案과 바르샤바의 유럽 安保 協力會議 側間의 具體的인 方案을 摸索했으나 結果를 보지 못하다가 1971年 5月 브레즈네프의 트리 힐리 演說과 그 해 9月 브란트 首相과의 크리미아會談에서 相互均衡 減軍의 뜻을 非公式으로 밝혔다. 結局 問題의 核心問題를 푼 것은 美國과 쏘련이었다.

1972年 5月 29日 닉슨의 歴史的인 모스크바 訪問의 共同声明
은 유럽 및 세계의 安保協力問題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바. 東·西·兩陣營 減軍必要性

“兩國政府는 유럽에서의 安保와 協力の 特定問題를 具體적으로
다룸으로서 유럽緊張의 根本原因을 漸次 除去하기 위한 會議을 慎
重히 準備해야 한다는데 合意한다. 이 會議는 特別한 理由가 없
는限 關係國들이 合意하는 時期에 開催되어야 한다. 兩側은 유럽
安保와 安全을 保障하는 目標은 무엇보다도 中部유럽에 있어서의
相互軍縮에 의해 促進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問題에 관한 어
떤 合意도 어느 一方의 安保를 損害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關
係國家들은 特別會議에서 이 問題의 協商節次에 관한 適切한 協定
을 가능한限 早速히 이룩해야 한다.”

이 時期에는 이미 4大國間 베르린協定이 締結되고 (1971年 9月)
나아가 東·西獨間에 베르린協定細則까지 合意되었으며 (1971年 12月)
다음 해에는 西獨은 獨·소, 獨·巴 條約의 議會批准까지 끝냈다.

(1972年 8月)

이로써 東·西 争点의 가장 큰 問題인 獨逸問題가 2國間協定の
形式을 通해 어느 水準까지는 妥結된 狀態였다. 이 程度까지 緊
張緩和가 進展됨에 따라 소·東歐側이 유럽安保會議 準備會議은

1973年 11月 헬싱키에서 34個國 代表가 參席한 가운데 열렸다.
이때를 같이해서 나토側은 이해 11月 15日 東歐關係國에 正式招請

狀을 보내어 소련 및 東歐側은 正式參加를 通告해 왔고 1974年 1月 빈에서 相互均衡 減軍會議 準備會議가 열렸다.

사. 東·西獨의 새座標 設定

獨逸問題에 있어 分斷問題解決을 위한 統一政策이라고 말하는 것은 体制의 統合까지를 包含하는 完全한 概念의 統一政策을 뜻하는 것인데 70年代에 들어와서는 東·西 어느 쪽에서도 統一政策이라는 適合한 政策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東獨은 分割의 完成을 政策目標로 내걸고 있으므로 말할 것도 없고 西獨조차 積極的인 統一을 推進하기는커녕 政策自体마저 不在狀態에 놓여 있다. 獨逸의 統一이 必然的으로 招來할 유럽現狀의 急激한 變化는 強大國들이 이루어놓은 國際秩序에 影響을 미칠까봐 念慮의 對象이 되었다. 이러한 것이 獨逸의 統一政策 不在狀態를 가져온 가장 重要한 原因이라고 볼 수 있다.

積極的인 統一政策의 推進이 오히려 統一條件의 漸進的인 造成마저 어렵게 한 現實을 勘案 브란트 當面政策에서 統一을 일단 後退시키고 유럽의 平和에 우선 重點을 두고 獨逸民族의 單一性維持를 自身의 目標로 設定하여 이것을 東方政策이라는 이름으로 推進하고 있다.

아. 東獨의 2民族 2國家觀

東獨은 이미 社會主義思想의 確固한 概念이 없는 西獨과는 獨

逸統一이 不可能하다고 宣言하였다. 東·西獨을 連結시켜주는 獨逸帝國의 有形 및 無形の 有産打破에 注力하였고 이것이 發展하여 獨逸內에 2民族이 있다는 理論을 내세운다. 東獨은 西獨과의 關係를 對外政策 對象으로 삼고 있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獨逸統一問題에 있어 또하나의 障壁은 東·西獨間의 顯著한 国力差異가 빚어내는 現狀이다. 東獨의 社會 및 政治體制가 過去와는 比較가 안될 程度로 安定되었고 經濟 또한 顯著한 成長을 이룩하였다. 하더라도 兩獨逸의 國內 및 國際的인 條件을 比較할 때 힘의 優劣은 明白히 드러나 있다. 東獨이 西獨과의 障壁을 除去하기를 꾀하는 理由는 힘의 不均衡 때문인 것이다. 物理的 힘의 面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兩獨의 交流를 促進하는 反面 또 한편으로는 交流를 沮止시킬 要素도 된다.

反面 西獨의 高度로 發達된 産業은 兩獨交流를 促進시킬 媒介체가 된다. 東獨은 모든 分野의 交流를 抑制하면서도 經濟交流만은 積極性을 띠우고 있다. 西獨의 힘이 東獨에게 威脅적으로 느낄 때는 兩獨關係는 退步할 것이고 이와 反對로 그것이 利益을 끌어낼 수 있는 바탕이 될 때는 兩獨交流를 增大할 것이다.

7. 東方政策의 出現

가. 브란트와 統一政策

브란트 政策의 背景은 한마디로 말하면 現實을 勘案한 現實主義라고 불러 마땅하겠다. 그의 政策은 바로 現實을 前提로 하여 樹立한 政策이며 既存現實을 認定하고 그 認定을 바탕으로 樹立한 政策은 外部的인 現實과 内部的인 現實로 区分할 수 있다.

(1) 外部的인 与件

國際政治的인 与件에서 東·西 兩陣營의 強大國들이 獨逸의 統一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西方側에서는 朝鮮 때문에 獨逸의 統一이 遲延되어 있다고 主張한다. 허나 1961年 후르시초프와 케네디 大統領의 東·西頂上會談에서 美國側은 2個의 獨逸이 朝鮮의 國家利益에 符合된다는 朝鮮의 立場을 認定하고 이러한 見解가 바뀌지 않는限 獨逸은 分割狀態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말은 西方側에게도 符合된다는 含蓄性있는 말이다. 獨逸問題뿐 아니라 伯林問題의 解決없이도 現在 유럽에서의 東·西緊張緩和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얻을 수 있는 結論은 西方側의 西獨支持의 動機는 前 美國國務長官 텔레스의 朝鮮封鎖作戰 遂行에 西獨의 힘을 利用하자는 意圖이지 獨逸의 統一政策支持와는 別個의 問題인 것이다.

즉, 現在 유럽의 國際秩序는 獨逸의 分斷狀態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獨逸統一努力은 자칫 잘못하면 現秩序를 破壞할 素志가 있어서 現在의 与件에서는 統一努力은 隣近國家의 憂慮를 促發시키기 쉽다.

(2) 内部的인 与件

한편으로 브란트의 現實 認定은 바로 東獨의 存在 認定이다. 相對的으로 強力한 国力을 가진 西獨이 東獨을 國際法上 認定하든 안하든 간에 獨逸民主共和國은 着實히 国力을 培養하여 왔고 國際的 地位도 어쩔 수 없을만큼 伸長되어 왔다. 東部獨逸은 社會主義國家體制의 政權이 現國境線안의 國民을 統治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相對方이 完全한 外國으로서 兩獨關係를 主張하고 있으며 그 主張은 國際的인 与件에 合致되며 獨逸分斷을 長期的으로 될 展望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브란트가 내다본 獨逸의 現實인 것이다.

이같은 西獨의 現實 認定은 國內와 國外的 与件이 獨逸의 分斷을 指向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要素는 獨逸民族의 再結合을 막고 있는 障礙일뿐더러 西獨內의 어느 政治勢力이 統一政策을 樹立하고 또 推進할 경우 그 勢力은 孤立될 것이며 終局에는 統一에의 길마저 끊어지고 말 것이다.

나. 브란트의 集權時代

이러한 趨勢에 있던 獨逸聯邦共和國에서 總選舉가 있었는데 이

選舉結果 1969年 10月 28日 社会民主党과 自由民主党的 聯立內閣
이 成立되어 브란트가 首相에 委任되고 統一外交政策에 變化를 가
져 오기 시작했다. 그의 就任과 同時에 나타난 東歐 政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東·西獨間의 協力強化 提議 (10月 28日)

(2) 쏘련, 폴란드와의 武力拋棄協商 提議 (10月 28日)

(3) 西獨의 할슈타인原則 拋棄宣言 (10月 29日)

(4) 폴란드와 오데르 나이세 國境問題 協商用意 (11月 25日)

(5) 核擴散禁止條約에 署名 (11月 28日)

(6) 東獨과 不可侵條約協商 提議 (12月 6日)

(7) 문헌協定 無効化宣言 (12月 12日)

위와같은 政策은 브란트가 恒常 主張하는 現狀 認定을 바탕으로
해서 現狀의 變更을 위한 迂廻的인 方法이라고 하겠다. 迂廻的인
手段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선 먼저 認定하지 않고는
變更시킬 수 없는 現狀의 本質 때문이다. 이것은 過去 東獨의
存在를 完全히 無視했던 아데나워의 힘의 政策이 問題의 解決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認
識을 바탕으로 調整된 政策에는 二個의 基本戰略이 있다. 하나는
東獨과의 關係를 다루는 獨逸政策이고 또 다른 하나는 安保政策이
다.

다. 統一政策

西獨의 獨逸政策目標은 民族의 單一性を 最大限으로 保存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民族의 統合段階로까지 發展시킨다는 것이다. 브란트의 意圖는 不可避한 兩獨分斷의 定着化過程에서 唯一하게 남은 兩獨逸의 共通點을 살려,

- (1) 獨逸人의 意志와 成長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 (2) 外部의 作用에 의해 獨逸統一의 當否性을 否認못하게 하며
- (3) 언젠가 때가 成熟될 때 民族의 單一性이란 기반아래 統一을

이룩하겠다는 意圖를 反映하는 것이다. 東獨과의 協商에서

西獨側의 積極的인 主張은 兩獨交流와 接觸의 增大이다.

이것은 같은 民族끼리 자주 만나 對話를 나누면 同質感

때문에 民族 感情이 저절로 發露된다는 心理的인 判斷이

잘려 있는 것이다.

라. 安保政策

브란트가 追求하는 緊張緩和外交의 目標은 獨逸統一이 無理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國際秩序의 구축이다. 그는 유럽共同體의 強化 및 擴大와 나토의 結속을 위해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西獨이 東·西體制間에 重要한 役割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獨逸問題의 解決은 유럽의 平和秩序속에서만 可能하다는 그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즉, 西歐는 西歐대로 東歐는 東歐대로 結束을

다 점하고 同時에 東·西歐間에 協力이 增進擴大될 때 유럽의 政治的 秩序속에서는 東·西歐間의 障壁(東·西獨間의 障壁)이 負擔스럽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展望이다. 그러한 協力秩序속에서 東·西獨의 接觸이 西歐國家와 같은 水準 및 그 以上일 때는 兩獨은 産業構造上의 特性, 같은 言語, 같은 傳統, 같은 文化의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政治體制의 統攝도 實際로 統攝된 狀態에 더 한층 바싹 接近한 民族的 結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狀態下에서 萬若 유럽에 戰爭의 徵兆가 없다면 구태어 強大國들이 獨逸의 統一을 굳이 反對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實現될 것인지는 브란트 自身도 確信할 수는 없겠으나 東·西間의 緊張緩和라는 口號아래 東·西間의 橋梁을 自處하며 推進하는 東方政策은 이같은 유럽의 政治秩序를 내다보는데서 起因하는 것이다.

마. 獨·쏘條約

브란트가 東方政策을 내걸은 첫번째 目標과 目的은 朝鮮이었다. 朝鮮은 1969年 9月 西獨議會 選舉期間 武力不行使 및 其他分野의 關係改善 協商을 할 用意이 있다는 黨書를 西獨에 보내 놓고 있었다. 이것은 鐵의 三角同盟政策을 크게 轉換시켜 對西獨 接觸을 活潑히 하려는 意圖를 나타낸 것이다. 獨·쏘 接觸의 첫 交渉은 1970年 1月 西獨 마르 特使가 모스크바에서 그로미코고 外相間에 시작하여 5月에는 所謂 "마르문서"를 作成하여 이것을 土臺로

7월달에는 西独外相 "쉴" 과 그로미코 外相間에 本格的인 會談을 開催했다. 바로 그해 8月 12日에는 西独首相 브란트와 朝鮮首相 코시 킨間에 "獨逸聯邦共和國과 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과의 條約" 이 調印되었다. 東歐側의 對西独 2国間 接觸에 衝激的인 계 동을 걸었던 朝鮮이 이같은 條約을 締結한 底辺에는 3国外交의 태 동과 함께 積極的인 對西方 緊張緩和外交에 充實해야 할 必要性이 있었다. 獨·쏘條約의 內容을 보면,

- (1) 經濟協力 增進
- (2) 獨逸 再統一問題 協議
- (3) 武力不行使 宣言
- (4) 유럽 國境問題 認定
- (5) 베르린問題 解決方案 摸索

이 條約에서는 많은 解析上의 論爭을 불러 일으킬 程度로 까다로운 問題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브란트 首相은 말하기를 "이 條約은 獨逸民族이 自由로운 自決權과 함께 그 一體性을 回復하기 위해 유럽平和維持에 힘쓰고 있는 西独의 政治的 目的과 矛盾이 되지 않는다"는 宣言을 하고 朝鮮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形式을 갖추었다. 이 條約에 이어 같은 條件과 方式으로 西独과 폴란드間에도 條約이 締結(1970年 5月 12日)되었다.

나. 東獨의 外交政策

東獨은 社會主義 統一黨의 理念에 順應할 수 있는 게르만 民

族만이 獨逸國民이지 부패한 自本主義下의 西獨國民은 히틀러의 유산을 이어받은 國民이라고 斷定하여 獨逸에는 두개의 民族이 存在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東獨은 1968年의 憲法改正에서 두개의 獨逸國家의 分斷을 改正事實化 한뒤 東獨을 獨逸民族의 社會主義國家로 宣言하고 東伯林을 首都로 定하고 4大國占領下의 東伯林을 東獨에 併合시켰다.

東獨은 東歐權 뿐만 아니라 西方國家의 外交에도 積極的인 努力을 기울여 아랍4國과는 69年 이미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있었다.

獨逸統一은 호네커의 主導下에서도 樂觀的은 아니다. 호네커가 主張하기를 "帝國主義 西獨逸과의 平和共存은 國際法上의 原則에 關係해 있어서만 可能하며 特殊한 두개의 獨逸關係는 社會主義國家의 主要圈을 指向하는 東·西獨逸間 分離政策을 明白히 "한다" 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西獨을 資本家의 복수주의 分斷國家라고 規定하고 西獨이 많은 法律을 만들어 東獨國民에게 不平等한 待遇를 하고 있다고 主張하면서도 西獨과의 交易等을 繼續 擴大하고 있다.

사. 東獨의 逆 할슈타인 原則 適用

한편 西獨의 키싱거對聯政이 1967年 1月 루마니아와 國交를 樹立하자 이는 東歐의 崩壞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하여 東獨은 3月에도 체코, 폴란드와 友好相互 援助條約을 締結하여 西獨과의 國交樹立을 阻止시켰다. 다음은 5月에 가서 헝가리와 불가리아와도

條約을締結하였다. 1968年 체코에서自由化물결이 일어나서
西獨과 交流를 試圖했을때 東獨은 自由化運動 阻止에 나서서 朝鮮
과 東歐5個國은 체코에 侵入하여 自由化運動을 阻止시켰다.

여기서 西獨側도 東歐圈과의 交流는 亦是 朝鮮의 事前諒解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教訓을 터득한 것이다. 1969年 10月 브란
트 政權이 樹立되면서 東獨을 認定하는 政策을 썼으나 冷淡한
態度로서 우선 國際法上의 承認을 要求했다. 그러나 1970年代에
와서 急速히 進展을 보여준 朝鮮과 東歐諸國의 對西獨關係 正常化
의 물결에 따라 東獨도 對西獨 接近政策을 쓰기 시작했다. 前述
한 바와 같이 1969年 12月의 울브리히트의 提議에 의해서 에어
푸르트와 坎셀會談을 열었다.

호네키 體制의 對西獨政策은 國內政治와도 깊이 關聯되어 있는
것으로 統一이 그들에게 不利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內政
改革과 經濟建設에 拍車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아. 東·西獨 首相會談

東獨의 "울브리히트"는 1969年 12月 12日 獨逸 社會主義統
一黨 才12次 全黨大會에서 1970年의 基本政策演說을 통해서 對西
獨에 관한 事項에서 東獨과 西獨의 平和共存을 主張하고, 東獨은
"獨逸帝國主義者에 의하여 強要된 獨逸의 分斷을 克服하고 民主主
義와 社會主義 根柢下에 祖國이 統一될 때까지 漸進的으로 兩獨接
近을 위하여 努力할 것"이라고 宣言했다. 이어 12月 17日에는

西独 大統領 “하이네만”에게 書翰을 보내고 兩独의 平和的인 共存을 위하여 東·西独間의 平準한 外交關係를 맺을 것을 提議하고 兩独間에 協議할 條約草案을 보내왔다. 이어 그는 이 會談을 1970年 1月에 首相級 會談을 열자고 提議해왔다. 그 內容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條約締結 当事國은 相互平等한 立場에서 相對便의 主權을 尊重한다.
- (2) 現 國境에 의한 領土의 存立과 不可侵性을 認定한다.
- (3) 武力使用을 拋棄하여 次後 發生하는 事項은 平和的으로 解決한다.
- (4) 兩独은 核武器의 保有 및 使用을 拋棄한다.
- (5) 兩独은 相互 外交關係를 樹立하여 相對方 首都에 大使館을 設置한다.
- (6) 西伯林을 獨自的인 政治團體로 尊重하여 그 地位를 考慮하여 西伯林과의 關係를 規制한다.
- (7) 部分領域에 관해서는 따로 條約을 締結한다.
- (8) 兩独은 똑같이 유엔에 加入한다.
- (9) 이 條約은 10年을 期間으로 하여 締結한다.

이 提議는 “울브리히트”가 過去의 獨逸聯合論을 拋棄하고 獨逸을 永久히 分斷하자는 것으로 獨逸 社會主義 理念下에 統一이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야 오히려 外國으로서 兩國家가 平和共存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만약 西独이 獨逸聯合論을 受諾하면 東独이

不利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에어푸르트" 회談

울브리히트의 提議에 대해 브란트 首相은 1970年 1月 22日 東獨 首相 "슈프트"에게 書信을 보내어 武力拋棄 宣言의 交換과 分斷된 獨逸의 苦痛을 解消하기 위해서 兩獨 首相會談을 열 것을 提議했다. 이에 東獨이 贊의 뜻을 表하자 數次의 豫備會談을 開催한 뒤에 1970年 3月 19日 東獨의 에어푸르트에서 兩獨 首相의 첫 對面이 있었다. 이 會談에서 各自의 主張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西獨側 主張은,

- (1) 兩獨間의 緊張緩和을 위하여 軍事的 敵對政策을 拋棄할것,
- (2) 히틀러의 罪惡을 兩獨이 共同으로 贖罪할것,
- (3) 東·西獨의 緊張緩和은 유럽緊張緩和과 直結된다고 認定하고,
- (4) 東·西 유럽의 緊張緩和에 協力할것,
- (5) 東·西獨間의 往來를 自由化하고
- (6) 東·西獨間의 常設機構를 設置하여,
- (7) 伯林問題를 4個國 管理下에 들것.

東獨側 主張은,

- (1) 國際法的으로 差等없는 兩獨國交를 成立시킬것,
- (2) 才 3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相互 干涉을 말것,
- (3) 兩獨의 同時유엔 加入을 申請할것,

- (4) 核武器 使用 및 貯藏 拋棄할것,
- (5) 2次大戦 残滓를 討議 處理할것,
- (6) 3百万 東独人口의 西独亡命에 대해 東独側에 補償할것 등
이었다.

이 에어부르트 회談에서 西独은 東独을 事實上的의 國家(Factual state) 政權으로 認定하고 全獨逸 單獨代表權 主張을 拋棄했으나 東独은 國際法上 하자없는 完全한 外國으로 承認해 줄 것을 要求해왔다.

차. 才2次 兩独 首相會談 (캣셀會談)

1970年 3月の 에어부르트 회談에 이어 5月 21日에 兩独 首相은 西独의 캣셀에서 다시 對面하였다. 여기에서 東独은 繼續해서 西独側에 完全한 國際法上的의 國家로 承認해 줄 것을 要求하였으며 이에 대해 西独側은 20個에 達하는 提案을 하였다. 이 提案에서의 主要 骨子를 간추려 보면,

- (1) 兩独 國民의 人權尊重, 平等原則確認, 平和共存의 뜻을 받들어 無差別한 條約締結을 한다.
- (2) 兩國은 서로의 國內主權을 尊重한다.
- (3) 武力拋棄 宣言과 함께 戰爭拋棄를 宣言한다.
- (4) 4大占領國의 權利와 義務를 尊重한다.
- (5) 兩独間의 各種 交流의 增進을 圖謀한다.
- (6) 兩独은 常設代表를 設置하되 閣僚級을 代表로 派遣한다.

이들 提案들은 東独을 事實上 國家로 承認한 것이었다. 그러나

東獨은 무엇보다도 먼저 西獨이 東獨을 國際法上으로 承認할 것을 要求해 왔다. 東獨은 西獨과의 國際的인 條約締結만이 兩國關係의 正常化에 寄与한다고 東獨이 提案한 1969年 12月 17日의 提案을 要求해 왔다.

이 會談에서는 特別한 合意事項은 없었고 앞으로 時間的 餘裕를 얻기 위해 모든 問題를 實務者會議에 委任하였다.

8. 四大强国 白林協定 締結

가. 協定締結過程

1970年3月26日 4大强国은 베르린 通行 및 地位問題를 解決하고자 11年만에 西方側의 要求에 依해서 開催되었다. 주로 4大强国 베르린 駐在 大使들이 実務會談을 進行했는데 數次 難関에 逢着했다. 이 베르린問題 역시 동구권의 主從國인 蘇聯의 브레즈네프가 解決한 셈이다. 브레즈네프는 同年11월 29日 4大國 會議開催로 베르린問題 正常化가 可能해졌다는 発言을 함으로써 東西의 問題가 解決되리라는 希望的인 展望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2月19日 西白林에서 西獨의 社会民主党 全党大會를 했다는 보복으로 東獨은 西獨으로부터 西白林 通行을 遮斷하여 協商이 결렬될 狀態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東歐側은 계속해서 東·西緊張 緩和에 接近하는 政策을 西方側에 提議해 왔다.

나. 共産側의 베르린 協定締結 提議

1971年2月18日에는

- (1) 유럽에서의 緊張緩和에 接近할 수 있다는 것을 前提하고
- (2) 東獨의 國際平等 대우를 要求하고
- (3) 東獨의 유엔 및 其他 國際機構에의 加入을 할 것을 決議했다.

東獨은 西獨에 계속해서 西베르린의 通行協定을 提議해와 결국 1971年 9月 3日 4大國 協定이 調印되었다. 그 內容을 간추려보면

- (1) 西獨과 西白林을 通過하는 民間人 내지 民間人 貨物은 迅速한 通過를 保障한다.
- (2) 西白林이 西獨의 構成部分은 아니나 現在의 結合關係는 繼續維持되고 對外的으로 西獨이 西白林市民의 領使業務를 取扱한다.
- (3) 西白林市民은 東獨을 訪問할 수 있다.
- (4) 交易活動이 增大키로 한다.

이 協定에 依하면 白林 全体가 4大國의 支配下에 있다는 말이 함축되었으나 實質的으로 蘇聯側 主張을 받아들여 西白林이 西獨의 一部가 아니라는 것을 西方側에 認識시킨 點이다. 即 西獨은 西白林에서 政治行爲를 할 수 없다는 것을 認定한 反面 西白林에 蘇聯 領使館을 設定할 수 있게 되었다.

이 協定에 따라 東·西緊張의 "核"인 白林問題가 解決되어 交通問題를 中心으로 西獨-西白林, 西白林-東獨間, 東獨-西獨間의 調印이 1971年 12月 11日에 調印되었다. 이것은 다시 兩獨議會의 버준을 거쳐 1972年 6月 2日부터 發効되었다.

베르린 協定의 成立은 4大國이 東·西獨에 對한 外交的 壓力구을 했다 東·西獨은 緊張緩和에 對한 國際的 環境變化의 壓力을 받으면서 베르린 協定施行 細則을 마련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다. 東·西獨 基本條約

兩獨 體制上의 差異에서 오는 基本立場이 팽배하기 때문에 基本條約의 締結은 政治놀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兩獨은 民族의 單一性이라는 親密感 때문인지 꾸준한 協商을 繼續한 結果 1972年 11月9日 歷史的인 兩獨 基本條約이 西獨의 "本" 首相官邸에서 假調印 되었다. 이 假調印이 締結되기 數日前까지만 해도 重大한 難關에 부딪혔으나 西獨의 끈질긴 說得과 外勢무드를 통한 交渉에 依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겠다. 西獨은 蘇聯에 도움을 請하여 코사긴 首相이 東獨을 설득했으며, 4 大國 會議을 開催하게 하여 "4 大國의 全獨逸에 對한 權利와 責任은 東·西獨의 基本條約締結과 유엔同時加入 以後에도 存続하며 第2次 世界大戰의 戰勝國과 獨逸사이에 平和條約이 成立될 때까지 獨逸과 西白林에 關한 處理는 保留된다" 라고 宣言하기에 이르렀다.

基本條約 協定中 어려운 問題에 數次 逢着했으면서도 끝내 締結된 이 兩獨 基本條約의 全文에는 兩獨의 重要 基本政策에는 意見一致를 보지 못했음을 明白히 드러냈다.

即 兩獨은 "國家 地位問題를 包含한 兩獨의 基本問題에 對한 西獨과 東獨의 見解차에도 不拘하고 歷史的인 現實에서 出發하여 西獨과 東獨間의 協力條件을 造成하는데 合意하였다" 라고 叙述하는데 이것으로 보아 意見 不一致를 엿볼 수 있겠다. 이 基本條約에서 東獨이 要求한 東獨의 國際法的 承認에 關하여서는 言及하지 아니하고 또 外國公館의 名稱이 大使館이 아닌 常駐代表部를 設置

하게 한 것은 西獨側의 主張이 관철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東獨側은 西獨側으로부터 東獨의 主權을 認定하고 相互 獨立과 主權을 尊重하며 相互間 平等한 國家로 認定하여 領土의 保存을 全幅적으로 尊重하고, 白林과 西獨의 紐帶關係는 認定하나 構成部分은 아니라는 것 등은 東獨側 主張이 觀徹된 것이다. 따라서 獨逸의 統一보다는 歷史적인 現實인 分斷을 認定하고 兩國間的 關係는 正常化하고 實質적이고 人道主義적인 問題를 解決하고 經濟, 科學, 技術, 交通, 文化, 스포츠, 環境保護 및 여러分野에 協定을 締結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이 基本條約은 西獨이 否認해오던 東獨의 法的存在를 認定하고 國際法的인 承認은 아닐지라도 國內法的인 한 민족의 二國家를 認定한 것은 重要的 意義가 있다 하겠다. 이 條約의 締結로 東·西獨은 우선 現象固定으로 들어갔고 分斷에서 생기는 國民間的 苦痛을 解消키 爲한 接觸의 擴大強化에 努力하게 되었다.

이 基本條約의 內容을 열거해 보면

- (1) 兩獨은 同等權의 바탕위에서 相互 正常的인 善隣關係를 增進한다.
- (2) 兩獨은 卽憲章에 規定된 目的과 原則을 尊重한다.
- (3) 兩獨은 雙方의 見解差를 오로지 平和적인 方法으로 解決하여 武力을 使用하거나 威脅을 삼가한다.
- (4) 兩獨은 둘중 어느 한 國家도 다른 國家를 國際적으로 代表할 수 없다는 前提 條件下에 善隣關係를 出發시킨다.

- (5) 兩獨은 유럽 安保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이를 積極 支持한다.
- (6) 兩獨은 서로의 主權은 相對方 領土에 限한다.
- (7) 兩獨은 各己 常住代表部를 設置한다.
- (8) 兩獨은 兩國間의 國交正常化를 爲해 實質的이고 人道主義的인 協議할 意思를 闡明한다.
- (9) 兩獨은 앞서 그들間에 締結되었거나 關係된 쌍무 또는 다변 條約이나 協定이 이 條約에 의해 하등의 制約을 받지 아니 한다.
- (10) 이 條約은 兩國議會의 批准을 要하며 批准後 批准時의 交換과 함께 發効된다.

라. 基本條約에 對한 贊成과 反對에 對한 見解

東·西獨은 1960年度 後半의 東·西 兩陣營 緊張緩和 물결에 힘써 積極的인 兩獨交流를 試圖했던 것이다. 그 結果 兩獨은 어느 누가 더 많은 統獨政策을 具現했던 之間에 獨日^日에는 獨蘇·獨巴 兩條約을 成立시켰는가 하면 이어 4大國의 베르린協定을 簽結했고 나아가서는 東·西獨 基本條約을 締結하는 一段階 作業을 끝낸 것이다.

第2段階에 들어가서는 그 條約들을 어떻게 繼續 適用시키고 또 活用해서 兩獨 및 유럽全體의 安逸을 위해 實効를 거두는 것과 또 나아가서 平和政策에로의 東西 接近에 어느만큼 活用하느냐가 關 鍵이다.

異質的 體制下의 兩獨은 各己 自己 領域에 屬해 있는 國民에게

누가 더 많은 惠沢을 주느냐가 問題이며 西獨은 어떻게 하면 段階的인 統一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고 東獨은 어떻게 하면 社會主義 獨逸國家를 全獨逸에 建設할까 하는 課題가 賦與되었다. 그러나 兩獨은 彼此간 이 目的을 達成키 위해서는 全 유럽의 平和安保秩序 樹立을 爲해서 努力해야 한다는데 意見을 一致한다.

東·西獨이 國際政治機構에 同時 加入되어 어떻게 兩獨政治에 影響力을 行使하면서 獨逸人의 共同利益을 追求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課題로 남아 있다. 現在 兩獨逸 關係는 "先民族統一 後國家統一"이라는 高次元의 統一政策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否定的인 면과 肯定的인 兩面이 있다.

1. 肯定的으로 받아들이는 面

... 眞情한 平和政策이란 양편의 積極的인 努力에서 產出되는 것이며 雙方의 積極的 態度는 서로 對等하게 대우하는 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 獨逸方式의 肯定的인 面은 現 西獨政府가 東西政治의 現實性을 認定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平和政策을 誘導하는 合理的인 이치라고 할진데 西獨이 現實性의 바탕위에 政策을 입안했다는 姿勢는 너무나 當面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政策들이 나올수 있는 歷史的인 背景을 살펴보면,

(가) 비스마르크 以後 獨逸은 유럽에서는 英國 및 仏蘭西와 併하기 위해서 유럽政治의 트러블 메이커 노릇을 하면서 獨逸의 後進性을 脫皮하려고 유럽의 隣接國들과 늘 對立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더구나 獨逸은 ^{指定學的}指定學的으로 유럽의 심장부에 있기 때

에 해양에로의 入口가 極히 협소하여 海路를 통한 国力 伸張에 限界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原因은 獨逸의 後進性을 가져온 原因이 된 反面에 国力 擴大 方向은 언제나 동부로 進出하는데만 可能했다. 중세의 東方 植民을 비롯하여 近世에는 프러시아의 동진·폴란드 分割의 參與, 最近世에는 발칸과 비잔틴에로의 3 政策等이 좋은 例이다. 第2次 大戰때 히틀러의 生活領域政策이 東方에로 向한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同 擴大 政策의 推進過程에서 獨逸人은 그들의 과격한 民族性 때문에 東歐의 隣接國으로부터 많은 원한을 샀던 것이다.

이러한 歷史的인 背景때문에 現西獨政府가 東方政策으로서 平和的 동진을 내건 지금 西獨의 大部分의 國民들은 이를 支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獨逸은 東方과의 和解로서만이 中部유럽에 있어서 그들의 自由行爲權이 擴大될 뿐더러 平和的인 東方交流에서만이 国力擴大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나) 東方政策의 또 한가지 發生原因을 찾아보면 積極的인 平和 政策을 追求하는 西獨政府가 많은 것을 讓步하여 東方의 이웃들과 過去를 잊고 和解하겠다는 精神에서 나온 것이다. 短期的인 面에서 앞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보면 東方政策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獨巴條約으로 國土의 縮小를 성문화했고 東·西獨間에는 基本條約으로 國土의 分斷을 暫定的으로나마 固定化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政策的 實利를 勸案하고라도 同政

策을 과감하게 推進한데는 西独外交의 유연성이 보이며 바로 現實과 未來를 洞察한 西独外交의 積極的이고도 長期的인 포석이 보인다고 하겠다.

東歐人과 和解하여 그들의 뇌리에서 "獨逸恐怖証"의 쓰라린 過去를 씻어버려야만 協商에도 도달한다는 것이다. 東歐人과 和解함으로써 그들과의 關係가 正常化되고 中部유럽에서 獨逸人의 自由行為權이 擴大된다는 것이다.

(다) 戰後 獨逸이 東方政策以前까지 採択한 統獨政策들은 段階的인 打開策들로서 分明히 順次的인 發展을 거듭해온 것이 틀림없다. 처음에는 西方紐帶關係를 굳건히 하면서 經濟復興을 試圖했으며 다음은 1960年을 前後해서는 經濟再建을 저력으로 나토, 유럽이사회 등의 西方側 諸機構에서 重要하고 強力한 發言權을 가진 會員이 되었으며, 1960年 後半부터는 西方側 對東歐政策의 一環에서 東方接觸에도 西独의 自主外交路線을 구사하기 始作했다는 點이다.

다시 말하면 諸西万國家는 勿論이요, 獨逸問題에 直結되는 4大強國의 支援과 強力한 保障下에 그들의 東方外交를 展開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對東歐接觸도 積極外交로 發展시켰다는 것이다. 對東獨 協商에 있어서 從來의 極한 鬪爭的 方法을 止揚하고 1民族 2國家觀에 立脚해서 長期的인 高次元的인 國家統一案을 挾했다는 것은 注目되는 事實이다. 西独의 經濟復興을 主導한 아레나위는 極한 鬪爭論者로만 評價되고 獨逸統一을 바라지 않은 것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志적으로 보면 肯定的인 面도 있다.

(1) 첫째 그의 思想은 西方諸國과의 깊은 紐帶關係 아래선 經濟

建設後 統一이었다. 허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國際情勢의 흐름에 自己政策을 便乘한 것에 不過하다. 東西 冷戰의 틈바구니에서 누군들 그 以上の 政策을 내놓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2) 둘째, 西獨 政府 發足當時 전독성을 設置하고 훗날을 위한 統一研究를 遂行케 했다.

처음에는 모든 國民들이 豫算浪費라고 非難을 많이 했었으나 同部処의 發足後 지금까지 많은 業績을 남겼다. 분단 初期부터 存統되어온 書信交流, 制限된 人的交流, 그리고 스포츠 交流의 實際 業務를 주관했고 貿易省이 主觀하는 內獨貿易을 間接 支援했고 또 월경선 公益事業에 兩獨의 末端 行政管理들이 相互 協力토록 支援했으며 統一까지의 제시기별 研究와 아울러 홍보 및 厚生事業도 많이 했다. 例를들면 統一以前과 以後의 問題點들에 對補해서 研究를 시켰고 특히 統一後의 經濟 社會主義 平準化와 行政面의 調整을 어떻게 遂行할 것인가를 細密하게 研究 企劃한 것이다.

그리고 東獨의 權力構造, 共產業, 支配體制 및 著名人士의 人的狀況을 分析한 諸 資料를 分析했고 東獨의 諸 學術資料 蒐集과 他地域社會 및 鄉土文化의 깊은 研究까지도 하고 있다. 또 全獨逸省은 西베르린을 往來하는 사람과 國民에게 '하나의 民族'이라는 概念을 머리속깊이 주지시키도록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東獨國民이 西獨 및

西베르린을 往來하는 사람들에게 無料治療과 아울러 現金補助도 해주고 있다.

- (3) 세계가 主事業으로 내걸었던 經濟建設의 成功을 위해 西歐 열강과의 優好關係를 維持시켜 안으로는 再建事業에 国力을 總動員하여 國民總和를 꾀했다. 國民總和를 꾀하는 方法으로 아데나워는 나치團體에 寬容을 베풀 反面 反共의 스토크를 내세운 것이다.

國民의 뜻에 따라 議會民主主義를 向해 가면서 反共政策이 國民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데는 獨逸國民의 國民性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獨逸은 元來 基督敎的 保守國家로서 唯勿論的 共產體制를 反對하는 精神風潮가 獨逸社會를 支配하고 있었다. 그것은 1920年代의 바이마르體制의 공화에서 保守體制로 變化해간 歷史가 잘 立證해 준다. 아데나워는 흔히 外交政策에 西方一變體였다고 酷評을 하지만 그는 1963年 仏蘭西와 獨逸條約締結로 1948年의 30年戰爭以來 출판 유렵분규의 불씨였던 獨逸關係를 解消시켰고, 西方과의 紐帶強化로 敗戰獨逸의 位置를 向上시켰으며 東·西獨 再統合理論外에 獨·蘇正常化의 必要性을 認定하여 1955年 蘇聯과의 國交를 締結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東方政策의 根本 바탕은 아데나워時代부터 始作되었다고 보는 面도 있다.

2. 否定的으로 받아들이는 面

否定的인 側面에서 보는 東方政策은 너무 유연성이 많기 때문에 내재적 危險性이 포함되어 있다.

(가) 첫째 西獨이 平和政策을 포방하여 東方과의 和解를 위해 많은 양보를 거듭하면서 東獨을 法的承認 함으로써 國際社會에서 두개의 獨逸國家를 合法化시켰고 民族의 分斷을 固定化시켰기 때문이다. 브란트는 이 分斷의 固定化를 어디까지나 暫定的인 同時에 獨逸統一에로의 過程이라 하지만 이 固定化는 어떻게 보면 民族分斷의 永久化를 規定한 것이다.

가령 現段階에서 東·西緊張緩和가 동결된다면 몰라도 이 緊張緩和에 틈이 생길 때는 東·西獨逸에도 影響을 미칠 것이다. 兩國体制의 關係에서 조종되는 政治事件을 보면 諸國家는 단호히 國家 利益追求에서 團合하고 離脫하는 것이므로 언제 어떤 事件으로 對立할는지 모르는 일이다. 만약 東·西獨이 眞實로 統一을 위하여 努力하고 平和的 시위를 벌인다해도 2次大戰의 戰勝國들은 獨逸의 再統一을 許容치 말자는데 合意하였다는 事實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 둘째로는 西獨의 安保를 위해서 東歐世界와 緊張緩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東方政策이 必要하다고 한다. 허나 브란트 政權이 東方政策이라는 스토건을 내세워 西方側을 代表해서 對東歐 政策의

앞장을 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럽 共同市場과 나토를 통한 西方 紐帶가 깊이 맺어져 있는 限 西獨의 安保에는 何等의 問題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西獨의 安保는 美國을 비롯한 西方 強大國들의 國家利益에 직결되기 때문에 美國과 西方諸國은 西獨을 保護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同政策으로 因하여 西獨의 國際的 地位가 向上된다는 것도 없고 다만 東獨의 國際的 地位가 上昇되고 認定 받았다는 것이다.

(다) 세 번째는 西獨의 東方政策이 實利面에서 따져 볼 때 共產側의 對 西歐 浸透戰略을 間接 支援해준 셈이 된다. 共產黨의 根本 目的은 언제나 世界赤化를 그 革命課業으로 삼고 있고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世界赤化 꿈이 아니더라도 國家의 本質上 國家는 向上 힘을 밖으로 뱉으려는 性向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讓步는 恒常 危險을 안고 있는 것이다.

蘇聯이 西獨의 東方接近에 好意를 갖고 対応해온 것은 해방기의 平和共存을 받아들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實利를 追求한 現實政治인 것이다. 蘇聯은 中·蘇 紛爭으로 因한 亞細亞에서의 紛爭 때문에 「西部戰線」에서나마 認定을 期하자는데 意義가 있다 하겠다. 또한 韓 勃蘭트의 東方政策에 선뜻 好意해준데는 두개의 最大限의 目

的과 最少限의 目的을 設定해 놓았다고 하겠다. 最大의 目的은 全유럽에 共產勢力의 擴張으로서 美軍이 撤収할 때는 時期를 틈타 그의 勢力權을 엘베에서 도버까지 옮긴다는 것이고 最少의 目的은 平和共存의 이름아래 유럽과 獨逸에서 東西政治의 現象을 固定化하여 東歐共產國家들로 하여금 国力을 公고히 하여 유럽 및 世界政策에 影響力을 行使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蘇聯의 政策이 브란트의 東方政策과 對立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브란트의 저의 없는 政策을 받아 들였다고 하겠다.

(나) 네제는 東方政策이 蘇聯과 共產圈을 對西邦侵略에 有利한 條件을 마련해준 反面 分斷된 弱小國家의 民族的 發展에 계등을 加하는 結果가 되었다. 왜냐하면 強大國의 權威 認定에 따른 分斷 固定化 때문에 다른 西方國의 諸弱小國家는 西獨의 政策路線을 緊張緩和라는 名分 아래 따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經濟的으로는 大國인 西獨은 共產勢力의 미래구사에 별 동요가 없겠지 마는 低開發 또는 開發途上의 西方世界의 國家들은 共產勢力의 侵透 때문에 社會的 不安을 惹起시킬 念慮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共產國家의 弱小國들은 同政策이 壓力的인 要素가 되었다.

同 政策을 實現하는데 蘇聯이 東歐勢力을 代表해서 그 限界와 指針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크레믈린의 權威를 계삼 다시 認定해준 結果가 되었고 東歐國家에 對한 모스크바의 內政間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나) 다섯째로는 西獨의 東方和解에 따른 東獨承認이 獨逸人의 一民族 觀念을 稀薄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비스마르크때부터 히틀러의 執權前까지는 獨逸人의 民族感情은 대단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허나 나치 執權時에 人民 共同體를 根柢로 獨逸民族의 우수성을 내세워 世界를 恐怖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殘忍性을 나타낸 後의 獨逸人들은 그 歷史的 수치감 때문에 民族主義란 말을 重要하는 思想이 國民 各自에게 潛在的으로 內在해 있다. 더구나 戰後의 젊은 世代들은 經濟復興으로 因한 豊요한 環境때문에 獨逸 再統一에 의 實감이 없는 때에 東方政策의 出現은 그들로 하여금 當然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이에 反해 民族感情은 稀薄하게 되기 마련인 것이다.

마. 基本條約 締結과 西獨 統一政策에의 展望

東·西獨 基本條約 締結로 因하여 東獨은 國際社會에서 平等한 國家로 認定을 받았다. 東獨은 유네스코를 비롯한 모든 國際機構 加入이 되었고 西獨과 友好關係에 있는 모든 國家들이 서둘러 東과의 外交關係를 樹立하게 되었다. 兩獨은 유엔에 同時 加入되었

兩國의 外交 使節인 常住代表도 交換했다. 여기서 東獨은 西獨의 代表를 外國代表로 待遇했다. 西獨은 特殊 關係라고 하여 簡略한 接見으로 대신했다.

東·西獨 關係는 이제는 國內法的 關係에서 國際法的 關係로 發展한 것이다. 그러나 基本條約의 締結與否에도 不拘하고 東·西獨의 基本 獨逸統一政策 自体는 別로 變함이 없는 것이다. 獨逸의 再統一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曠스러운 目的이기도 하나 當面한 緊急한 政策目標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西獨의 東邦政策은 獨逸 分斷의 現實을 勘案하고 獨逸民族內에 두 國家가 共存하고 있음을 認定하고 아무 主權國家의 緊張緩和에 의하여 언젠가는 統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點에서 現實主義的이고 機能主義的이라고 할 수 있겠다. 元來 브란트의 이 統獨政策은 지금 당장 統一을 이룩하려 Maxiplan 이 아니고 時間을 벌어가면서 한段階 한단계씩 進展시키는 Miniplan 를 択하고 있는 것이다.

西獨도 東獨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將來에 있어서는 統一을 要望하지 않고 두國家가 緊張을 緩和하고 서로 선의의 競爭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兩獨은 이러한 條件下에서 보다 緊密한 經濟交流를 增大하고 아울러 離散 家族들의 고통을 解消시켜 주는데 努力할 것으로 보인다.

9. 經濟交流를 통한 接觸關係

東·西洋 陣營의 冷戰이 극도에 達해서 모든 分野의 交流와 接觸이 거의 完全히 断絶되다시피 했던 時期에도 兩獨의 經濟交流는 比較的 順調로운 發展을 거듭해온 것이 바로 經濟交流이다. 이 兩獨間의 經濟交流는 '通商地域間 交易'으로 불리고 있다. 이 같은 名稱이 붙게된 理由는 戰後 4大戰勝國 地域사이에서 始作된 事實과 西獨側이 東獨을 애써 外國으로 待遇하지 않으려는 意圖가 反映된 것이다.

가. 接觸의 由来

兩獨交易은 東獨側의 經濟的 理解關係가 있는 反面 西獨側은 政治的 및 人道的 理解關係가 서로 상반되지 않는 分野이기 때문에 分断 初期부터 지금까지 比較的 꾸준한 上昇勢를 보여주고 있다. 例로 1952年의 兩獨間 全体交易量은 3億 마르크였던 것이 20年後인 1972년에는 52億 마르크로 擴張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急上昇에도 不拘하고 1936年代에 比하면 아주 可 미한 形便이다. 그 當時 베르린을 除外한 지금의 東獨 地域은 이 地域内の 農業 및 工業分野 純 總生産量의 43%는 他地域에 供給하고 이 地域内の 全体 純總需要의 45%를 獨逸内の 他 地域으로부터 사들였다. 그러나 지금의 輸出高는 東獨이 西獨에 純 總生産量의 2%를, 西獨은 東獨에 純 總生産量의 1%미만을 넘지 못하고 있다

單一로 되었던 獨逸 經濟權이 東·西로 分離되었으나 各己 安定된 經濟成長을 이룩한 結果 兩獨의 1人當 國民所得은 거의 같은 水準에 이르렀고 兩獨은 各己 陣營內에서 美國과 蘇聯 다음가는 工業國이 되었다. 單純히 經濟的인 側面에서만 보면 兩獨은 各 分野에 있어서 緊密한 協調를 할 수 있는 理想的인 條件을 갖추고 있다. 兩獨은 匹자 高度로 發達된 工業技術, 消化力이 큰 市場, 地理적으로 隣接해 있기 때문에 交易上의 運賃節減等 아주 좋은 相對가 될 수 있다. 허나 兩獨은 相異한 經濟體制와 各 다른 經濟블럭에 깊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各己 相對 地域에 販賣서비스網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東獨은 國內 民間人들의 西獨 訪問을 完全히 遮斷했을때도 商人들의 西獨 訪問만은 恒常 許容하였다. 西獨의 立場은, 東·西交易은 그 自体가 하나로 묶는 効果的인 력은 이것을 東獨에 對한 壓力의 수단으로도 利用해 왔다.

나. 交易의 法的 뒷받침

地域間 交易은 戰後 獨逸이 4個 強大國에 占領當時에 占領地域間의 物品去來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法的根拠는 1945年 로즈담 會談때에 美·英·蘇 3個國이 戰後 獨逸에서 全國을 單一經濟權으로 하여 4個 占領內에 主要商品을 均等 分配시켜 平等한 生活保障을 시키자는데 合意하였다. 以後 4大 占領國은 他占領國과 商品去來에 協定을 맺기 始作하여 英國과 蘇聯은 1946年 처음으로 뒤손地域間協定 (Dyson) 을 맺고 같은 해 美國은 브리텐 (Biretein)

交易約定을 美·蘇間 締結하고 이어 프랑스도 蘇聯과 소프라約定을 맺었다. 이 兩地域은 相互 依存的이었으므로 東·西 冷戰의 틈새 구니에서도 꾸준한 成長을 보인 것이다.

다. 민덴協定締結 (1947年 1月 18日)

처음에는 美·英·仏 占領地域이 各各 蘇聯占領地域과 雙務的인 協定을 맺었으나 1947年 1月부터 經濟 및 行政地域으로 統合하여 蘇聯占領地域과 새로운 交易狀態가 되었다. 이로써 美國과 英國은 1947年 1月 18日 蘇聯과 새로운 민덴協定을 締結했다. 이 協定 1948年 3月 31日 蘇聯이 베르린 封鎖措置가 取해질때까지 繼續되었다. 베르린 封鎖가 解除된 1949년에는 이미 兩地域에서 通貨改革이 實施되어 單一通貨政策의 부재와 東·西獨政府 樹立으로 因하여 過去 獨逸諸국이 政治, 經濟, 社會적으로 양분되었고 이로써 地域間 交易은 새로운 국면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西獨 政府는 애당초 東獨政府를 合法政府로 認定할 수 없다는 原則에 따라 政府對 政府의 交易協商을 回避하기 위한 法으로 "地域間 交易委託事務所"를 設置하여 東獨과의 交易을 當케 했다.

라. 프랑크 푸르트協定 (1949年 10月 8日)

兩獨 政府 樹立後 兩國家는 支払方法 및 정산단위를 決定기 위해서 처음 맺은 것이 프랑쿠푸르트協定이며 이 協定은 지

까지도 그대로 通用되고 있다. 이 約定은 1950年 6月 30日까지 有效하도록 하였고 1951年 5月 31日까지 延長되었으며 3億 마르크의 商品交易에 合意했다.

마. 베르린 協定 (1951年 9月 20日)

푸랑크프루트 協定에 依拠한 交易實施의 難関解決과 交易量 增大를 위하여 兩獨은 1951年 7月 6日에 베르린 協定을 締結하여 同年 9月 20日에 効力이 發生했다. 이 協定에서 東·西獨은 3億 2千 6百 마르크의 商品去來에 合意하였다. 東·西獨間 交易의 法的根拠는 오늘날까지도 이 베르린 協定에 의거하고 있다. 兩獨間의 交易量은 兩獨의 總生産高에 比하면 未備하나마 꾸준한 成長을 가져왔다.

1951년에 3億 2千 마르크였던 것이 白林障壁을 구축하기 前인 1960년에는 20億 마르크에 肉迫했다. 이 上昇趨勢는 1960年代 초반에 下落했다가 1963年부터 上昇勢를 記錄하여 1973년에는 55億 마르크를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經濟分野의 接觸은 幅이 넓어질 것이고 去來量도 急上昇할 것이다.

이 베르린 協定은 오늘날까지 數次의 保安 修正을 거치면서 繼續 通用되고 있으며 現在 兩獨 交易의 法的根拠는 베르린 協定에 두고 있다. 베르린 協定의 公式名稱은 獨逸 마르크 (D·M 西獨) 流通地域과 獨逸 券銀行 (東獨 마르크) 流通地域間의 交易에 關한 協定 이다. 여기에서 特記할 것은 兩國은 各己 統治權을 行使하는 國家인데도 國號使用을 볼 수 없는 것은 獨逸聯邦共和國 (西獨)이 東獨을 國家

로서承認하려고 하지 않는 政策이 反映될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同 協定調印에 双方 代表들은 그들의 政府를 代表해서 아니라 各各 그들의 通貨地域을 代表하여 協定問題에 調印한 것 西베르린市를 通貨地域이라는 表現으로 西独側에 包含시킬려는 지가 보인다.

바. 兩獨의 交易政策

東·西獨 基本條約締結 以前에도 單一經濟權의 유산으로서 地域間交易은 分斷된 兩獨을 連結시켜주는 架橋役割을 担当한다. 兩獨의 交易 当事者들은 交易에 隨伴하는 契約締結, 商品輸送 및 用役關係等으로 끊임없는 接觸을 갖고 있다. 이러한 接觸自体가 바로 政治的인 意義를 지닌다. 西獨은 이 交易에서 政治的 土台를 마련할 수 있고 東獨은 이것으로서 經濟的인 意義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1) 西獨은 東獨을 外國으로 看做하지 않는 政策이 유럽共同市場 會員國들에게도 저촉되지 않았다. 유럽共同市場 條約締結時(1957年3月25日)에 西獨側의 要求에 의하여 유럽共同市場 加入國들은 兩獨交易은 外國間의 貿易이 아니고 獨逸内部의 交易이며 條約當事者들은 東獨을 第3國으로 看做하지 않는다는 것을 條約에 넣고 있다. 그래서 東獨物品이 西獨內로 搬入될시는 이 規定에 의하여 物品稅 免除해 주고 있다.

(2) 西獨은 冷戰으로 因한 베르린 問題가 惹起될 때는 東·西 交易을 利用하여 東獨에 壓力을 加하는 機構이기도 하다. 그 實例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961 年의 베르린 協定 取消條項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 條項은 만약 東獨이 西獨이나 西베르린 市民의 地域間 交易을 妨害할 重大한 措置를 取할 경우 이 搬出이 許可된 物品이라도 取消할 수 있다고 하였다. 허나 베르린 通行에 極度로 制限된 적에도 實際適用은 없었다.

(3) 西獨이 兩獨間 交易을 地域間 交易으로, 東獨은 이를 對外貿易으로 看做한다는 것과 西獨은 交易의 政治的 重要性을, 東獨은 經濟的 利益을 더욱 重要視한다는 차이가 東·西獨의 政策을 根本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獨逸分斷이 초래한 經濟的인 打撃은 西獨보다 東獨側에 훨씬 더 심각하다. 그 理由는 원래 獨逸 帝國主義 時代에 거의 모든 工業地帶는 西獨쪽에 편재해 있었고 東獨쪽은 農業地帶이었다. 뿐만 아니라 東獨쪽에 있던 工業施設은 거의 破壞된 데 비해 西獨쪽의 工業施設은 큰 被害가 없었다는 事實이다. 더구나 東獨支配國인 蘇聯은 東獨으로부터 戰爭賠償으로 남은 工場撤去 移動과 莫大한 軍隊 駐屯費를 東獨에 負擔시켰던 것이다.

또한 西獨은 마샬프랜에 의해 劃期的인 經濟 發展을 이룩했고 이로 因한 人力 不足은 東獨의 經濟沈滯 때문에 西獨으로 避難오는 東獨 人力으로 充當하게 되었다. 그러나 東獨側에서 보면 이 人力 流出이 經濟發展에 큰 奇蹟타가 되었던 것이다. 이 地域間 交易으로 인해서 東獨은 戰爭으로 破壞된 施設을 再建하는데 西獨의

物品을 購入할 수 있었고 外換 問題나 物品價格 面에서 엄청난 經濟的인 利益을 가져왔기에 兩獨間 經濟交易 方式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4) 西獨政府는 政府樹立 4年後부터 東獨國民의 西獨入國에 制限을 걸었던 携帶証 制度를 完全히 廢止하여 東獨國民에게 門號를 完全 開放하는 政策을 取했다. 그러나 東獨은 兩獨間 및 東西베르린間의 通行을 抑制하였다. 兩獨 通行을 規制하는 東獨 國內法인 通行証 制定, 境界線에 障壁設置 및 保安措置, 通行証 및 査察發給 強制規定 等이다. 또 西베르린을 特殊한 政治的인 地位를 가졌다는 소위 獨逸國內에 3個의 國家가 存在한다고 하여 東獨은 東·西獨間에 境界線 通過와 東·西 베르린間의 通行을 따로 取扱했기 때문에 이 두개의 通行政策에 適用되는 規定과 節次도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10. 人 的 交 流

兩獨에 떨어져 살고 있는 離散家族들이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는 여러가지 現實的인 要因에 依해서 決定된다. 첫 要素는 時間이 갈수록 離散家族의 數는 줄어들게 마련이며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西獨 統計에 依하면 1954 년에는 西獨國民이 東獨에 친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1%이었고 1959 년에는 3.5%이고, 70 年度에는 不過 10%밖에 되지 않았다. 둘째 要素는 兩獨間의 關係가 좋으면 만나는 數가 늘어나고 關係가 惡化될 때는 줄어드는 現象이다. 또 西獨은 兩獨間 訪問을 促進시키며 開放하는 反面 東獨은 訪問을 抑制하는 傾向이다. 終戰 直後에도 訪問에 制限이 있을 수 없었으나 1946 年 10 月 29 日부터는 聯合國管理委員會令에 依거 占領地域間의 通行을 制限하게 되었다. 東獨에서 西邦側 占領地域으로 흘러나오는 避難民들 때문에 西方側은 食糧 및 住宅問題에 심각한 問題가 일어남으로 不得已 이러한 措置를 取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한 占領地域의 住民이 他 占領地의 친척을 訪問할 때는 1 年에 30 日以內로 制約했는데 지금도 이 規定이 存続되어 있다. 그러나 西獨은 政府樹立後인 1953 年 西獨의 通行証 携帶規定을 一方的으로 廢棄시켜 東獨住民의 訪問에 門호를 開放시켰으나 東獨은 繼續 制限措処를 풀지 않고 있다.

가. 西独住民의 東独訪問

西独國民이 東独을 訪問할 時는 東独의 까다로운 節次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西独住民이 東独을 訪問할 수 있는 사람은 東独에 父母, 祖父母, 子매, 형제를 둔 西独 國民이어야 한다. 戰後 聯合國 管理委員會에서 發行한 地域間 通行証과 東独에서 發刊한 滯留許可書가 있어야 東独을 訪問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8年7月1日부터는 東独政府가 要求하는 通行証 및 査察發給 強制規定으로 東独 入国節次가 아주 어렵게 되었다. 이 強制 規定에 의하면 東独쪽에 있는 친척이 西独쪽 친척의 東独訪問要求書를 東独政府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를 西独쪽 친척에게 送付하게 되어있다. 西独政府는 東独訪問에 대한 案内書만 주나 東独政府側은 월경사무소에서 西独身分証과 東独에서 보내온 旅行許可書를 提示하고 비자發給 手數料로 15 마르크와 1日 滯留費로 10 마르크씩 西独마르크와 東独마르크를 1 : 1로 交換한다.

西独貨幣는 携帶할 수 있으나 出入国時에 申告를 해야 하고 東独貨幣를 交換한 돈은 東独에서 다 使用해야지 가지고 나갈 수도 없다. 이 밖에도 東独은 1968年12月12日부터 越境旅行時 物品의 搬入 또는 搬出에 関한 規定을 嚴格히 하여 事實上 関稅制度를 둔 것이다. 이러한 措置는 소비재나 貴重품 및 사치품에 대해서는, 이주 많은 手數料를 支払케 하여 西独商品의 東独 搬入을 禁止하는 措置가 된다. 또 東独訪問者가 自家用을 利用할 時는 目的地까지 指定해준 道路以外는 갈수가 없다. 訪問者는 目的地에 도착즉시

管轄 人民警察에 申告하고 出國時에도 똑같은 節次를 要求한다.
여기에 東獨政府는 1961年 베르린障壁 構築以後 東獨을 脫出하여
西獨市民權을 얻은 사람은 共和國 脫出者라고 하여 아예 東獨入國
을 拒否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西獨은 東獨訪問時에 支払
한 手数料로 支払할 돈을 西獨政府에서 提供하고 東獨訪問을 積極
勸奨하고 있다. 이같은 政策은 接觸을 活潑히 그리고 자주 함으
로써 兩獨 國民間에 民族的 感情을 계속 불려 일으켜 언젠가는
統一이 될 것이라는 前提下에 遂行하는 政策이다.

나. 東獨住民의 西獨訪問

東獨住民이 西獨을 訪問할 수 있는 條件은 極히 制限되어 있어
서 西獨國民이 東獨을 訪問할 수 있는 數에 比해 아주 적은 數
字이다. 그 條件은 세가지로 区分되어 있는데 첫째는 年金對象者
로서 男子는 65세, 여자는 60세 以上者이어야 하고, 둘째로는 災
害年金對象者이며, 셋째는 不具年金 수령자이다. 이 外에는 東獨의
公式 代表團이 西獨을 訪問할 때 친척을 訪問하는 것이 高착이다.
이러한 制限이 있기 때문에 베르린 障壁을 쌓기 전인 1961年以前
까지 現 東獨 地域에서만 3百10萬이나 되는 사람들이 西獨으로 脫
出해 나왔다. 冷戰初期인 1950年 初期에는 兩獨 國民의 通行이 比
較的 自由로왔으나 매달 2萬名 정도가 西獨으로 脫出하기 때문에
東獨은 境界線에 철조망을 치기 始作하면서 西獨訪問을 抑制하기
위한 通行証法을 1954年에 制定하고 1957年에 수정발효케 했다.

이로써 脫出口의 구실을 한 베르린에 障壁이 구축된 以後는 西獨을 訪問하는 東獨人의 數가 급격히 減少되었다. 同時에 東獨이 東獨 國民의 西獨旅行을 中斷한다고 發表하여 1957年에 그 數字가 1百 萬이나 되었으나 1963年에는 西獨을 訪問한 東獨人口는 不過 5萬 名에 지나지 않았고 1968年에는 겨우 80餘名에 不過했다.

그 後 東獨政府는 1964年 9月 年金對象者에 限하여 西獨 訪問을 할 것이라고 하여 中斷되었던 西獨訪問이 制限된 範圍內에서나마 재개할 수 있었다. 東獨에서는 年金對象者들을 * 쓸모없는 입 * 으로 비유되며 西獨 訪問時 貨幣額數를 極히 制限하여 旅行費用을 西獨側 에서 거의 負擔하게 했다. 1968年에 東獨의 年金對象者가 西獨과 西베르린을 訪問한 數字가 1百50萬에 이르렀으며 西獨은 이들에게 約 9千萬 마르크를 支払했다. 東獨의 年金對象者 訪問以後 西獨을 訪問하는 數字는 一定한 線을 維持하고 있다.

1965年에는 1百20萬, 1966年에는 1百5萬, 1967年에는 1百7萬, 그리고 1968년부터 1971년까지는 1百4萬線을 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1972年 基本條約 發効 以後 兩獨 交通조약은 * 緊急한 家族的인 事由 * 가 있을 때는 東獨의 年金對象者 以外에 家族과 친척을 訪問할 수 있게 됐다.

다. 西베르린 住民의 東베르린 및 東獨訪問

西베르린 市民의 東베르린과 東獨訪問은 1952年 5月의 國境封 措置가 取해질 때까지는 通行에 지장이 別로 없었다. 1949年

兩獨 政府樹立 以後에도 約 10 萬名의 西部 베르린 住民이 東獨에 職場을 가졌고 約 5 萬餘名의 東獨 住民이 西베르린에 職場을 가지고 있어서 自由롭게 出退勤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東獨과 東베르린 住民들의 가장 適合한 脱出口가 바로 베르린 接境地域이었다. 그 後 東獨政策이 西베르린 市民에 對한 東獨 및 東베르린 訪問은 그후 다소 緩和되었으나 1961年8月에 베르린障壁 構築으로 東베르린 訪問은 다시 禁止狀態에 들어 갔었다. 障壁 構築以後 1963年12月17日 西베르린 市議會와 東獨 政府間에 通行証約定이 締結되어 通行証을 받은 西베르린 市民은 限定된 아침 7時부터 밤 12時로 規定하여 당일로 돌아오게끔 制限하였다. 이 約定은 西베르린當局과 東獨政府間에 1966年까지 모두 4차례의 通行証 約定을 締結했는데 1964年9月の 第2次 通行約定때는

「緊急한 家族的 事由」의 條項을 追加하여 결혼, 出生, 重病 및 死亡의 경우에 東獨쪽의 家族을 訪問할 수 있게 되었다.

이 協定에서도 東獨側은 約定文署名者의 名稱을 「獨逸民主共和國 閣僚會議의 全權代表의 命에 의하여」라는 句절과 通行証에는 獨逸民主共和國 수도 東베르린이라는 文구를 挿入시켜 西獨側은 西베르린側에 불만의 뜻을 나타냈다. 이것은 間接적으로 東獨을 認定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當時 브란트市長은 西獨과의 關係를 考慮하여 約定文 全文에 雙方은 雙方이 多같이 使用할 수 있는 地명관청 및 官직 名稱에 合意하지 못했다 是 것을 挿入시켜 西獨政府의 뜻을 反映 시켰다. 1972年 6月 調印되어 發効된 4大國 베르린 協定과 1971年 12月에 假調印된 西베르린과 東獨間에 맺은 通行協定은 西 베르린 市民의 東베르린 및 東獨 訪問을 保障하는 軸心계가 되었다

11. 베르린協定 및 東·西獨 基本條約의 現在狀況

東方政策의 旗手 브란트가 그의 補佐官의 東獨諜者 嫌疑에 責任을 지고 首相職에서 물러났다. 이어 "헬무트슈미트"가 首相에 就任하였다. (1974.5.16) 그는 就任演說을 통하여 東獨政策을 發表하였고 이것을 "條約政策"이라 하였다. 그의 전임자인 브란트의 東方政策의 一部로서 對東歐 諸國家 및 東獨과 締結한 條約을 根拠로 한 政策을 말하는 것이다.

그의 "條約政策"이란 브란트가 締結한 獨·蘇條約을 爲始한 모든 對東歐 條約들을 忠實히 履行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잊지 않고 이 모든 條約의 履行은 美國을 위시로한 나토 加盟國들과의 보다 緊密한 友好關係를 確固히 하는 土台위에서 遂行할 것이라고 強調한 것은 西方國家와의 關係가 優先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條約政策"은 迫力있고 彈力性있는 브란트의 東方政策에 비해 安定第一政策을 追求하는 政策이 될 것이다. 여기서 西獨의 緊張緩和 政策中 브란트가 맺은 東·西基本條約과 4大強國이 맺은 베르린協定이 主軸을 이루기 때문에 이 條約들의 性格을 理解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가. 베르린協定과 基本條約

4大強國 베르린協定이 締結되었는 데도 不拘하고 東獨側이 1974年7월에 西獨政府의 環境庁 官吏에게 西베르린 通行 妨害事

件은 바로 베르린協定の 첫점과 蘇聯側의 一方的인 協定解釈에서 나온 처사이다. 앞으로 슈미트首相은 對東歐政策에 있어서 4大強國 베르린協定の 解釈과 補完問題가 큰 課題일 것이며, 또한 基本條約에 나타난 問題點들을 익혀두어야 하겠다. 즉 西獨의 東方政策은 段階的 統獨方案인데 이 段階的 東·西獨 交流가 어느程度 進展되었는지 檢討하여 보는 것이 妥當하다.

東·西獨 基本條約의 第7條와 베르린 4大強國 協定에 의하여 西獨政府는 西베르린에 聯邦環境庁과 保健庁을 設置하려 하자 蘇聯과 東獨은 4大強國 伯林協定 違背하고 하여 西獨聯邦政府의 環境庁 官吏의 西베르린 通行을 妨害했다. 上記 協定은 戰後 4大強國이 맺은 어떠한 規定에도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베르린의 法的位置에 대하여 4大強國은 完全 合意를 볼 수도 없고 보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항상 不傷事가 提起될 所地가 있는 것이다.

나. 베르린市の 性格問題

포츠담會談에 의해서 4大強國이 獨逸諸國의 首都 베르린을 占領 分割하였으나 蘇聯은 베르린市가 蘇聯占領 地域內에 있기 때문에 蘇聯軍 占領權에 속한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西方側 3大強國이 西베르린에서의 權限을 蘇聯占領軍의 暫定的인 許諾下에 부여된 行政權이지 固有의 權限은 아니라고 主張한다.

이러한 베르린의 성격이 東獨政府의 樹立과 아울러 東獨政府에 移讓되었다고 孤立하고 있다. 그러나 西方側은 포츠담會談에 依拠한 權利行使로서 서베르린에서 西獨政府의 公式行使를 進行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蘇聯과 東獨은 主權侵害라고 하나 西獨政府는 1965年 4月 聯邦議會開催와 其他 政府 行事を 서베르린에서 敢行했다. 이에 대해 蘇聯과 東獨은 서베르린에 威脅飛行과 交通을 完全 遮斷하여 報復을 하였다. 이러한 理由로 西獨과 西베르린의 交通이 蘇聯과 東獨에 의해 자주 妨害되었는데 브란트의 東方政策과 緊張緩和 政策에 따라 좀 누그러진 것은 蘇聯側의 態度로 보아서 알 수 있겠다.

그리하여 4大強大國 베르린 協定當時 蘇聯側이 沈黙을 지키고 西方側 역시 이 問題를 拳論치 않아서 同協定에서 어려운 問題를 배듭짓지 못하고 넘어갔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베르린問題로 因해서 問題가 惹起될 可能性은 항상 存在한다.

다. 西獨國民의 西베르린 通行問題

서베르린으로 通하는 西方3大 強大國의 通路는 蘇聯軍 占領 司令官의 諒解아래 이루어졌으나 西獨國民의 西베르린 通行에는 別途로 東獨政府의 承認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蘇聯側의 主張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蘇聯이 東獨의 國家承認을 위한 壓力手段으로 使用하는 것이다. 그러나 西方 3大強國과 西獨은 이것을 포츠담 會談에 依拠한 權限으로 일축함으로써 항상 政治論爭으로 抬頭되고

있다.

1971年 伯林協定當時 蘇聯은 上記 主張을 繼續하다가 東獨을 說得시켜 西獨國民의 伯林通行에 모든 편리를 提供하겠다는 句節을 挿入시키므로서 西獨의 意思가 貫徹된 것이다. 또 西獨國民의 西베르린 通行에 관한 細部細則은 兩獨政府에 委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西베르린의 法的問題는 東西獨 및 4強大國 사이에 解釈 上の 問題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라. 베르린市와 西獨과의 法的關係

1971年 9月 伯林 4大國 協定이 締結되기 以前까지 蘇聯은 항상 西獨과 西베르린間의 紐帶關係를 認定치 않고 다만 “特別生存 權”을 가진 地域으로 認定해 왔다. 蘇聯과 東獨은 西方側에게 西베르린에 侵略行爲를 삼가고 西베르린의 國家機能發揮를 妨害하지 말라고 항상 促求했던 것이다. 그러나 東西緊張緩和를 渴求하는 蘇聯이 이 協定에서 크게 讓步한 것은 西獨과 西伯林과의 關係를 認定하였다. 즉 西獨과 西베르린은 特殊關係로서 繼續 紐帶를 갖 고 있다고 하고 다만 西獨 憲法構成要員으로서 行政的인 支配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協定文의 英語와 仏語로 된 것이 나 蘇聯語에는 “서베르린은 西獨에 隸屬되지 않는다”고 強力히 表現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論亂의 對象이며 지금도 論 難이 되는 問題이다.

다. 聯邦憲法裁判所の 判決(1973年7月31日)

그러나 西獨 聯邦憲法 裁判所는 1973年7月31日 東·西 基本條約의 違憲与否 裁判에서 同條約을 合憲的이며 西베르린은 聯邦政府에 속하는 1個州와 같다고 判示하였다.

이에 蘇聯과 東獨은 即刻 이 判示는 베르린協定을 破壞하려는 挑発行爲이며 西獨政府의 이같은 手段은 何等의 影響을 미칠 수 없다고 異意를 提議하였던 것이다.

蘇聯과 東獨側이 主張하는 소위 西베르린과 西獨과의 關係를 政治的인 問題를 提議한 經濟, 社會, 文化를 諸分野에서만 紐帶關係를 維持시킬 수 있다는 主張은 蘇聯이 東獨의 立場을 받아들여 내세우는 主張이지 實質的으로 貫徹시킬려는 意圖는 아닌 것 같다.

만약 共產側 主張대로라면 1971年의 協定은 以前의 西獨과 西베르린과의 關係가 아무런 달려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西方側은 蘇聯側과 再妥協한 結果 西獨側이 西베르린에서 聯邦大統領의 執務行爲, 聯邦議會의 會議, 聯邦議會의 分科委員會 會議 및 聯邦憲法機關의 遂行 또는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고 蘇聯側이 合意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蘇聯側의 단서로 西獨으로서 는 못마땅한 措置인 것이다. 왜냐하면 西獨의 主張은 主權國家인 西獨이 自國內의 베르린問題를 他外國의 干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西獨의 意圖에 어긋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바. 東·西紛爭으로서의 베르린 位置

베르린 協定이 이미 締結되어 發効한다고 하더라도 베르린問題를 쉽사리 解決하기란 遙遠한 것이라 하겠다. 베르린은 東·西를 莫論하고 冷戰 및 紛爭의 “核”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兩側의 見解 差異는 한 祖國, 두 國家를 앞세우는 西獨과 두 祖國, 두 國家를 내세우는 東獨側과의 理論 對立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西獨과 西方國家의 見解대로 하면 서베르린에서 西獨의 主權行使로서 政府의 支部 또는 官庁設置와 政府行爲는 하등의 不法的인 行爲가 되지 않으나 東獨과 東歐側에서 보면 不法的인 行爲와 同等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도 紛爭의 對象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伯林 4大強大國 協定으로 進展이 있었다고 하지만 根本的인 核心問題는 西方側과 蘇聯側에서 彼此 拳論을 回避하고 沈黙으로서 代身하고 있다. 蘇聯과 東獨은 西獨側이 聯邦政府의 環境庁 設置問題로 環境庁 管理의 通行을 妨害한 事件은 通行妨害를 爲한 구실이지 이것이 根本的인 原因이 되지는 않는다. 베르린問題는 冷戰의 “核”일 뿐더러 이것은 紛爭의 象徴이기 때문에 兩側이 서로 어떠한 根本的인 讓步를 期待할 수란 없고 다만 적은 紛爭으로서 各己 自己側도 繼續 關心의 對象이며 國家權威에 속하는 問題라는 것을 想起시키는 媒介體인 것이다. 따라서 베르린의 問題는 繼續 東·西獨 및 西方 및 共產世界의 紛爭의 焦點으로 繼續 남아 있을 것이다.

12. 基本條約과 其他問題

東·西獨 基本條約締結과 더불어 여러가지 問題에 妥協을 하기 로 이 基本條約에 明示하고 있다. 브란트의 後任 슈미트 首相이 밝힌 “條約政策”은 이미 締結된 條約을 忠實히 履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東·西 基本條約에 東西獨이 앞으로 妥結해야 할 問題는 同條約 第7條에 明示되어 있으며 問題가 되었던 西獨環境庁 設置問題 역시 同 條約에 包含되어 있는 案件이다.

上記 基本條約 締結當時 兩獨代表는 4大強國 베르린 協定을 遵守하면서 이 基本條約을 忠實히 履行할 것을 聲明을 發表하여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基本條約은 統一條約이 아니며 統一接近 내지 東西 緊張緩和 補助 條約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 基本條約 締結 以前에도 이미 이러한 政策은 遂行되어 온 前轍이 있기 때문이다. 이 基本條約에 나타난 第7條에 明示된 案件들은 前 西獨首相省長官 바르씨가 내 세운 “接近을 통한 變化”라는 政策으로서 이미 1963年 當時 西베르린 公報官 時節에 提示한 것이 있었다. 바르씨가 主張했던 “接近을 통한 變化”란 獨逸統一 問題가 純粹한 獨逸人的 問題이지만은 오늘날 國際政治 事件으로 볼 때 完全國內問題라고만 할 수 없다”는 前提下에 “東獨問題는 強大國의 利害가 얽혀 있는 만큼 段階的 方法으로 東獨과 蘇聯과

密接한 接觸을 한 後 그들의 態度가 變化된 후라야 東獨이 可能[〃]할 것이라고 力說한 바 있다. 上記 條約 第7條에 妥結하여야 할 問題들을 明示하였다 하더라도 具體적인 內容에 들어갈 때는 쉽게 妥結되지 않을 것이라고 展望하였고 그 展望은 오늘의 東西獨 會議過程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

이 基本條約에서 가장 어려운 問題는 事實上이던지 또는 形式的이던지 간에 두 祖國 두 國家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 祖國 두 國家나 하는 問題가 衝突이 되는 데서 두텁이 나타난다. 4大強國 伯林協定은 西獨과 西伯林과 關係를 明確히 糾明하지 않고 東西獨 基本條約에서도 西獨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兩獨의 關係가 “內國關係”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東獨에서 主張하는 것 같이 두 祖國 두 國家를 바탕으로 한 獨立된 두개의 完全한 主權國家를 말하는 것인지 不分明하여 東西의 테당트 政策에 變化가 있을 때는 언제나 問題될 可能性으로 남아 있다. 東·西獨 基本條約 第7條에 明示된 案件과 現在의 狀況은 다음과 같다.

가. 法律交流

兩獨間에 法律交流 協調問題는 政治적인 제스추어에 不過한 것이지 서로 피차간 期待하지도 않았고 期待할 수도 없을 것이다.

西獨의 基本法에 의한 國際法에 의한 것 같으면 東·西獨의 國民이 獨逸 民族임을 規定하고 있는 데서 問題의 解決이 불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東獨의 國際法에 해석에 의한 것 같으면 東獨에 國民은 社會主義 理念을 지닌 두 祖國 두 國家論에 社會主義的인 國民文化와 西獨의 資本主義 國民의 帝國主義的 非文化는 区分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根本적으로 交流關係란 始初부터 不可能한 것으로 看做되었었다.

그러나 西獨은 政治犯을 除外한 形事犯 또는 政治와 關聯없는 民事, 行政問題에 한하여 兩獨이 協調할 것을 摸索하나 東獨은 広範圍한 問題까지 다루자고 提議하고 있다. 이 法律交流會談은 1973年 8月 21日부터 實務者級에서 지금까지 進行시키고 있다.

나. 文化交流

西獨의 東方政策은 接觸을 통한 交流로서 兩獨國民이 같은 言語를 使用하면서 同一文化 遺産을 받았기 때문에 兩獨國民을 자주 接觸시켜 民族感情을 불려 일으키자는데 目的이 있는데 反하여 東獨은 같은 言語를 使用하는 民族이라 하더라도 兩獨을 政治理念 上의 차이로 戰後 30年間을 서로 다른 文化圈에 살고 있어서 兩獨間의 共同文化란 存在할 수 없다고 前提下하여 兩獨間의 文化交流란 그리 큰 的의를 갖지 못한다고 主張한다. 이러한 論理에 根拠하여 東獨은 年 2 내지 3回程度 交流를 생각하고 있으나 西獨은 훨씬 앞질러 國民學校부터 大學에 이르는 教科書를 爲始하여 書籍, 新聞, 放送 및 테레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広範圍한 交流를 願하고 있다.

이러한 西獨側의 提議는 바로 東獨內에 自由世界로 부터 自由主義 물질이 浸透해 올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細心한 注意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期待할 수 있는 分野는 아닌 것 같다.

다. 學術交流

東獨은 西獨으로부터 經濟的인 側面에서만 接觸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分野에서 技術分野에 한하여는 많은 関心과 進展을 이룩하여 活潑한 交流가 進行中이나 이데오로기와 關聯된 人文社會科學 系統에는 不誠實한 態度로 나오기 때문에 期待를 걸 수 없는 分野이다.

라. 言論人交流

西獨은 이 分野交流에 많은 関心을 가지고 幅 넓은 記者들의 往來를 推進하고 있으나 期待했던 만큼의 成果는 없다.

이 分野도 東獨側으로서는 内部의 事情을 西獨에 公開하기를 꺼려하고 또한 自由主義 思想이 導入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오늘까지 35名의 西獨記者가 東獨 特派를 希望하나 東獨은 8名만의 記者를 駐在시켜 주고 있다. 이 分野 交流에서도 當分間은 큰 期待를 걸 수 없는 實情이다.

마. 스포츠 交流問題

兩獨間의 公式的인 스포츠 交流는 1955年에 始作하여 1961年

伯林 障壁構築까지는 經濟交流 分野 다음가는 活潑한 分野이었다.

1955年 西獨 獨逸 스포츠聯盟과 東獨의 獨逸體育聯盟은 올림픽 팀에 兩獨이 單一팀을 만들자는데 合意하여 1956; 1960年 및 1968年의 올림픽에 全獨逸팀을 하나로 묶어 派遣하는데 成功하였다.

1957年에의 스포츠 交流는 1,530回數나 되었고 그 數는 무려 35,480여명에 이르는 숫자이었다. ·올림픽에 出戰할 때의 國家는 五輪旗에 黑, 주황색갈로 하고 國号는 獨逸로 하였으며, 國家는 베 토벤의 심포니 9番中의 “기쁨 아름다운 神의 榮光”으로 合意하여 出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東獨 選手와 體育關係 人士들의 西獨脫出로 東獨政府는 1958年부터는 人身去來라고 西獨政府를 非難하면서 統制를 加하기 始作했다.

이러한 東獨政府의 抑圧政策에 西獨은 東獨과의 스포츠 交流를 中斷한다고 通告하여 東獨選手團의 西獨 出入이 禁止되었었다.

1965年 마드리드에서 열린 올림픽 理事會에서 西獨이 西베르린의 스포츠를 管割토록 決定하고 東獨도 “東獨”이라는 國名으로 올림픽에 參加할 것을 決定하였다. 그後 1968年 멕시코 올림픽 이 후부터는 兩獨이 따로 出戰하게 되었다. 西獨과 東獨과의 스포츠 交流는 1966年부터 다시 始作되었으나 아주 小規模的이었고 1970年頃에는 不過 10回程度에 지나지 않았다. 멕시코 다음으로 西獨의 문헌에서 다음 올림픽 開催될 것이 確定되자 西獨은 東獨을 參加하도록 許容하는 措置를 取함과 同時에 1957年 同國 國旗에 대한 西獨內의 掲揚이 不法이었던 法을 全州政府와 合意하여

廢棄시키는 措置를 取했다.

이어 西獨 스포츠 聯盟會長 "크래켈"씨는 東獨 스포츠聯盟 會長인 이발드씨에게 書翰을 보내고 兩獨間의 스포츠交流를 보다 더 具體화 시키자고 提議하였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各種 스포츠 分野의 相互 交流
- (2) 兩獨間의 종극적인 시합을 위한 國際的 訓練 指導
- (3) 스포츠의 學文的 知識交換
- (4) 스포츠 施設 및 構造에 關한 經驗 交換
- (5) 스포츠 振興을 위한 物資 交換
- (6) 靑少年 스포츠大會 共同 主催

이러한 上記 事項 趣旨에 積極 贊同하는 反面 東獨側은 根本的인 問題를 是正해 달라고 西獨에 提議했다.

- (1) 同等權 原則의 認定과 單一代表權 拋棄
- (2) 東獨의 權威 格下 및 스포츠의 政治的 利用 禁止
- (3) 東獨 스포츠聯盟 內部事項에 對한 各種 干涉의 拋棄

西獨側은 이러한 提議에 對해 西獨政府가 實施하고 있는 政策에는 何等의 하자가 없다고 通告하고 東獨의 스포츠聯盟의 權威에 損傷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回答했다. 이에 東獨側은 이의 條件으로 다음과 같은 項을 들었다.

- (1) 單一 代表權 主張은 이미 西獨 스포츠聯盟 名칭에 나타나 있다. (例. 도위치 國內올림픽 委員會)

(2) 東獨 스포츠 聯盟을 의정상 待遇가 없고

(3) 西獨 스포츠인들이 東獨 스포츠인들의 交節을 慫慂해 왔다.

그래서 東獨側은 西獨의 6個項에 달하는 提議에 同意하지 않았다. 이러한 狀態로 時間이 흐른 뒤 西獨의 "그레겔" 스포츠聯盟委員長은 書信을 보내어 文憑에서 準備하고 있는 올림픽 施設을 視察해 줄 것을 提議하였는데 東獨이 이를 受諾하여 東獨 体育人士들이 西獨을 訪問할 機會를 가졌다.

東獨은 根本적으로 西獨이 올림픽 大會를 開催하는 것 自体를 反對해 왔으며 東獨政府가 東獨의 体育人들의 動向을 疑心하고 있는 限 當分間은 스포츠 交流가 큰 成果는 없을 것으로 안다.

바. 宗教交流

東·西獨이 各己 國家를 세우고 난 以後인 1957年까지만 해도 教會의 代表者들은 兩獨을 自由로이 往來하면서 教會活動을 展開했었다.

그러나 1957年 以後 점점 統制措置가 取해진 以後부터는 往來하는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元來 獨逸에는 獨逸 福音교회, 루터란 聯合教會 및 聯合프로테스탄트教會는 東·西獨에 걸쳐 單一性을 이룬 教派이다. 現在 獨逸에는 全体國民의 51.1%가 新教徒 44.1%가 로마 카톨릭教徒 나머지가 유대교이고 東獨은 全体國民의 80%가 新教徒이며 11%가 로마 카톨릭이고, 나머지가 유대교로 되어 있으나 共產主義 理念과 相衝되기 때문에 自然히 無神論

論의 傾向으로 흐르고 있다.

東獨의 憲法에도 宗教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形式에 不過하며 現在도 東獨內에 基督教 民主黨이 있으나 宗教的인 側面보다도 政治的인 側面に 力點을 두고 있다.

東獨은 1961年 8月 12日 西베르린 障壁 構築以後 全獨逸 福音교회 理事長 사르프씨를 反國家 行爲를 한다고 追放하였다.

그 以後부터는 東獨의 教會責任者들의 西獨教會主催 會議에서 參席을 一齊 不許하였다.

西獨에 追放된 사르프씨는 東·西獨에 동수로 된 全獨逸 福音교회 理事會 構成을 提議했으나 東獨의 無反應으로 아무런 成果가 없었다.

東獨의 憲法에는 宗教의 自由가 存在하고 있으나 事實上的 宗教의 自由가 없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사. 兩獨 分界線上的 發生時의 問題

兩獨 基本條約을 根拠로 해서 兩獨通行時에 접경에서 發生하는 交通事故 處理問題와 物品 輸送問題등의 첫會談이 1972年 11月 1日 始作해서 지금까지 會談을 進行시키고 있다. 現在는 分界地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損害 賠償問題 및 에너지 供給問題등이 議되고 있다. 이 問題도 雙方이 다 같이 理解가 一致하는 問이므로 (더 많은 進展이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아. 公害問題

公害問題에 있어서는 兩獨의 共同關心事로서 毗차간의 利害가 連結되어 있기 때문에 広範圍하고 實質的인 問題가 論議되고 있다.

이 問題에 兩側이 共同으로 關心을 가지고 있는 理由는 全獨逸에 펼쳐 있는 運河와 강물의 汚染問題, 兩獨間的 公害情報交換 및 핵 에너지 施設로 發生하는 公害問題등이 現在 論議되고 있다. 앞으로 豫想은 兩獨交流에 期待를 걸 수 있는 分野이다.

자. 保健關係 交流

兩獨間 基本條約의 精神에 따라 이 保健協定은 어느 分野보다도 順調롭고 빨리 結實을 맺게 되었다.

첫會談을 1973年 5月 23日부터 始作하여 1974年 4月 25日에는 保健協定이 締結되었다. 이 協定文에서 兩獨은 유엔傘下의 國際保健機構의 規定과 同機構의 原則에 一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協定文에서 重點을 두고 다룬 問題는 医薬品の 송부를 비롯한 方法과 特殊病 患者에 대한 交流治療問題, 유행병에 대한 事前情報交換, 그리고 旅行者의 病發生時에 治療問題와 治療費 支払問題를 詳細히 다루고 있다.

차. 通信關係 交流

兩獨間的 通信交流는 分断初期인 1945년부터 1961년까지 部

分的이고 變則的으로 交流가 行해졌었으나 베르린 방벽 構築以後 모든 交流가 中斷되었던 것처럼 이 分野도 一時 中斷되었었다. 東獨은 東베르린과 라이프찌히등에 郵便物 統制所를 두고 西獨으로부터의 送金 및 商品價值가 있는 物件의 通関을 一切 禁止시켰다.

西獨은 數次 抗議했으나 東獨側의 無反應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後에 正式協商時(1969年)에 抗議 黨書를 보낸 바도 있다.

1967年 8月 23日 東獨의 "술레" 逓信長官은 西獨의 逓信相 프링기와 西베르린市 議會議員 슈판겐베르트에게 각각 書信을 보내어 兩獨間에 새로운 逓信交流協商을 提議했다. 이에 西獨이 應해서 兩獨間의 交流問題를 第3國이 아닌 國內郵便問題로 看做하자는 西獨側 主張에 東獨은 이를 第3國과의 逓信 交流로 하자고 말했다.

이 會談에서 西獨이 主張한 國內間 逓信交流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次元에서 協商을 提起하여 1970年 4月 29日 部分的인 妥結을 보았다. 이어 1971年 9月 30日 全文 9條, 附則 7條에 達하는 逓信交流協商이 兩獨間에 締結되었다.

그後 兩獨基本條約이 締結되기 前인 1972年 12月 17日에는 더욱 幅넓은 交流를 爲한 實務者級 會談을 開催하여 1974年 2月까지에는 무려 9次에 걸친 會談을 進行하였다. 이 基本條約을 根拠로 開催된 逓信交流에 關한 問題를 다른 어느 分野보다 順調로운 合意를 하여 1974年末까지는 自動電話架設을 目標로 내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進展이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맺 는 말

앞서 여러차례에 걸쳐 슈미트 首相의 條約政策을 說明했듯이 어떠한 方法으로서 이미 東歐諸國과 締結한 獨·蘇條約 獨·巴條約, 그리고 東獨과 締結한 基本條約등을 誠實히 遂行해 나갈 것 인지도 두고 보아야 할 課題이다.

그러나 誠實히 履行하는데 첫 難關은 이 締結된 條約들이 西方3個國과 蘇聯과의 條約 解釈差異 및 東·西獨間에 締結한 基本條約의 解釈差異가 있기 때문에 쉬운 問題는 아닐 것이다.

브란트 首相 時節에는 어려운 問題가 提起될 때는 經濟援助 라는 方式으로 돌파구를 찾았으나 슈미트 首相은 東獨側이 要求 하는 經濟援助가 西獨側에 지나친 負擔을 주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西獨의 經濟援助도 限界가 있다는 것을 暗示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東·西獨間的 緊張緩和은 브란트時代처럼 劃期的인 事件 이나 進展을 期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13. 東·西獨과 韓半島 狀況比較

第2次 世界大戰의 副產物로 생겨난 分斷國들의 形態와 問題는 서로 엇비슷하면서도 相當한 差異點을 나타내는 것은 아마도 지경학적인 面과 經濟的인 面 그리고 그 分斷國들의 國民性을 포함한 그들이 겪었던 歷史의 발자취에 의해서 다르게 부상되는 것이다.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獨逸의 分斷은 世界의 指導者들이 根本的으로 獨逸이라는 말생많은 國家를 永遠히 이 地球上에서 末殺시켜 버리려는 意圖下에서 斷行되었으나 韓國의 分判은 單純히 末端 軍事關係者들이 아세아에 있는 日本軍의 過大評價에서 빛은 所産이 今日的 韓民族 不幸을 안겨다 준 것이다. 이러한 分斷은 暫定的인 것으로 判斷하였으나 蘇聯이 世界 共產化를 앞세워 南下 政策을 敢行하기 때문에 “帝國”主義의 旗手인 美國의 牽制政策과 世界 到處에서 衝突함으로써 이 分斷된 地域들이 兩 勢力間 紛爭의 전초지로 變해 갔었다. 兩勢力들은 各己 自己 占領 地域內에서 自己 陣營의 힘을 強化하기 위한 方法으로 戰術隊를 組織하였고 또한 占領地域의 人的 및 資源을 動員하게 되었다. 이 結果가 바로 自己 陣營과 깊은 關係를 맺은 分斷國家를 建設하게 된 것이다. 獨逸에서의 兩獨 建設은 兩勢力에 絶對的인 利用價值가 있다 하겠으나 韓國의 경우는 絶對的인 價值가 兩勢力에 미칠 影響은 限界를 갖게 하고 있다. 다만 共產陣營은 韓半島에서의 美國보다는 더 많은 利用價值가 있다는 것은 國境을 접해 있고

太平洋으로의 새 진출을 위한 해양勢力을 伸張시키는 데, 必要할 뿐 아니라 衛星國으로서의 重要한 價值가 있다는 것은 歷史가 証明하는 바이다. 이러한 根拠는 西方勢力을 代表한 美國이 獨逸內에서는 共產世界의 宗主國인 蘇聯을 經濟 및 軍事的인 面에서 (마셜플랜·나토) 압도하고 있고도 美國의 強力한 國力을 動員하여 완벽하고 持續적으로 防禦하고 있으나 韓國의 경우는 美國의 부수적인 利用價值 때문에 共產陣營에 의한 南侵을 敢行하게 하므로서 美國을 實驗해 보았다고 하겠다.

美國이 歐羅巴에서 美國의 利益이 절대로 重要하게 나타낸 것은 이러한 蘇聯의 世界 赤化 움직임을 체크하기 위해 1947年 투르만 닥트린을 發表하여 美國의 政策을 蘇聯으로 하여금 周知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투르만 닥트린에 의해 美國은 마셜經濟復興 計劃을 만들게 되었고 軍事的으로는 나토를 創設하게 되었다.

그러나 極東에서는 南韓이 美國의 防衛 내지 經濟的인 價值가 부수적인 것이라고 하여 1947年 韓國政府 樹立後 美軍을 撤収시키기 始作하여 韓國戰 勃發前에는 極小數의 顧問團과 極히 限定된 輕무기만을 援助하였었다. 이러한 消極的인 美國의 態度 때문에 항상 北韓이 南韓에 대한 挑發과 南侵을 할 수 있다는 論理가 成立될 수 있을 것이고 南北間의 關係正常化도 이러한 理由로 因해서 別 成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韓半島에서의 태평트가 항상 變할 수 있는 所在가 狀況에 따라 變할 수 있다는 것이며 美·蘇의 壓力이 強하게 作用을 할 必要性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이 特色이다. 더구나 韓半島는 歴史的으로 美·蘇 以外에 中共과 日本도 絶對的인 國家 利益이 항상 常存하는 곳이며 美·蘇의 影響力만으로는 解決할 수 없는 獨逸問題와 다른 것이다. 한편 歐羅巴에서 獨逸과 仏蘭西 및 英國과의 關係는 緊密하고 重要하나 美國의 絶對的인 利益에 밀려 美國의 그늘 밑에서 強力한 發言權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다.

韓國戰爭 發生時 美國은 유엔의 이름을 빌려 參戰했었고 蘇聯은 美國과 直接的인 衝突을 回避하기 위해 中共의 義勇군을 派遣해서 戰爭을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現在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은 蘇聯 보다는 中共이라고 보는 것이 妥當하겠다. 이러한 結論은 닉슨의 中共, 蘇聯 訪問때에 上海 共同聲明書에는 韓半島 問題가 두렵이 擧論되었으나 모스크바 共同聲明에서는 韓半島 問題가 具體的으로 擧論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엇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970年때부터는 中共의 유엔 進出과 더불어 中共의 積極 外交 結果로 第2次大戰 以後 世界政治를 美·蘇 主導下에 이끌어 왔었으나 中共의 登場과 더불어 2極 체제 代身 3極체제가 登場하여 美·蘇에 壓力을 加하게 되었다. 第2次大戰後 韓半島에서 의 影響力은 美·蘇였었으나 韓國戰爭에 中共이 參與하였고 지정학 적인 面 때문에 자연 韓半島 影響力을 크게 行使하는 國家는 美國과 中共으로 되었다. 허나 美國도 韓半島 問題를 닉슨 닥트린 에 適用시켜 이 地域에서 漸次的으로 손을 떼고 대신 日本으로 하여금 美國의 代理役割을 担当케 할 것으로 豫想된다.

經濟的인 價值로서의 獨逸은 兩大勢力이 至大한 利害關係가 있으며 獨逸의 人的資源과 더불어 地下資源도 美·蘇에 各己 큰 役割을 担当하게끔 되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의 獨逸 經濟力을 自然히 世界에 미치는 影響力이 增大해지고 發言權도 增大해 가는 것이다.

東·西獨의 經濟發展이 規模로 보아서 큰 差異가 있으나 領土와 人口數를 比較하면 큰 差異點이 없다는 것을 觀察해야 할 것이다. 西獨은 自由陣營內에서 美國 다음가는 經濟大國으로 發展하였을 뿐 아니라 東獨 역시 共產世界에서 蘇聯 다음 가는 經濟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經濟力을 뒷받침해서 兩獨逸은 自體內의 軍事體制에 美·蘇에 다음가는 莫強한 兵力數와 軍備를 負擔하고 있다.

그러나 韓半島에서 南北韓은 純粹한 經濟自立은 도저히 不可能한 것이다. 즉, 分斷當時 南韓은 원래 資源의 貧困때문에 自然히 農業에 置重하게 되었고 北韓은 山間地域이 大部分이라 地下資源이 豊富하여 自然히 工業地帶로서의 條件이 좋아서 重工業에 置重 發展하였다. 그 結果 分斷된 南北韓은 經濟的으로 偏向된 形態로 되었으나 南韓에는 1960年代부터 工業 優先 政策을 採択하여 劃期的인 成長을 가져와서 年平均 經濟成長率을 11%에 이르렀고 1974年度 國民總生産量은 172億弗로 推計되었다.

反面 北韓은 閉鎖經濟體制이며 韓國戰爭으로 焦土화된 國土위에 工業部分에 重點을 두면서 農業部分에도 重點을 두는 二重經濟體制

를 採択하여 國民總生産高를 48 億弗로서 個人當 國民所得은 313 弗로서 南韓의 513 弗과는 큰 差異를 나타내는 것이다.

獨逸에서 兩獨軍事 關係를 보면 人口 領土 및 國力에 比較的 正比例하는 편이다.

그러나 兩獨 防衛의 主軸이 兩獨의 軍隊가 아니라 美·蘇의 核 武裝 아래 있고 東·西獨은 彼此 侵略이라는 威脅에서 超然한 立場에 놓여 있다. 이것 또한 兩大勢力의 利益이 國家 運命을 결 算을 만큼 重要하기 때문이다. 西獨은 核武器를 除外한 모든 裝 備를 갖춘 莫強한 軍隊를(46 萬 8 千 國境警備隊 包含) 가졌고 東獨도 核武器를 除外하고는 잘 訓練된 莫強한 軍隊를(17 萬 2 千 國境警備 隊 包含) 維持 시키고 있으나 이들은 모든 各己 나토와 바르샤 바의 隸屬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비해 韓半島는 歷史上 有例없 는 軍隊 密集地域으로서 항상 危險이 常存할 수 밖에 없다.

休戰協定으로 인해 銃聲을 멈추고 있으나 韓半島 情勢는 可變的 인 것으로서 準戰爭狀態를 지금껏 維持하고 있다. 그 理由는 日 本을 除外한 第3 勢力이 各己 体制와 防衛條約을 맺고 있고 軍備 援助를 하고 있다. 南韓은 現在 60 萬 大軍과 駐韓 유엔軍 傘下 의 美軍 4 萬의 兵力으로 休戰線을 방비하고 北韓은 46 萬에 達 하는 軍隊를 가지고 항상 武力에 의한 “南韓의 人民解放”을 政 策目標로 삼고 있다.

東·西獨은 各己 바르샤바군의 東獨 駐屯費의 一部와 나토軍의 西獨 駐屯費 一部를 負擔하기 때문에 莫大한 軍事費를 支出하고

있는 것이다.

西獨의 경우 1970年の國防費 支出은 61億8千8百萬 달러로 1人當 國防費 支出은 約1百16 달러이다. 韓半島의 경우는 總國民生産의 4.2%에 該當하는 軍事費와 美國의 軍事援助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北韓의 경우는 体制의 單一化 때문에 南韓에 比해 엄청난 軍事費를 支出하고 있어서 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고 있는 重要한 原因이다. 1970年以後 總國民生産의 13.9%를 軍事費에 充當하고 있다.

여기에 國民의 政治 水準을 比較해 보면 西獨은 G.N.P가 最上位 구름에 속해 있으므로 教育 水準 또한 이것에 比例하여 最上級에 있을 것이며 韓半島의 경우는 開發途上國이므로 이 水準을 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西獨 國民은 東獨 共產主義 宣傳攻勢에 超然할 것이고 東獨 또한 社會主義 体制이나 西歐的인 共產主義이기 때문에 北韓과는 큰 差異點을 보이며 韓半島의 경우는 共產主義의 宣傳에 眩惑될 危險이 있다. 以上과 같은 狀況과 條件이 서로 다르므로 여기에 適用할 統一政策 역시 다르지 않을까 한다. 東·西獨은 國力의 差異가 顯著하기 때문에 戰後 繼續해서 部分的인 經濟交流를 통한 對話가 있었으나 韓半島에서는 韓國戰爭以後 南·北韓의 直接 對話는 1970年까지 完全 杜絶되었었다. 東·西獨은 部分的이고 소폭적이거나 모든 分野에 걸쳐 對話의 窓口를 열어 두고 繼續해 오던중 美·蘇의 德팡트가 絶對히 要望되던 1960年末부터 本格的인 對話를 始作했던 것이다.

歐羅巴에서 兩陣營과 兩獨에 걸쳐 紛爭의 核인 西베르린 問題가 美·蘇間에 合意함으로써 東·西獨에 壓力을 加하는 要因이 되었다. 韓半島에서도 世界의 緊張緩和 潮流를 타고 分斷民族의 苦痛을 解決하기 위하여 非政治 團體인 赤十字會談을 1970年 始作하여 지금까지 繼續하고 있으나 北韓側의 一方的인 主張으로 이렇다 할 進展은 없었고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看做된다. 이 會談에 이어 1972年에는 7.4 共同聲明에 의해 南北韓의 政治會談이 始作되어 5個 項目에 걸친 交流를 實踐에 옮기자고 合意하였으나 지금껏 아무런 進展 事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獨逸에서는 西獨은 먼 훗날에라도 統一을 地上目標로 삼고 있으나 東獨은 社會主義 國家國民과 西獨資本主義 國家國民과는 統一을 論議조차 할 수 없다고 하여 2民族 2國家論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比해 南北韓은 統一이라는 것이 民族의 念願이며 子孫萬代를 위한 雙方政策으로 採択하고 있다. 反面 北韓도 統一이라는 目標은 같으나 民族의 主体性만을 앞세워 實現 不可能한 提議를 거듭해 오고 있어서 劃期的인 周辺情勢의 變化없이 南北韓 對話마저도 繼續될지 疑問이다.

여기서 附言하고 싶은 것은 30餘年 동안 異質體制內에서 살아 온 國民들의 政治 觀念부터 새로이 定立하는 것이 優先 目標일 것이다. 南北韓의 差異點을 들자면 南韓은 統一以前에 相互 信賴 增大로서 統一의 價值觀을 定立한 뒤에 漸進的으로 戰爭없는 統一을 基本政策으로 採択한 反面 北韓은 即刻的인 統一을 이룩하자

것이 그들의 基本立場일진대 이것은 아마도 南韓의 國民들이 北韓 政權을 尊敬하고 共產主義 이데오로기와 金日成의 個人 崇拜를 받아 들이는 것으로 判斷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南北韓 對話를 통한 平和的 統一을 위해서는 雙方이 다 같이 平和 共存 原則을 認識하고 相對方에게 自己便의 意思를 強制로 받아달라는 役지를 主張하는 것은 相對方에게 항복을 要求한다는 것을 認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 對話를 할 것 같으면 소위 以北에서 말하는 “美帝國主義 앞잡이 X X X X로 黨을 몰아내고 南半部 人民 解放”을 完遂하겠다는 式의 煽動的인 인사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만 7.4 共同聲明에 明示된 5個項을 우선 實現하고 차츰 將來에라도 統一을 할 수 있다는 希望을 兩側 國民에게 周知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急先務이다.

南北韓과 東西獨間的 差異點 比較

1. 背景

韓半島 (南北韓)

獨逸 (東·西獨)

<p>植民地로부터 聯合國支配下로 第2次 世界大戰中 포츠담과 알 타會談에 依해서 日本植民地로 부터 聯合國의 支配下로 들어감.</p>	<p>獨逸帝國에서 聯合國支配下로 히틀러가 저질러 놓은 戰爭때 문에 敗戰國으로서 聯合國 支 配下로 들어감.</p>
<p>狀況判斷 오류로 因한 分斷 國防省 情報關係者들이 極東에 잘 訓練된 日本軍 10 個師團 以上이 있다는 情報에 의해 軍事作戰上 38 度線을 中心으로 以北은 蘇聯軍이, 以南은 美軍 이 平定할것을 蘇聯側에 提議 함으로서 합의.</p>	<p>獨逸恐怖症 除去를 爲한 分斷 비스마르크 以來로 獨逸의 팽창 주의로 말미암아 隣接國들에게 不信感을 주었고 2次에 걸친 世界大戰의 責任을 물어 獨逸의 힘을 完全히 除去시킬려는 것이 世界 指導者들의 見解였음.</p>

2. 外的 与 件

<p>地政学的인 与 件的 独逸보다有利</p> <p>周边의 強大國들과 競争이 될 만큼 強大國으로서의 成長이 不可能함.</p>	<p>韓半島 問題보다 地政学的으로 不利</p> <p>勝戰 強大國들과 當당한 強大國으로서의 競争的 立場이 있고 유럽의 中心地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強大國들의 시기 對象임.</p>
<p>베르린과 같은 複雜미묘한 与 件存在 없음</p> <p>38 度線을 境界로 해서 領土가 分明히 갈라졌기 때문에 西베르린과 같은 共產世界속의 의 탄생같은 地域存在하지 않음.</p>	<p>베르린問題, 東·西獨 및 西邦과 東歐間에 紛爭의 핵으로 存在</p> <p>第2次世界大戰으로 因하여 4 大國이 分轄占領하고 있으나 이곳이 東獨의 領土乃至 位置해 있어서 東獨은 항상 西獨과 西베르린 關係를 트집잡아 冷戰의 매개체로 삼고 있음.</p>

<p><u>冷戰에 依한 分斷固定化</u></p> <p>1947年 美·蘇 共同委員會 第2次會談을 결렬로 因해 38 度線을 境界로 兩側 서로 自 派勢力 扶植코 反對勢力 牽制 始作.</p>	<p><u>分斷固定 確實해 집</u></p> <p>4個共同管理 委員會의 西邦側 3個國은 1947年 蘇聯과는 戰後問題를 處理할 수 없다고 宣言함으로서 軍事 分界선이 國境線化 되었음.</p>
<p><u>韓半島 美國의 極東防衛線에서 第2次的인 부수지역</u></p> <p>美國의 國務長官 애치슨이 美 國防衛線을 宣言할때 韓半島를 除外함으로서 蘇聯의 世界共產 化運動에 高무적인 對象地域이 됨.</p>	<p><u>트르만 닥트린과 마샬플랜</u></p> <p>蘇聯이 東歐유럽을 赤化 시켜 위성국으로 만들고 繼續해서 희랍과 터키까지 손을 뻗히려 하자 구라파에서 威脅을 느낀 美國이 트르만 닥트린을 宣言 하고 美國의 絶對的인 利益이 存在한다는 것을 表示키 위하 여 集團防衛體制인 나토創設과 經濟富興政策인 마샬플랜을 宣 布해서 蘇聯과 맞설것을 宣言 함.</p>

限界性 있는 共産勢力 牽制地域

北韓이 南韓에 對한 武力侵攻을 했을때 美國은 韓國戰爭介入을 놓고 慎重을 기했으며 北韓의 도발에 小極的인 牽制政策인 38 度線 高수政策 때문에 中共이 介入해서 거의 원상상태로만 환원시켜 美國의 政策에 限界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음.

西邦側의 強力한 政策에 蘇聯

側 西歐進出 限界를 느낌

나토와 마샬플랜에 의해서 유럽에 安定을 가져오자 蘇聯은 西歐와 關係改善 모색으로 유럽 安保會議와 獨逸中立案 提出함.

集團防衛勢力 欠如

南韓은 休戰協定을 反對하고 北韓을 平定해서 統一을 達成코자 주도했으나 美國의 限界性 때문에 묵시적인 休戰協定을 承認하였다. 그 代價로서 美國은 韓國과 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하였으나 그것 역시 政治的인 케스추어이지 實質的으로 防衛에 義務感을 가지고 있는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北韓도 中共과 蘇聯으로

나토와 바르샤바 條約機構

유럽에서는 美國을 中心으로한 16 個國家가 합쳐서 나토를 創設하며 蘇聯의 赤化 움직임을 集團的으로 저지하는 巨大한 機構가 있으며 共産側은 여기에 對抗해서 東獨을 포함한 共産國家들로서 바르샤바條約機構가 있다.

<p>부터 領土가 侵略當했을때 防衛해준다는 保障을 받고 있다.</p>	
<p>韓半島는 周邊의 4 強國의 利害關係가 複雜하게 얽혀있는곳</p> <p>韓半島는 地型的으로 海洋勢力과 大陸勢力間에 교차되는 地域으로서 歷史적으로 中國의 勢力權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近世에 와서는 日本의 大陸進出에 발판 역할을 했으며 여기에 美國의 海洋勢力 進出과 蘇聯의 南下政策 目標地域으로서 이들 4 강의 틈바구니에서 주체성을 잃은지 오래된다.</p>	<p>美·蘇의 絶對的인 利害關係로 他強國들 發言權 未弱</p> <p>豐富한 地下資源과 地理的인 條件이 좋은 獨逸은 國民性 또한 進就的이라 海洋勢力으로서는 植民地 政策에 늦었었지만 2 번에 걸친 世界大戰을 挑發했던 것으로 보아서 世界의 最強大國들 대열에 競争的 立場에 놓여 있기 때문에 統一을 許容치 않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英國과 프랑스도 많은 利害關係가 있으나 美國의 이익에 밀려 發言權이 相對的으로 쇠약해지고 있다.</p>

中共과 日本 韓半島問題에 影
響力 增大

美国과 中共과의 關係正常화가 이루어지고 上海共同声明에서 美·中共 두나라 韓半島 問題에 関心 표명과 더불어 두 國家는 韓半島에서 戰爭을 했기 때문에 自然 發言權이 강화되었다. 더구나 2極 體制 대신 3極 體制가 登場함으로서 中共의 立場이 強化된데다가 美国의 닉슨 닥트린으로 韓半島에서 日本으로 하여금 美国의 代理 役割을 맡게하고 美国은 第2 線에 머물것이 豫想된다.

닉슨 닥트린 適用 試驗 地域

美国對外 政策修正에 따라 美国의 絶對的 國家利益이 없는 地域에서는 漸次的으로 美国의 介入을 縮少시키면서 他 強大國

英國, 프랑스, 獨逸에 對한 發
言權 쇠퇴의 경향

유럽에서 蘇聯을 牽制할 힘을 가진 國家는 美国밖에 없으며 英, 仏 두나라는 美国의 保護 아래 있기 때문에 自然 獨逸問題의 主導權이 美·蘇 國家에 屬하였다. 더구나 西獨의 經濟富興을 볼 때 強大國으로서의 潛在力이 있고 英, 仏 두 國家는 獨逸이 蘇聯勢力을 막는데 先頭기로서 價値만을 重要視 여기고 西獨의 強大國으로서의 位置는 不明確히 여겨지고 있다.

美国 介入 絶對적으로 相存하는 곳

獨逸은 美国의 國力象徵과 蘇聯으로 하여금 美国 힘을 과시하는 곳이며 美国의 絶對的인 利害關係가 있는 地域으로

<p>들과 紛爭을 誘發할 수 있는 要素를 除去하면서 平和共存을 하겠다는 너슨닥트린에 따라 韓國에서도 漸次 介入을 縮少 시킬려는 것이 美國의 意圖일 것임.</p>	<p>서 너슨 닥트린 適用地域에서 除外된 곳이다.</p>
<p>4 強韓半島 統一 暫定的 보류상태 韓半島 問題에 美·蘇外에 中 共과 日本도 甚大한 利害關係 가 얽혀 있어서 眞정 統一問 題를 拳論하게 되면 現在의 休戰狀態에 變化가 올 것이며 이런 現象은 戰爭을 다시 유 발할 危險이 있기 때문에 이 들 關係國들은 統一보다는 現 象維持만을 바라고 現在에 데 땅트 바탕위에서 問題를 解決 할려는 의도인것 같다.</p>	<p>強大國들 競爭國 더 바라지 않음 歷史적인 面과 現在狀態로 보 아서 유럽 大陸에 獨逸이 統 一國家가 될때에는 英國과 仏蘭 西는 勿論 美·蘇도 威脅적인 存在가 되므로 獨逸의 統一을 바라지 않은것은 西邦과 共產 世界의 共通된 意思이다.</p>

<p>北韓의 宣傳場으로 變換 停戰 休戰委員會議</p> <p>韓國戰爭以後 제네바에서 政治 會談을 가진 바 있으나 아무 成果가 없었고 休戰停戰委만이 韓半島의 國際法인 對話場所로 北韓의 宣傳場化된 느낌이다.</p>	<p>유럽 安保會議과 相互 減軍會議</p> <p>1961年 美·蘇의 정상들이 빈에서 회동하고 平和共存을 認識한 뒤부터 現象固定 바탕위 에 關係 正常化를 圖謀하기 위해서 상설기구로서 存在하 나 지금까지는 緊張緩和外에 具 體的인 事項에는 合意點이 없다.</p>
--	---

3. 內的인 与件

<p>強大國으로서의 條件欠如</p> <p>韓半島는 人口 및 領土의 넓 이나 地政學的인 面에서 全 世界水準에 比較할때는 결코 약소國가는 아니나 周邊 關係 國들이 워낙 最強大國들이라 自然히 약소國가로 戰略되었다.</p>	<p>最強大國으로서의 位置 이미確保</p> <p>現在分斷된 西獨도 世界열강으 로 막강한 國力을 지녔으며 東獨또한 全世界에서 第9位에 該當하는 國力을 가졌으므로 만일 統一된 獨逸을 가상할때 에 獨逸의 國力은 가히 짐작 할만한 것이다.</p>
---	--

<p><u>冷戰의 부수적인 價置</u></p> <p>韓國動亂 以前에는 美國의 양보로 인해 共産黨의 侵略을 받았고 美國은 어쩔수 없이 介入은 하였으나 絶對的인 利益은 부수적인 利用價置로 漸次 介入을 줄일 것이고 中共과 日本의 介入增大로 現象固定을 目標로 할 것 같다.</p>	<p><u>冷戰의 전초기지</u></p> <p>美·蘇 兩勢力의 國家利益이 衝突하는 地域으로서 雙方서로 큰 양보를 期待할 수 없을뿐 아니라 더 많은 利益을 追求할 수도 없다는 것을 서로 理解하기 때문에 現狀態에서 緊張緩和를 摸索하고 있으므로 軍事均衡 또한 平衡을 이루고 있다.</p>
<p><u>두개의 政治機構 誕生</u></p> <p>美·蘇共同管理委員會 第2次 會談을 끝으로 자기 자기 領域內에 各己 兩勢力의 이데오로기에 맞는 政府樹立을 하였음.</p>	<p><u>모건소 計劃에 이데오로기 편승</u></p> <p>獨逸의 힘을 弱화시키기 위해 第2次世界大戰中 強大國指導者들이 獨逸을 完全 分斷할 것을 合意하고 大戰以後는 冷戰의 結果로 因해 分斷된 獨逸에 이데오로기를 適用시켜 物理的인 分斷위에 理念的인 分裂까지 하게 되었음.</p>

<p><u>經濟的 地位 極히 微弱</u></p> <p>韓國은 資源의 貧困 때문에 強 大國들의 經濟的 利用 價值는 거의 없고 다만 軍事的으로 海洋勢力은 大陸으로 大陸勢力 은 反對로 海洋으로의 進出할 수 있는 條件밖에 없는 것으 로 되어 있다. 南北이 統一 된다면 어느정도 自立할 수 있겠으나 分斷된 韓半島는 外 貨에 依存치 않고는 經濟的인 自立이 不可能한 처지임.</p>	<p><u>經濟 大國</u></p> <p>獨逸은 分斷되어 있으면서도 西獨은 美國다음가는 西方經濟 大國이고 東獨역시 蘇聯 다음 가는 共產世界의 經濟 大國임</p>
<p><u>韓半島 問題에 窮極的인 決定 權 4 大強國에 있음.</u></p> <p>周邊強大國들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진 國家들이기 때문에 韓半島의 南北韓은 自然 發言 權에 限界를 가질 수 밖에 없음.</p>	<p><u>統一問題自体는 어려우나 分斷 狀態에서는 獨逸問題에 兩獨이 絶對的인 發言權 確保</u></p> <p>窮極的인 統一問題만은 兩大勢 力에서 反對하고 있으나 東· 西獨이 經濟的인 大國이 되었 기때문에 自然 發言權이 增大 될 수 밖에 없음.</p>

經濟自立의 問題點

經濟적으로 貧困한데다가 美國의 第2防禦線에 들어갔기 때문에 美國의 絶對的인 經濟援助는 바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北韓은 中共과 방대한 國境을 接하고 있기 때문에 援助를 해서라도 中共의 支配下에 두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中共의 經濟力이 美·蘇와는 대조가 되지 않으며 完全한 經濟富國으로서 될 가망성은 極히 어렵다.

만약 韓半島가 美國의 軍事的인 價值에 絶對로 必要한것 같으면 經濟的인 復興도 따라서 될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南韓의 立場임.

마살플랜과 라인강의 기적

蘇聯의 赤化政策을 牽制하는 美國은 첫째 軍事的인 價值가 絶對的으로 있는 地域이기에 이 軍事的인 價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經濟的인 援助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獨逸또한 地下資源의 豊富함과 함께 高度로 發達된 人적資源이 經濟復興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力을 가진 國家였다.

北에서 南으로 人口移動

北韓의 南侵 以前에는 많은 人口가 北에서 以南으로 共產

東에서 西로 移動한 人적資源

第2次大戰後 經濟復興시절에 東獨의 高度로 訓練된 勞動力

主義의 학정을 피해 500 만을 넘는 人口가 남하해 왔지마는 南韓으로서는 經濟的인 큰 負擔을 안겨다 준 것이다. 勿論 北韓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極小數이지 엑스도스는 아니다.

은 西獨의 經濟復興에 큰 役割을 하였다. 東獨은 이러한 人口移動이 政治的인 衝擊도 있었지만은 經濟的인 損失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 西獨은 東獨의 인적기술 유입이 마셜플랜에 의한 利益보다 더 컸다고 함.

後進國에서 共產主義 宣傳攻勢

解放과 더불어 절제없는 自由主義 思想의 導入으로 共產主義는 屢박을 받았던 韓國民들에게 상당히 아필되었으며 南韓에서는 韓國戰爭 以前에는 共産黨의 機構인 南勞黨이 모든 市民層에 波及되어 그들의 宣傳攻勢에 공감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뜻에 동조하였다. 허나 北韓의 南侵以後 그들의 학정을 經驗한 南韓住民들은 그들의 行動에 懷疑를 갖게 되어서 南韓에서의 反共

기독교思想에 影響받은 보수주

의적인 獨逸國民
獨逸國民은 元來 國民의 90%以上이 기독교 思想에 影響을 받아서 社會變革을 가져오는 共產主義思想에 同助를 하지 않고 物質的으로 豊饒하기 때문에 대다수 國民이 社會主義 政府를 바라지 않은 것이다. 그 한例로 東獨에서 西獨으로 많은 人口가 移動했고 障壁을 構築한 뒤에도 生死를 건 脫出을 기도하는것을 보면 짐작할수 있는것임.

思想은 相當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貧·富의 격차가 심해질수록 共產主義에 동경을 갖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임.

理論的인 反共精神 低水準

韓半島는 기독교 文明國家도 아니고 항상 壓迫받았던 民族의 歷史性으로 보아서 解放後의 教育水準으로서는 共產主義에 매력을 느낄수 있었던 地域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南侵때 共產主義치하에서 共產主義 체험을 하였던 國民들의 大部分은 反共意識이 強함.

精神的인 反共主義國家

歷史的으로 기독교 國家였기 때문에 완고한 보수주의 國民性을 가졌고 프러시아적인 낭만주의 思想을 가진 國民이며 豊富한 物質資源의 혜택을 받아 共產主義에 끌리는 國民은 아님.

世界에서 제일많은 軍人密集地域

155 마일의 休戰線을 두고 일백만이 넘는 軍人이 서로 대치

나토와 바르샤바

西邦側은 나토를 中心으로하고 東歐側은 바르샤바를 中추로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戰爭危險性 相存을 意味하며 따라서 德땅트에 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 地域임.

하며 서로 相對方에 대한 牽制勢力으로 存屬시키고 있다. 이것은 軍事的인 面보다는 政治的인 次元에서 駐屯하고 있다고 보아야겠음.

南韓에 外軍駐屯은 戰爭抑制用
北韓이 南韓에 駐屯한 유엔군 및 美軍의 撤収를 強力히 主張하나 이것은 侵略보다는 北韓의 도발을 牽制하는 役割을 担当하고 있음.

外軍駐屯을 国力의 상징
美軍과 蘇聯군의 獨逸內 駐屯은 兩國의 国力의 상징으로서 戰爭抑制作用을 하고 있으며 兩側의 減軍이나 撤収는 相互 合意下에서만 可能할 것이다.

開發途上國

韓半島는 經濟的으로 저개발국에 屬해 있다. 南韓은 60年代부터 經濟開發 政策을 採択해서 年 11% 이상의 經濟成長을 보이고 있으며 以北은 4~5%의 經濟成長 速度를 보이고 있다

世界最高의 工業國

西獨은 西邦世界에서 美國 다음가는 부국이고 東獨도 역시 東歐圈에서는 蘇聯다음가는 경제 대국으로 발달되었음.

지.엔.피는南韓이 513 \$이며
北韓이 313 \$로 되어 있음.

最終目標은 統一

南北韓이 統一에 對한 念願은
表面上으로 같으나 政策實現過
程에서는 큰 차이점이 있다.
南韓은 30여년 동안의 긴
세월을 분단해서 살았기 때문
에 피차에 가졌던 차이점을
먼저 해소하고 漸進的인 統一
을 이룩하였고 北韓은 即刻的
인 統一을 하자는데에서 큰
차이점이 보임.

2民族2國家觀과 1民族2國家觀

西獨은 統一이라는 基本目標아
래 西獨建立當時부터 이 計劃
을 만들어 憲法이라는 이름대
신 基本法이라는 것을 만들었
고 西獨의 經濟力을 利用하여
東獨에 接近하고 있다. 그러
나 東獨은 西獨이 東獨을 國
際法上的의 國家로 認定해달라고
꾸준히 努力해오고 있다. 허
나 東獨은 2民族2國家論으로
西獨의 1民族2國家論을 反對
하나 東·西獨 基本條約으로
뚜렷한 명문제시는 없을지언정
피차의 主張이 包含되어 結실
을 보게 되었음.

<p><u>韓半島 外軍駐屯費 支払不可能</u></p> <p>南韓은 유엔軍 및 美軍의 駐屯을 強力히 要求하고 있으나 西獨과 같이 駐屯費를 一部나마 負擔할 經濟力이 없고 北韓도 또한 不可能할 것임.</p>	<p><u>外軍駐屯 支払費可能</u></p> <p>東·西獨은 自己領域에 駐屯하는 나토와 바르샤바軍의 駐屯費를 一部나마 支拂하고 있어서 兩側이 駐屯하는데 큰 浬分을 提供하고 있다.</p>
--	---

統一止揚問題

<p><u>民族概念과 國家觀</u></p> <p>南北韓이 民族概念과 統一에 對한 熱望은 비슷하겠으나 北韓의 民族概念은 社會主義 思想을 바탕으로한 個人崇拜主義를 混合한 것으로서 南韓의 民族主義 概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國家觀도 南韓은 自由民主主義를 採択하고 있으나 北韓은 社會主義를 바탕으로한 金日成思想에 의한 統一 國家를 願하고 있음.</p>	<p><u>民族概念과 國家觀</u></p> <p>西獨의 自由民主主義와 相反되 는 수정社會주의 政策으로서 西獨의 一民族 概念에 冷淡한 反應을 보이고 社會主義 民族 아닌 西獨國民과는 同一民族이 아니라고 主張하고 있음.</p>
---	---

<p><u>統一概念 점점 회박해질 우려</u></p> <p>6.25 動亂을 經驗한 世代들은 統一韓國의 未來에 關心과 熱望을 가지고 있으나 戰後世代들은 統一에 對해서 實現性이 없다는 理由 때문에 뚜렷한 目的意識이 결여되어 있음.</p>	<p><u>統一에 對한 希望 퇴조</u></p> <p>30 여년 동안을 격리되어 살았고 서로 헤어진 家族들의 死亡이 늘어남에 따라 獨逸國民들의 統一觀念도 회박해졌다고 한다. 특히 西獨의 경우는 物質文明의 혜택에 影響을 받아 굳이 統一을 바랄것이 무엇이냐하는 것이 戰後世代들의 見解라고 함.</p>
<p><u>韓半島 統一에의 主導權問題</u></p> <p>南北韓이 統一問題를 다루는데 이니셔티브를 잡으려고 競爭하고 있으나 根本的인 問題의 解決을 가져다준 過程에서는 美國과 中共의 政策바탕 範圍內에서 統一方案을 모색할 것으로 豫想됨.</p>	<p><u>이니셔티브는 兩獨逸에</u></p> <p>美·蘇兩國 및 強大國들이 獨逸의 統一은 世界平和에 기여하여야 되는 同時에 兩獨逸에 損害가 없어야 한다고 主張하나 窮極的인 統一問題만을 強大國들의 意向에 달려 있고 分斷된 狀態에서의 兩獨關係는 完全히 兩獨政府가 主管하고 있음.</p>

韓半島 外勢影響 못 벗어나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 및 軍事的 側面에서 韓半島 問題를 檢討해 볼 때 外國勢力의 影響權에서 벗어나 自主的인 進路開拓에는 많은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다고 보겠음.

테방트위에서의 兩獨位置

現在의 緊張緩和 바탕위에서는 西獨의 国力으로 보아서 強大國으로서 損色이 없는 發言權을 確保하고 있고 東獨도 역시 世界에서 第9位에 該當하는 工業國家로서 獨逸問題를 다루는데 影響力이 相當히 미칠것으로 본다.

独逸問題에 对한 对象別 時期別 協商頻度表

關係分野 对象国		政治分野			經濟分野	交通分野	通信分野	總計
		1941~ 1963	1963~ 1969	1969~ 1971	1941~ 1971	1941~ 1972	1967~ 1967	
美	東 欧 蘇	1						1
	東 独 西 独							
	西 邦 国	3						3
	西베르린 共同对象							
	東 欧							
東西独共同合意				16	41	13	3	70
蘇	東 独			1				1
	西 独	2	1	2				5
	東 欧 權 美 国		1					1
	西 邦 国	6				1		7
	共同对象 (미, 영, 불) 西베르린	3	1		1	2		7
					1	2		3

西 独	美 蘇	5	2	6				13
	西 邦 国	4						4
	東 欧 圈	1	3	1				6
	東 独	3	25	33	38	11	5	112
	西 叫 르린	1						1
	共同对象	8	8	15			1	32
	東 独 民間	7	9					16
東 独	美 蘇			2				2
	西 独	8	23	28	2	16	2	76
	西 邦							
	東 欧							
	共同对象	5	4	2				11
西 叫 르린		4	4	1	5		14	
西 独 民間	4	4					8	
西 邦 3 国	共同对象							
	西 独							
	東 独					1		1
	東 欧							
美 蘇	4				4		8	
西 叫 르린								

関係分野 対象国		政治分野			経済分野	交通分野	通信分野	総計
		1941~ 1963	1963~ 1969	1969~ 1971	1941~ 1971	1941~ 1972	1967~ 1967	
東 欧 圏	共同対象							
	西 邦	2						2
	西 独 東 独 蘇							
西独 民間	東独民間		10					10
東独 民間	西独民間		5					5
西 伯 林	西邦斗西 独斗決意	6	1	1				8
	東独 吳 東 白 林	1	3 1	2 2	1	2		8 4
美対 ・東 蘇・西 英独 ・決 仏 の意		14	1	3	2	3		23

上記 차트를 分析한 結果를 보고 東·西獨 및 西方國家와 東歐 國家間에 獨逸 統一問題를 다루는데 있어 누가 더 많은 主導權을 行使하고 어느 分野는 어느 쪽에 더 많은 發言權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政治分野는 時期的으로 分析해 본 결과 分断過程과 分断 初期에는 聯合國에 의해 많은 提案이 있었으나 漸次 分断의 固定化로 獨逸問題가 落着되자 주로 西獨과 東獨에 의해 接觸이 試圖 되었고 美·蘇를 爲始한 關係國들은 서로 友邦國을 支援하는 形式에 不過하였다. 이 차트에서 특이할 것은 經濟分野에서는 西獨이 完全 主導權을 가지고 東獨과 接觸하여 東獨은 西獨의 任意대로 끌려 가면서 合意 形式으로 問題가 解決되고 또 東獨은 西베르린을 西獨으로부터 分離된 政治 集團으로 認定하려는 意圖가 確實히 立証된다. 브란트가 西베르린 市長 時節에는 東獨이나 東베르린과의 關係가 어느정도 나타나는데「본」政府는 브란트의 政治 行動을 못마땅히 여기지만은 아무리 西獨政府가 西베르린 問題를 西獨의 一部로 取扱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制限된 範圍에서 自主的인 接觸이 가끔 보이는 것은 注目할만 하다. 여기에는 브란트의 政治的인 野望도 包含되지 않았다는 保障은 할 수 없다.

또 獨逸統一 問題에 있어서 西獨의 民間團體 및 社會團體(政黨 包含)들의 獨自的인 움직임이 보이며 相互 訪問 및 書信을 통해 接觸하는 것을 보면 西獨에서의 統一問題는 西獨政府의 占有物만이 아니라 西獨國民이면 누구나 自身の 意思를 反映할 수

있다는 것도 注目할 만하다.

上記 차트를 보고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独逸分断의 初期와 冷戰時期에는 (1941 ~ 1963) 4大強國이 共同으로 独逸統一에 第一 많은 問題를 提起한 것을 알 수 있지만 其他 여러 關係國들이 独逸統一問題를 散発적으로 関心을 나타냈다는 것을 東·西獨 다같이 統一政策이 確固히 定立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 独逸統一問題에 있어서는 東·西獨 政府만이 아닌 政黨 및 社會團體들도 加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음.
- 3) 独逸分断 初期와는 달리 時代가 흐를수록 独逸統一問題는 東·西獨 다같이 서로 많은 接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分断狀態에서의 東·西獨 問題의 체계모니를 兩獨이 가졌음.
- 4) 東·西獨 接觸의 媒介體는 經濟分野로서 西獨은 經濟力을 가지고 東獨에게 壓力의 手段으로 使用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東獨은 西獨의 要求에 따라 合意形式으로 西獨에 協調하고 있음.
- 5) 東獨과 西베르린間的 接觸은 西獨이 東獨의 要求대로 西베르린을 獨立된 政治集團으로 分離시키지는 않았으나 西베르린의 位置上 東獨과의 接觸이 不可避한 것을 알 수 있음.

- 6) 美·蘇는 東·西獨의 實質的인 後見人이면서도 表面上으로는 各己 自己 陣營의 한 一員으로서만 獨逸問題에 關与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7) 交通分野에 接觸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東·西獨間 및 東·西獨 그리고 西獨 西베르린 問題가 바로 紛爭의 核心 이었다는 것을 말해줌.